2018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8. 9.

본 연차보고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추진내용을 수록한 것이며, 2018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임





특수교육의 개요	13
. = . 7.00 7.01	
1. 특수교육의 정의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13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15
2018년 특수교육 현황	21
4 X O NO	74
1. 주요 현황	
2. 특수학교 현황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27
4. 순회교육 현황	28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28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29
2018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33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33
1) 특수교육기관 현황	33
(1)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33
(2)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36
2)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39
(1) 특수학교 학생	39
(2) 특수학급 학생	41
(3) 일반학급 학생	42
(4)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43



	3)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44
	4)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47
	5)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49
	6)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52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양성 ·····	52
	(2) 특수교육 담당교원 현직연수	59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62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67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67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68
	3)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70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72
	5)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및 병원학교 설치·운영 강화	77
	6)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 ·····	80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81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81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83
	3)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92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	92
	(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	96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99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1	02
	1)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 강화 1	02
	2) 장애학생 안전 지원 강화 1	05
	3) 장애발견 진단·배치 체계 고도화 ······ 1	06
	4)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12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116
	1)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116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118
	3)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지원 ······	121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123
	5)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내실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124
	6)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125
	7)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128
	8)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131

Appendix 부록

I: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	133
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41



〈丑 1·1〉	특수교육 관련 법령	14
〈丑 1⋅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15
〈班 1·3〉	연도별 특수학교 수	15
〈班 1·4〉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15
〈丑 1⋅5〉	연도별 특수학급 수	15
〈丑 1.6〉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15
〈班 1⋅7〉	연도별 학급 증설 현황	16
⟨班 1.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배치기관별)	16
⟨표 1.9⟩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장애영역별)	17
⟨亜 3⋅1⟩	연도별 특수학교 수	33
⟨丑 3·2⟩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34
⟨표 3⋅3⟩	시·도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	34
⟨표 3·4⟩	시·도별 및 설립별 특수학교 수 ·····	35
⟨표 3⋅5⟩	연도별 특수학급 수	36
⟨표 3.6⟩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37
⟨亜 3·7⟩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	38
⟨丑 3⋅8⟩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9
⟨표 3⋅9⟩	시·도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39
〈丑 3·10〉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학생 수	40
〈丑 3·11〉	시·도별 및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40
〈丑 3·12〉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41
〈丑 3·13〉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41
〈丑 3·14〉	시·도별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	42
〈丑 3·15〉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43
〈丑 3·16〉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44
〈班 3·17〉	유아특수교육기관 학생 수	44
〈표 3·18〉	공·사립 일반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	45
⟨₩ 3.19⟩	의무교육 가능 학교 및 교육요거을 갖추 어리이지 혀확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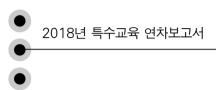
⟨표 3·20⟩	시·도별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	48
⟨표 3·21⟩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50
⟨표 3·22⟩	시·도별 통합교육 정다운학교 운영 현황 ······	51
⟨표 3·23⟩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	53
⟨표 3·24⟩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교육대학원)	56
⟨표 3·25⟩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현황	58
⟨표 3·26⟩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 소지 현황 ·····	60
⟨표 3·27⟩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61
⟨표 3·28⟩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7) ·····	63
⟨표 3·29⟩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7) ······	64
⟨표 3⋅30⟩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7) ·····	65
⟨표 3⋅31⟩	특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7) ·····	66
⟨표 3⋅32⟩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67
⟨표 3⋅3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69
⟨표 3⋅34⟩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자 수	70
⟨표 3⋅35⟩	특수학급 순회교육 대상자 수	71
⟨표 3·36⟩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대상자 수	71
⟨표 3⋅37⟩	치료지원 현황	72
⟨표 3⋅38⟩	시·도별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수 ·····	73
⟨표 3⋅39⟩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현황 ·····	74
⟨표 3·40⟩	시·도별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비율 ······	75
⟨표 3·41⟩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	76
⟨표 3·42⟩	병원학교 운영 현황 ····	78
⟨표 3·43⟩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기관 현황 ·····	79
⟨표 3·44⟩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현황 ·····	80
⟨표 3·45⟩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현황 ·····	82
⟨표 3·46⟩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84
⟨표 3·47⟩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현황 ·····	85
⟨표 3·48⟩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지정·운영 현황 ······	86
〈표 3⋅49〉	2018년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취업 현황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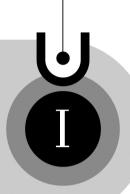
〈丑 3.50〉	2018년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88
〈丑 3⋅51〉	2018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89
〈亜 3.52〉	2018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	90
〈표 3⋅53〉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표 3·54〉	2018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93
〈丑 3.55〉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94
〈표 3·56〉	대학(원) 장애학생 도우미 영역별 지원 현황	95
〈丑 3⋅5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원 실태평가 영역(4년제 및 전문대학)	97
〈표 3·58〉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영역(사이버대학)	97
〈표 3·59〉	201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98
⟨표 3.60⟩	장애성인교육(야학) 지원 현황	· 100
〈丑 3·6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	101
〈丑 3.6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및 위원 수	· 103
⟨표 3.6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모니터링 학교 수('17) ·····	· 103
⟨표 3.64⟩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 104
〈丑 3.65〉	일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 104
⟨표 3.66⟩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현황	· 105
〈丑 3.67〉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현황	· 107
⟨표 3.68⟩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 108
〈丑 3.69〉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 109
⟨丑 3.70⟩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 110
〈丑 3·7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111
〈丑 3.72〉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 112
〈班 3·73〉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	· 113
⟨丑 3.74⟩	특수교육 총예산	· 114
〈丑 3.75〉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 114
〈班 3·76〉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 115
〈班 3·77〉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 117
〈班 3·78〉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교과서 관련 사업 ·····	· 120
〈班 3·79〉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	· 122



⟨표 3⋅80⟩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124
⟨표 3.81⟩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고등교육 지원	125
⟨표 3.82⟩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	125
⟨표 3⋅83⟩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	127
⟨표 3.84⟩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현황 ·····	128
⟨표 3.85⟩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130
⟨표 3⋅86⟩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관련 사업	132



특수교육의 개요



- 1. 특수교육의 정의 / 13
-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13
-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 15



특수교육의 개요

1 특수교육의 정의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
-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 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 1. 시각장애
- 2. 청각장애
- 3. 지적장애

- 4. 지체장애
- 5. 정서·행동장애
-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7. 의사소통장애

- 8. 학습장애
- 9. 건강장애
- 10. 발달지체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 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2호)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특수교육은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특수학 교시설·설비기준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이 정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표 1·1〉 특수교육 관련 법령

법령	관 련 조 항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8조(의무교육), 제18조(특수교육)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유이교육법시행령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12조(의무교육),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교원의 자격), 제55조(특수학교), 제56조(특수학급),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9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4조(위탁시의 협의),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제43조(교과), 제45조(수업일수), 제57조(분교장),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 위원회의 구성),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	전체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전체
장애인복지법	제2장 제20조(교육)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의2(장애인평생교육과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 진흥센터),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12조의 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③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표 1-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교, 학급, 명)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A)	′18(B)	В-А
특	수학교 수	150	150	155	156	162	166	167	170	173	175	2
특	수학급 수	6,924	7,792	8,415	8,927	9,343	9,617	9,868	10,065	10,325	10,676	351
	계	75,187	79,711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89,353	90,780	1,427
	장애영아	288	290	356	403	578	680	742	656	549	582	33
학	유치원	3,303	3,225	3,367	3,675	4,190	4,219	4,744	5,186	5,437	5,630	193
생	초등학교	34,035	35,294	35,124	34,458	33,518	33,184	33,591	33,770	35,505	38,031	2,526
수	중학교	17,946	19,375	20,508	21,535	22,241	22,159	21,108	19,793	19,218	18,788	-430
	고등학교	17,553	19,111	20,439	21,649	22,466	22,973	23,422	23,943	23,655	22,584	-1,071
	전공과	2,062	2,416	2,871	3,292	3,640	4,063	4,460	4,602	4,989	5,165	176
	교원 수		15,244	15,934	16,727	17,446	17,922	18,339	18,772	19,327	20,039	712

〈표 1-3〉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연 도	′62	′ 67	′72	<i>′</i> 77	′82	′87	′92	′97	′03	′06	708	′09	′11	′12	′13	′14	′15	′16	′17	′18
학교 수	10	22	38	48	65	95	103	114	137	143	149	150	155	156	162	166	167	170	173	175

$\langle \pm 1 \cdot 4 \rangle$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명)

연도	′ 67	′72	777	′82	′87	′92	′97	′00	′08	′09	′11	′12	′13	′14	′15	′16	′17	′18
학생 수	3,121	5,188	7,342	10,679	17,373	20,690	22,789	24,196	23,400	23,606	24,580	24,720	25,138	25,288	25,531	25,467	25,798	25,919

〈표 1·5〉 연도별 특수학급 수

(단위 : 학급)

연 도	71	′76	′80	′85	′90	′95	′00	′08	′09	′11	′12	′13	′14	′15	′16	′17	′18
학급수	1	350	355	1,601	3,181	3,440	3,802	6,352	6,924	8,415	8,927	9,343	9,617	9,868	10,065	10,325	10,676

〈표 1·6〉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단위 : 명)

연 도	71	′82	′86	′91	′96	′00	′08	′09	′11	′12	′13	′14	′15	′16	′17	′18
학생 수	30	7,665	30,876	28,795	26,087	26,627	37,857	39,380	43,183	44,433	45,181	45,803	46,351	46,645	47,564	48,848

〈표 1·7〉 연도별 학급 증설 현황

(단위 : 급)

구분 -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下正	학급수	학급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수	증설 수	증기율	학급수	증설 수	증기율	학급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수	증설 수	증기율
특수학교 학급	3,488	4,396	127	2.9%	4,454	58	1.3%	4,550	96	2.1%	4,615	65	1.4%	4,747	132	2.9%
일반학교 특수학급	6,352	9,617	274	2.9%	9,868	251	2.5%	10,065	197	2.0%	10,32 5	260	2.6%	10,67 6	351	3.4%
특수교육 지원센터	-	62	16	34.8%	61	-1	-1.6 %	60	-1	-1.7 %	74	14	23.3%	77	3	4.1%
계	9,840	14,075	417	3.0%	14,383	308	2.1%	14,675	292	2.4%	15,014	339	2.3%	15,500	486	3.2%

〈표 1·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배치기관별)

(단위 : 명, %)

ol E	특수학교 및	일	반학교 배치학생	수	사 배우(F)
연 도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전체학생 수
2012	24,932 (29.3)	44,433	15,647	60,080 (70.7)	85,012 (100)
2013	25,522 (29.5)	45,181	15,930	61,111 (70.5)	86,633 (100)
2014	25,827 (29.6)	45,803	15,648	61,451 (70.4)	87,278 (100)
2015	26,094 (29.6)	46,351	15,622	61,973 (70.4)	88,067 (100)
2016	25,961 (29.5)	46,645 (53.0)	15,344 (17.5)	61,989 (70.5)	87,950 (100)
2017	26,199 (29.3)	47,564 (53.2)	15,590 (17.5)	63,154 (70.7)	89,353 (100)
2018	26,337 (29.0)	48,848 (53.8)	15,595 (17.2)	64,443 (71.0)	90,780 (100)

〈표 1·9〉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장애영역별)

(단위:명,%)

연 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 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전체 학생 수
2013	2,220	3,666	47,120	11,233	2,754	8,722	1,953	4,060	2,157	2,748	86,633
	(2.6)	(4.2)	(54.4)	(13.0)	(3.2)	(10.1)	(2.3)	(4.7)	(2.5)	(3.2)	(100)
2014	2,130	3,581	47,667	11,209	2,605	9,334	1,966	3,362	2,029	3,395	87,278
	(2.4)	(4.1)	(54.6)	(12.8)	(3.0)	(10.7)	(2.3)	(3.9)	(2.3)	(3.9)	(100)
2015	2,088	3,491	47,716	11,134	2,530	10,045	2,045	2,770	1,935	4,313	88,067
	(2.4)	(4.0)	(54.2)	(12.6)	(2.9)	(11.4)	(2.3)	(3.1)	(2.2)	(4.9)	(100)
2016	2,035	3,401	47,258	11,019	2,221	10,985	2,089	2,327	1,675	4,940	87,950
	(2.3)	(3.9)	(53.7)	(12.5)	(2.5)	(12.5)	(2.4)	(2.7)	(1.9)	(5.6)	(100)
2017	2,026	3,358	48,084	10,777	2,269	11,422	2,038	2,040	1,626	5,713	89,353
	(2.3)	(3.8)	(53.8)	(12.0)	(2.5)	(12.8)	(2.3)	(2.3)	(1.8)	(6.4)	(100)
2018	1,981	3,268	48,747	10,439	2,221	12,156	2,081	1,627	1,758	6,502	90,780
	(2.2)	(3.6)	(53.7)	(11.5)	(2.4)	(13.4)	(2.3)	(1.8)	(1.9)	(7.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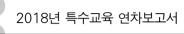
■ 통계 자료 분석

○ 특수학교 수 및 특수학급 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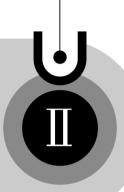
- -'18년에 특수학교 2개교가 신설되었으며, 특수학급은 351학급이 증설되는 등 최 근 5년간 연평균 267학급이 증가함
 - ※ 특수학급: ('17) 10.325학급 → ('18) 10.676학급, 351학급 증설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교의 학생은 장애정도가 심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 학생 수 변화 추이

- '18년 특수교육대상자는 90,780명으로 '17년보다 1,427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급 수와 교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 특수교육 지원내용: 무상교육 지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 방과후학교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치료지원 제공, 병원학교 설치 운영, 일반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식비 등 지원,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학교기업 운영 등 진로직업교육 지원,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







- 1. 주요 현황 / 21
- 2. 특수학교 현황 / 24
-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 27
- 4. 순회교육 현황 / 28
-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28
-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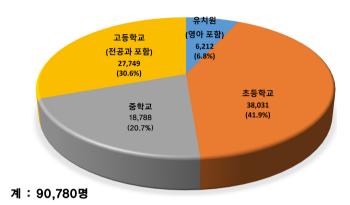
2018년 특수교육 현황

※ 기준일: 201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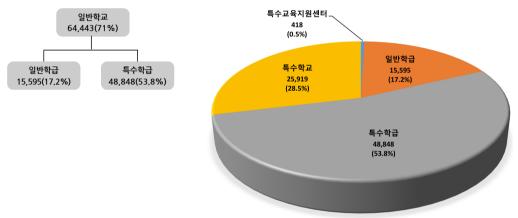
1 주요 현황

				일	반학교	특수교육	
		배치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지원센터	계
	특수	교육대상자 수	25,919	48,848	15,595	418	90,780
		시각장애	1,260	267	450	4	1,981
		청각장애	762	687	1,801	18	3,268
		지적장애	14,390	30,041	4,268	48	48,747
	장	지체장애	3,680	3,924	2,714	121	10,439
	애	정서행동장애	214	1,337	670	-	2,221
	영	자폐성장애	5,065	6,283	803	5	12,156
	역	의사소통장애	124	1,150	802	5	2,081
÷ı	별	학습장애	20	1,062	545	-	1,627
학 생		건강장애	30	154	1,574	-	1,758
수		발달지체	374	3,943	1,968	217	6,502
'		계	25,919	48,848	15,595	418	90,780
		장애영아	164	ı	-	418	582
	학	유치원	944	3,058	1,628	_	5,630
	교	초등학교	7,245	24,169	6,617	_	38,031
	과	중학교	5,534	9,990	3,264	-	18,788
	정	고등학교	7,076	11,422	4,086	_	22,584
	별	전공과	4,956	209	_	_	5,165
		계	25,919	48,848	15,595	418	90,780
	하	교 및 센터 수	175	7,954	7,725	199	11,501
	-	따 놋 엔디 ㅜ	170	11	,127	199	11,001
		학급 수	4,747	10,676	14,712	77	30,212
	특수학	학교(급)교원 수	8,483	11,077	-	479	20,039
	특수교	교육 보조인력 수	4,480	7,596	373	=	12,449

[학교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교육기관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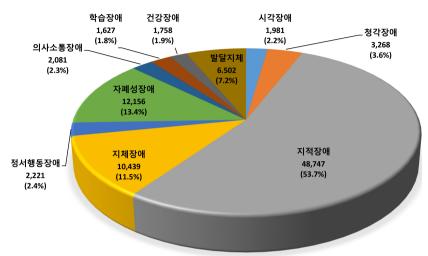


계: 90,780명

(단위:명,%)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전체학생 수
7144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지원센터	선세국경 표
25,919	48,848	15,595	64,443	418	90,780
(28.5%)	(53.8%)	(17.2%)	(71.0%)	(0.5%)	(100%)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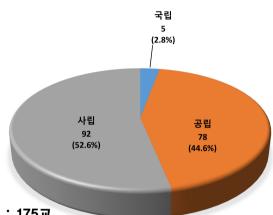
계: 90,780명

(단위:명,%)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전체 학생 수
1,981	3,268	48,747	10,439	2,221	12,156	2,081	1,627	1,758	6,502	90,780
(2.2%)	(3.6%)	(53.7%)	(11.5%)	(2.4%)	(13.4%)	(2.3%)	(1.8%)	(1.9%)	(7.2%)	(100%)

2 특수학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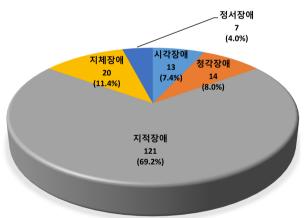
[특수학교 설립별 현황]



계: 175교

구 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국 립	5	168	857	319
공 립	78	2,572	14,091	4,548
사 립	92	2,007	10,971	3,616
계	175	4,747	25,919	8,483

[특수학교 장애영역별 현황]



계: 175교

장애영역		장애영역별 학교 수							
3434 3434	시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학교 수	13	14	121	20	7	175			

〈시·도별 특수학교 현황〉

		설립별	학교 수		<u> </u>			별 학교 수		
시·도	국립	공립	사립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3	8	19	30	3	4	15	5	3	30
부산	-	8	7	15	1	1	12	1	-	15
대구	-	3	6	9	1	1	4	2	1	9
인천	=	5	4	9	1	1	6	1	-	9
광주	=	3	2	5	1	-	3	1	-	5
대전	-	3	2	5	1	-	3	1	-	5
울산	-	2	2	4	-	1	3	-	-	4
세종	-	1	-	1	-	-	1	-	-	1
경기	2	11	22	35	-	2	29	3	1	35
강원	-	5	2	7	1	1	5	_	_	7
충북	-	3	7	10	2	1	4	2	1	10
충남	-	5	2	7	-	-	6	1	-	7
전북	-	6	4	10	1	1	6	2	-	10
전남	-	3	5	8	1	1	6	-	-	8
경북	-	3	5	8	-	-	7	-	1	8
경남	-	7	2	9	-	-	9	-	-	9
제주	-	2	1	3	-	-	2	1	-	3
총계	5	78	92	175	13	14	121	20	7	175

〈시·도별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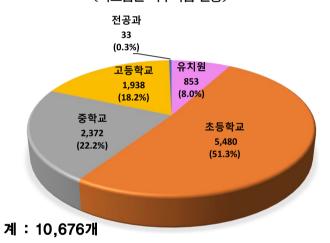
시·도	학교 수			학교과정 설	치별 학교 수		
시·도 	의교 구	영아학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서울	30	8	21	26	26	26	24
부산	15	7	10	12	13	12	9
대구	9	_	4	9	9	9	9
인천	9	1	6	8	8	8	7
광주	5	4	2	5	5	5	4
대전	5	1	5	5	5	5	5
울산	4	-	3	4	4	4	4
세종	1	1	1	1	1	1	1
경기	35	1	30	30	32	32	25
강원	7	-	7	7	7	7	6
충북	10	1	10	10	10	10	10
충남	7	1	3	7	7	7	6
전북	10	1	4	9	9	9	6
전남	8	-	7	8	8	8	8
경북	8	-	4	8	8	8	8
경남	9	-	5	9	9	9	8
제주	3	-	3	3	3	3	3
총계	175	26	125	161	164	163	143

③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특수학급〉

학교급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유 치 원	740	853	3,058	859
초등학교	4,281	5,480	24,169	5,528
중 학 교	1,839	2,372	9,990	2,395
고등학교	1,076	1,938	11,422	2,235
전 공 과	18	33	209	60
계	7,954	10,676	48,848	11,077

[학교급별 특수학급 현황]



〈일반학급〉

학교급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유 치 원	1,332	1,448	1,628
초등학교	3,258	6,354	6,617
중 학 교	1,706	3,133	3,264
고등학교	1,429	3,777	4,086
계	7.725	14,712	15,595

4 순회교육 현황

(단위 : 명, 학급)

					ō	생 수					211.6	
	기관						학교과정				학	교
구분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장애 영아포함)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수	사 수
특수학교에서 순회·파견	569	318	38	I	925	174	282	200	269	925	257	263
특수학급에서 순회·파견· 겸임	503	544	10	78	1,135	53	464	317	301	1,135	312	353
특수교육 지원센터	465	98	16	1,653	2,232	731	825	405	271	2,232	_	721*
계	1,537	960	64	1,731	4,292	958	1,571	922	841	4,292	569	1,337

^{*}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교사 등 292명 포함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 명, 학급)

특수교육		장애영아	배치 인력 현황			
지원센터 수	장애영아 수	학급 수	교사	일반직공무원	기타 (치료사, 보조인력 등)	
199	418	77	802	43	555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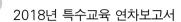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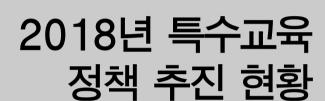
			진	학	취	업	
구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대학/ 전공과)	진학률 (%)	취업자 수	취업률 (%)	비진학 · 미취업자 수
	특수학교	2,454	1,321	53.8	97	8.6	1,036
고등	특수학급	4,101	1,667	40.6	824	33.9	1,610
학교	일반학급	1,256	680	54.1	85	14.8	491
	계	7,811	3,668	47.0	1,006	24.3	3,137
	특수학교	2,140	20	0.9	897	42.3	1,223
공	특수학급	112	_	-	73	65.2	39
과	계	2,252	20	0.9	970	43.5	1,262
	전체	10,063	3,688	36.6	1,976	31.0	4,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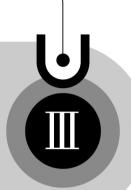
[※]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 수/당해년도 졸업자 수) × 100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15}년부터 진로 현황 조사 방법 개선: ① 진학과 취업 직종을 단순 수치로만 조사하던 방식에서 졸업생별로 검증 가능하도록 자료 수합 ② 취업자의 경우, 개별 취업확인을 위한 근거자료(4대 보험 가입 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확보 ③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취업자 인정 기준 개선 등







-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33
-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67
-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 81
-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102
-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 116



2018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 특수교육기관 현황

(1)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관련 법규

-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호)
-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초·중등교육법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 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8년 4월 현재 전국의 특수학교 수는 175개교로 1962년의 10개교에 비해 17.5배 이상 증가하였음

〈표 3 · 1〉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교)

연도	′ 62	′67	′72	′ 77	′82	′ 87	′92	′97	′07	′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학교수	10	22	38	48	65	95	103	114	144	149	150	150	155	156	162	166	167	170	173	175

• 전국 175개 특수학교를 설립별로 구분하면 국립 5개교, 공립 78개교, 사립 92개교로 사립학교 비율이 전체의 52.6%임 ● 전국 175개 특수학교를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3개교, 청각장애학교 14개교, 지적장애학교 121개교, 지체장애학교 20개교, 정서장애학교 7개교로 지적장애학교가 전체의 69.2%임

〈표 3·2〉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소계
국립	1	1	1	1	1	5
공립	2	3	67	5	1	78
사립	10	10	53	14	5	92
계	13	14	121	20	7	175

[※] 장애영역별 구분은 주 장애영역을 말함

전국 175개 특수학교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 30교, 부산 15교, 대구 9교, 인천 9교, 광주 5교, 대전 5교, 울산 4교, 세종 1교, 경기 35교, 강원 7교, 충북 10교, 충남 7교, 전북 10교, 전남 8교, 경북 8교, 경남 9교, 제주 3교임

〈표 3·3〉 시·도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단위:교)

시·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3	4	15	5	3	30
<u></u> 부산	1	1	12	1	-	15
대구	1	1	4	2	1	9
인천	1	1	6	1	-	9
광주	1	-	3	1	-	5
대전	1	-	3	1	-	5
울산	-	1	3	-	-	4
세종	-	-	1	_	-	1
경기	-	2	29	3	1	35
강원	1	1	5	_	-	7
충북	2	1	4	2	1	10
충남	-	_	6	1	_	7
전북	1	1	6	2	_	10
전남	1	1	6	_	-	8
경북	-	_	7	-	1	8
경남	-	-	9	-	_	9
제주	-	_	2	1	_	3
계	13	14	121	20	7	175

● 특수학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 국·공·사립특수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그 외 시·도교육청에는 공·사립 특수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표 3 · 4〉시 · 도별 및 설립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시·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3	8	19	30
 부산	-	8	7	15
대구	-	3	6	9
 인천	-	5	4	9
광주	_	3	2	5
대전	-	3	2	5
 울산	_	2	2	4
세종	_	1	=	1
 경기	2	11	22	35
 강원	_	5	2	7
충북	_	3	7	10
충남	_	5	2	7
전북	_	6	4	10
전남	_	3	5	8
 경북	-	3	5	8
경남	-	7	2	9
 제주	-	2	1	3
계	5	78	92	175

■ 향후 과제

-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별 균형과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 신설 추진
- 특수학교 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특수학교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작은 규모 및 단일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 추진

(2)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관련 법규

-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1항)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56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1. 유치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3. 고등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현황 및 추진실적

● 1971년부터 설치·운영을 시작한 특수학급은 2018년 4월 현재 10,676개 학급으로 2017년보다 351개 학급이 증가함

〈표 3 ⋅ 5〉 연도별 특수학급 수

(단위 : 학급)

연도	′71	′ 76	′80	´85	′90	´95	′00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학급수	1	350	355	1,601	3,181	3,440	3,802	6,924	7,792	8,415	8,927	9,343	9,617	9,868	10,065	10,325	10,676

- 학교과정별 특수학급은 유치원 853학급, 초등학교 5,480학급, 중학교 2,372학급, 고등학교 1,971학급(전공과 포함)으로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51.3%를 차지함
- 2018년 4월 현재 설립별 특수학급은 국립 46학급, 공립 10,377학급, 사립 253학급으로 총 10,676학급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국·공립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97.6%를 차지함

〈표 3·6〉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단위 : 학급)

시		유쳐	1원			초등	학교			중학	湿			고등학	학교*			7	계	
.' 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구 립	공 립	사 립	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국립	공 립	사 립	계
서울	-	73	-	73	2	695	-	697	2	287	-	289	3	220	29	252	7	1,275	29	1,311
부산	-	27	-	27	1	322	-	323	-	125	-	125	1	79	11	91	2	553	11	566
대구	-	28	-	28	2	236	-	238	1	96	-	97	1	74	-	75	4	434	-	438
인천	-	68	-	68	1	322	-	323	-	118	1	119	-	104	7	111	1	612	8	621
광주	-	15	-	15	1	139	-	140	1	62	1	64	2	43	8	53	4	259	9	272
대전	-	45	-	45	=	165	-	165	-	77	2	79	-	48	9	57	-	335	11	346
울산	-	24	-	24	-	131	-	131	-	55	-	55	-	46	-	46	-	256	-	256
세종	-	22	-	22	-	44	-	44	-	19	-	19	-	11	-	11	-	96	-	96
경기	-	282	3	285	-	1,316	3	1,319	-	620	32	652	-	565	21	586	-	2,783	59	2,842
강원	1	27	-	28	1	213	-	214	-	80	-	80	1	59	-	60	3	379	-	382
충북	1	41	-	42	2	220	-	222	2	92	1	95	3	78	2	83	8	431	3	442
충남	1	64	5	70	1	333	-	334	1	134	8	143	1	110	4	115	4	641	17	662
전북	-	22	-	22	2	235	-	237	-	78	5	83	1	57	2	60	3	392	7	402
전남	-	40	-	40	1	276	-	277	-	131	3	134	-	96	4	100	1	543	7	551
경북	-	15	-	15	1	338	2	341	-	111	20	131	-	79	29	108	1	543	51	595
경남	-	44	-	44	1	408	2	411	1	159	20	180	1	124	18	143	3	735	40	778
제주	_	5	-	5	1	63	-	64	2	25	_	27	2	17	1	20	5	110	1	116
계	3	842	8	853	17	5,456	7	5,480	10	2,269	93	2,372	16	1,810	145	1,971	46	10,377	253	10,676

^{*}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33학급 고등학교에 포함(대구 1학급, 인천 3학급, 경기 25학급, 충북 4학급)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2018년 4월 현재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 3.6명, 초등학교 4.5명, 중학교 4.4명, 고등학교의 경우 6.3명임

〈표 3·7〉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단위:명)

ИЕ		특수	학교			특수	학급			7	#	
시·도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정원	4	6	6	7	4	6	6	7	4	6	6	7
서울	3.9	5.2	5.5	6.3	4.3	4.7	4.3	5.5	4.1	4.7	4.7	5.9
부산	3.6	4.8	5.1	6.1	3.8	4.2	4.2	7.0	3.7	4.4	4.6	6.5
대구	3.2	4.9	5.5	7.2	3.4	4.1	4.7	6.7	3.7	4.3	5.0	7.0
인천	4.0	4.7	6.0	6.7	3.8	5.2	4.7	6.0	3.8	5.1	5.0	6.3
 광주	4.1	4.5	4.9	6.5	4.1	4.6	4.0	6.0	4,1	4.6	4.4	6.3
대전	3.6	5.2	5.8	8.1	3.8	4.9	4.5	7.1	3.7	5.0	4.9	7.6
울산	2.7	3.9	4.3	6.9	3.6	5.1	4.3	5.7	3.5	4.7	4.3	6.4
세종	4.6	4.7	4.7	5.0	3.0	3.5	3.0	4.5	3.2	3.7	3.5	4.7
경기	3.5	5.5	5.5	6.4	3.4	4.6	4.2	5.9	3.4	4.7	4.5	6.1
강원	2.7	3.2	4.6	6.8	3.3	3.8	4.3	5.4	3.2	3.6	4.3	6.2
충북	3.1	3.8	4.7	6.4	4.1	4.3	4.2	6.2	3.8	4.1	4.4	6.3
충남	3.5	3.8	4.7	6.6	3.6	4.4	3.9	6.0	3.6	4.3	4.1	6.2
전북	3.6	3.7	4.6	6.9	3.5	3.7	4.2	5.8	3.5	3.7	4.4	6.4
 전남	2.4	4.3	5.8	7.2	2.9	4.2	3.8	5.7	2.4	4.2	4.3	6.3
 경북	3.3	4.3	5.1	7.5	3.3	3.7	4.2	5.5	3.3	3.8	4.7	6.5
경남	3.1	4.1	4.9	6.7	3.8	4.6	4.1	5.6	3.7	4.5	4.3	6.1
제주	2.7	4.9	4.0	5.9	3.2	5.4	4.3	6.5	3.0	5.1	4.2	6.1
평균	3.5	4.7	5.2	6.7	3.6	4.4	4.2	5.9	3.6	4.5	4.4	6.3

^{*} 유치원에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에 전공과 포함

-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 예술, 체육, 진로와 직업 등 특정 분야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급 설치·운영 추진

2)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1) 특수학교 학생

- 2018년 4월 현재 특수학교의 재학생은 25,919명으로 2017년의 25,798명에 비해 121명이 증가함
 - 최근의 특수학교 학생의 증가폭 감소 추세는 통합교육 확대에 따라 일반학교 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를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에 기인함

〈표 3·8〉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명)

연도	′72	777	′82	′87	′92	′97	′00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학생 수	5,188	7,342	10,679	17,373	20,690	22,789	24,196	23,606	23,776	24,580	24,720	25,138	25,288	25,531	25,467	25,798	25,919

● 시·도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설립분포의 차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영역별 구성 비율에 차이가 있음

〈표 3·9〉 시·도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명)

시·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소계
서울	361	304	1,894	829	31	859	-	-	-	119	4,397
부산	78	55	909	294	10	382	3	5	2	76	1,814
대구	65	50	927	246	-	314	14	-	-	5	1,621
인천	96	55	824	193	5	295	24	=	1	4	1,497
	108	13	530	176	1	172	2	-	-	14	1,016
대전	115	22	546	111	-	250	3	-	-	10	1,057
울산	20	38	499	67	9	123	1	=	1	17	775
세종	1	-	66	18	-	40	1	-	-	6	132
 경기	31	51	2,805	595	8	1,172	15	1	8	37	4,723
강원	79	18	563	52	3	158	9	3	14	4	903
충북	171	98	590	176	11	180	6	-	-	30	1,262
충남	3	3	680	152	2	181	8	-	1	5	1,035
전북	48	14	740	156	4	155	14	2	1	14	1,148
전남	66	15	725	118	4	124	6	-	-	6	1,064
경북	3	11	1,045	127	5	233	14	1	2	17	1,458
경남	12	9	881	288	5	349	2	8	-	10	1,564
제주	3	6	166	82	116	78	2	_	_	=	453
계	1,260	762	14,390	3,680	214	5,065	124	20	30	374	25,919

- 설립별로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국립학교 857명(3.3%),
 공립학교 14,091명(54.4%), 사립학교 10,971명(42.3%)임
 - 사립특수학교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전액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장애영역별로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시각장애학교 1,243명, 청각장애학교 1,308명, 지적장애학교 19,363명, 지체장애학교 2,692명, 정서 장애학교 1.313명으로 지적장애학교의 학생비율이 전체 74.7%로 가장 많음

〈표 3·10〉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소계
국립	219	93	193	169	183	857
공립	193	250	12,504	961	183	14,091
사립	831	965	6,666	1,562	947	10,971
계	1,243	1,308	19,363	2,692	1,313	25,919

※ 학생 개인의 장애영역이 아닌,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학생 수임

● 사립특수학교에 위탁된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 42.3%임

〈표 3 · 11〉 시 · 도별 및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명,%)

시·도	국립	공립	사립	계	사립학교 위탁비율
서울	481	1,452	2,464	4,397	56.0
부산	-	1,253	561	1,814	30.9
대구	-	829	792	1,621	48.9
인천	-	1,046	451	1,497	30.1
광주	_	745	271	1,016	47.1
대전	_	699	358	1,057	33.9
울산	_	515	260	775	33.5
세종	_	132	-	132	_
경기	376	2,205	2,142	4,723	45.4
강원	-	737	166	903	18.4
충북	-	420	842	1,262	66.7
충남	-	805	230	1,035	22.2
전북	_	734	414	1,148	36.1
전남	_	524	540	1,064	50.8
경북	-	344	1,114	1,458	76.4
경남		1,376	188	1,564	12.0
제주		275	178	453	39.3
계	857(3.3)	14,091(54.4)	10,971(42.3)	25,919(100)	42.3

(2) 특수학급 학생

- 2018년 4월 현재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48,848명으로 2017년의 47,564명에 비해 1,284명이 증가함
 - 최근 통합교육의 확산에 따라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비해 351개의 특수학급이 증가함

〈표 3·12〉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단위 : 명)

연 도	<i>′</i> 71	′82	′86	′91	′96	′00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학생 수	30	7,665	30,876	28,795	26,087	26,627	39,380	42,021	43,183	44,433	45,181	45,803	46,351	46,645	47,564	48,848

학교과정별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유치원 3,058명, 초등학교 24,169명, 중학교 9,990명, 고등학교 11,631명(전공과 포함)임

〈표 3·13〉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명)

_	O-101 구드한그 조현그 그드한그*																1.9)			
		유	치원			초등	학교			중력	학교			고등	학교*			전	[체	
시·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국 립	징 교	사 립	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서울	-	313	-	313	14	3,100	-	3,114	13	1,220	-	1,233	25	1,196	175	1,396	52	5,829	175	6,056
부산	-	103	-	103	5	1,346	-	1,351	-	527	-	527	7	558	71	636	12	2,534	71	2,617
대구	-	95	-	95	13	969	-	982	6	453	-	459	7	492	-	499	26	2,009	-	2,035
인천	-	259	-	259	4	1,684	-	1,688	-	557	6	563	-	615	53	668	4	3,115	59	3,178
광주	-	62	-	62	5	645	-	650	7	245	6	258	12	261	44	317	24	1,213	50	1,287
대전	-	170	-	170	-	811	-	811	-	346	9	355	-	342	60	402	-	1,669	69	1,738
울산	-	86	-	86	-	664	-	664	-	236	-	236	-	262		262	-	1,248	-	1,248
세종	-	66	-	66	-	153	-	153	-	57	-	57	-	49	-	49	-	325	-	325
경기	-	954	10	964	-	6,007	18	6,025	-	2,619	124	2,743	-	3,318	135	3,453	-	12,898	287	13,185
강원	3	89	-	92	5	801	-	806	-	337	-	337	9	313	-	322	17	1,540	-	1,557
충북	2	172	-	174	10	937	-	947	10	388	2	400	18	481	13	512	40	1,978	15	2,033
충남	4	237	11	252	2	1,474	-	1,476	5	523	29	557	3	654	22	679	14	2,888	62	2,964
전북	-	77	-	77	10	871	-	881	-	331	17	348	6	326	14	346	16	1,605	31	1,652
전남	-	114	-	114	4	1,152	-	1,156	-	501	14	515	-	548	19	567	4	2,315	33	2,352
경북	-	50	-	50	3	1,235	10	1,248	-	477	71	548	-	421	178	599	3	2,183	259	2,445
경남	-	165	-	165	3	1,860	8	1,871	4	659	75	738	5	689	101	795	12	3,373	184	3,569
제주	-	16	-	16	4	342	-	346	15	101	-	116	12	114	3	129	31	573	3	607
계	9	3,028	21	3,058	82	24,051	36	24,169	60	9,577	353	9,990	104	10,639	888	11,631	255	47,295	1,298	48,848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217명(대구 11명, 인천 22명, 경기 153명, 충북 31명) 고등학교에 포함

(3) 일반학급 학생

 2018년 4월 현재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총 1.4%로 2017년과 동일함

〈표 3·14〉 시·도별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단위 : 명, %)

ИГ		잍	반학교 학생	ଖ 수			특수	교육대상	자 수			특수교	육대상지	비율	
시·도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서울	85,209	424,598	216,302	259,187	985,296	889	5,298	2,635	3,919	12,741	1.0	1.2	1.2	1.5	1.3
부산	44,408	152,757	77,011	91,040	365,216	505	2,520	1,251	1,650	5,926	1.1	1.6	1.6	1.8	1.6
대구	38,475	125,160	66,164	78,245	308,044	257	1,936	1,067	1,595	4,855	0.7	1.5	1.6	2.0	1.6
인천	42,390	159,040	76,561	84,907	362,898	488	2,638	1,073	1,573	5,772	1.2	1.7	1.4	1.9	1.6
광주	24,632	88,626	45,437	53,891	212,586	135	1,160	589	943	2,827	0.5	1.3	1.3	1.7	1.3
대전	24,012	83,453	42,675	49,332	199,472	285	1,260	662	1,118	3,325	1.2	1.5	1.6	2.3	1.7
울산	18,507	67,148	31,889	37,627	155,171	175	1,100	500	813	2,588	0.9	1.6	1.6	2.2	1.7
세종	6,393	24,865	10,070	8,574	49,902	86	220	97	99	502	1.3	0.9	1.0	1.2	1.0
경기	189,620	752,638	358,522	393,221	1,694,001	1,481	8,903	4,362	6,064	20,810	0.8	1.2	1.2	1.5	1.2
강원	15492	73810	38252	53028	180582	169	1,128	612	993	2,902	1.1	1.5	1.6	1.9	1.6
충북	17,562	85,342	41,869	48,368	193,141	314	1,528	792	1,388	4,022	1.8	1.8	1.9	2.9	2.1
충남	28,077	120,747	56,603	65,619	271,046	362	1,938	871	1,323	4,494	1.3	1.6	1.5	2.0	1.7
전북	24,297	97,606	50,859	62,354	235,116	216	1,434	773	1,148	3,571	0.9	1.5	1.5	1.8	1.5
전남	19,671	94,147	47,271	58,254	219,343	175	1,565	843	1,127	3,710	0.9	1.7	1.8	1.9	1.7
경북	39,573	130,358	63,672	78,060	311,663	233	1,962	1,025	1,629	4,849	0.6	1.5	1.6	2.1	1.6
경남	51,266	191,719	90,925	102,658	436,568	349	2,762	1,350	1,960	6,421	0.7	1.4	1.5	1.9	1.5
제주	6,097	40,096	19,306	21,088	86,587	93	679	286	407	1,465	1.5	1.7	1.5	1.9	1.7
계	675,681	2,712,110	1,333,388	1,545,453	6,266,632	6,212	38,031	18,788	27,749	90,780	0.9	1.4	1.4	1.8	1.4

[※] 연도별 비율: 2012(1.2%), 2013(1.2%), 2014(1.2%), 2015(1.3%), 2016(1.3%), 2017 (1.4%)

[※] 특수교육대상지수 유치원 과정은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 과정은 전공과 학생 포함

(4)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 2018년 4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설치 장애영아 학급 수는 77학급이며, 장애영아 수는 418명임
- 연령별로 1세 미만 20명, 1세 121명, 2세 277명이며, 교육유형별로 센터지원 영아 수는 233명, 순회교육 지원 영아 수는 185명임

〈표 3·15〉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단위 : 학급, 명)

	센터설치		연령별 지	원영아 수		교육	유유형별 영0	l 수
시·도	장애영아 학급 수	1세 미만	1세	2세	계	센터지원 영아 수	순회교육 영아 수	계
서울	11	6	41	93	140	111	29	140
 부산	=	-	-	-	-	-	-	=
대구	3	-	2	4	6	6	-	6
인천	4	-	2	6	8	8	-	8
 광주	=	-	-	-	-	-	-	=
대전	4	1	3	8	12	12	-	12
 울산	2	5	6	15	26	7	19	26
 세종	=	-	-	-	-	-	-	=
 경기	28	6	28	56	90	17	73	90
강원	5	-	2	12	14	1	13	14
충북	3	1	5	7	13	5	8	13
충남	3	-	1	3	4	2	2	4
전북	1	-	-	3	3	-	3	3
 전남	=	-	5	3	8	-	8	8
 경북	5	1	10	33	44	29	15	44
경남	6	-	9	17	26	11	15	26
 제주	2	-	7	17	24	24	-	24
계	77	20	121	277	418	233	185	418

3)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2018년 4월 현재 유아특수교육기관은 유치원 과정 운영 특수학교가 125개교 267학급(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10개교 61학급 포함), 일반유치원 특수학급이 740개교 853학급으로 총 865개교 1.120학급이 운영되고 있음

〈표 3·16〉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단위 : 교. 학급)

	특수학	학교 유치원	오뉘이	
구분	전체 특수학교 유치원(A)	전체(A)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유치원 특수학급	계
학교 수	125	10	740	865
학급 수	267	61	853	1,120

● 2018년 4월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유이는 특수학교 내 유치원에 944명(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241명 포함), 유치원 특수학급에 3.058명, 유치원 일반학급에 1.628명으로 총 5.630명임

〈표 3·17〉 유아특수교육기관 학생 수

(단위 : 명)

	특수학	학교 유치원			
구분	특수 학교 유치원	전체(A) 중 유치원 과정만	유치원 특수학급	유치원 일반학급	계
	전체 (A)	운영하는 특수학교			
학생 수	944	241	3,058	1,628	5,630

- 2018년 현재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비 지원은 공립유치원 2.773명, 사립유치원 957명으로 총 3.730명이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음
- 1인 월 교육비 최고지원액 평균은 공립유치원 115.2천원, 사립유치원 354.6천원임

〈표 3·18〉 공·사립 일반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시·도	신청자 수	지원자 수	1인 최고지원액(월)	신청자 수	지원자 수	1인 최고지원액(월)
서울	47	47	146	101	101	384
부산	155	155	110	185	185	361
대구	132	132	110	103	103	361
인천	300	300	110	128	128	361
광주	67	67	110	35	35	361
대전	178	178	110	29	29	361
울산	112	112	110	29	29	380
세종	69	69	110	-	-	-
경기	1,071	1,071	90	104	104	333
강원	18	18	140	6	6	290
충북	219	219	110	19	19	413
충남	283	283	110	32	32	413
전북	1	1	90	35	35	361
전남	_	-	-	4	4	361
경북	90	90	110	59	59	141
경남	18	18	140	66	66	431
제주	13	13	137	22	22	361
계	2,773	2,773	115.2	957	957	354.6

●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및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또는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에 배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함

$\langle \text{ 표 3 \cdot 19} \rangle$ 의무교육 가능 학교 및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 $\text{ OID}^{(1)}$ 현황

(단위:교,원,개소)

	교육	‡						
특수학교		장애전담	장애통합	일반		합계		
국구학교 유치원 ²⁾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전일제 통합학급 운영 유치원	소계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소계	<u> П</u> , п
125	740	1,332	2,197	162	719	978	1,859	4,056

- 1)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영·유아보육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17.12.31. 기준
- 2) 유치원 과정이 설치된 특수학교. '18.4.1. 기준
- 3)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유치원. '18.4.1. 기준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홍보 및 배치
- 일반 유치원 배치 희망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지원 강화
- 유아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4)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거나 순회교육을 제공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장애영아 담당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 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은 2018년 4월 현재 특수학교 47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77학급, 총 124학급의 장애영아 학급이 설치되었음
- 특수학교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164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418명으로 총 582명의 장애영아가 무상교육 지원을 받고 있음
- 연령별 현황은 1세 미만 27명. 1세 175명. 2세 380명으로 총 582명임

〈표 3·20〉 시·도별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단위 : 명, 학급)

	연	령별 지	원영아	수	특수	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합 계	
시·도	1세				영아	지원	영아	지	원 영아 수	:	영아	지원
·1 *	이만 1	1세	2세	계	학급 수	영아 수	학급 수	센터지원 영아 수	순회지원 영아 수	계	학급 수	시권 영아 수
서울	6	57	127	190	14	50	11	111	29	140	25	190
부산	3	11	23	37	17	37	_	-	-	-	17	37
대구	-	2	4	6	-	-	3	6	-	6	3	6
인천	-	4	8	12	3	4	4	8	-	8	7	12
광주	4	4	11	19	4	19	_	-	-	-	4	19
대전	1	10	20	31	2	19	4	12	-	12	6	31
울산	5	6	15	26	-	-	2	7	19	26	2	26
세종	-	4	-	4	1	4	_	-	-	-	1	4
경기	6	32	63	101	1	11	28	17	73	90	29	101
강원	-	2	12	14	-	-	5	1	13	14	5	14
충북	1	5	11	17	1	4	3	5	8	13	4	17
 충남	-	1	4	5	1	1	3	2	2	4	4	5
전북	-	6	8	14	3	11	1	-	3	3	4	14
전남	-	5	4	9	_	1	_	-	8	8	-	9
경북	1	10	36	47	-	3	5	29	15	44	5	47
경남	-	9	17	26	-	-	6	11	15	26	6	26
제주	=	7	17	24	=	-	2	24	-	24	2	24
계	27	175	380	582	47	164	77	233	185	418	124	582

-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유관기관과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장애영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장애영아 조기 중재를 위한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 학급 편성·확대

5)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반학교 교원에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일반교사 양성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정의 세부 이수기준 중 교직소양 영역에 '특수교육학 개론' 과목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시행함(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161호, 2008.1.8.)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함(초·중등교육법 제59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당 교원 44.293명이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에 참여함
- 2018년 일반학교의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조성 및 일반·특수교사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다운학교' 40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연구학교는 10개교임

〈표 3·21〉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단위 : 명)

		통합학급 담당 고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世刊・6)
시·도	1~15시간 미만	15~30시간 미만	30~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계
서울	2,424	160	642	1,008	4,234
부산	1,152	61	398	2,048	3,659
대구	4	-	135	2,505	2,644
 인천	356	123	309	2551	3,339
 광주	417	29	220	936	1,602
대전	13	18	99	1,401	1,531
울산	153	54	156	1,228	1,591
세종	5	11	26	201	243
경기	1,986	216	739	7,190	10,131
강원	318	30	215	360	923
충북	335	38	153	1,199	1,725
충남	937	241	352	677	2,207
 전북	429	113	421	632	1,595
 전남	331	72	731	326	1,460
경북	1,024	100	388	1,249	2,761
경남	24	58	235	3,603	3,920
제주	362	36	74	256	728
계	10,270	1,360	5,293	27,370	44,293

^{※ 2017}학년도 통합학급 담임교사 기준

〈표 3·22〉 시·도별 통합교육 정다운학교 운영 현황

(단위:교 처원)

				<u> </u>	(인기・╨, 신전/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	2	2	2	6
부산	-	1(1)	=	=	1
대구	-	3(1)	2	=	5
인천	-	1(1)	=	=	1
 광주	-	1(1)	=	=	1
대전	-	1(1)	-	=	1
울산	-	1(1)	=	=	1
세종	-	2	3	1	6
경기	-	2	2	=	4
강원	-	1	1	=	2
충북	-	1(1)	=	=	1
충남	-	=	1(1)	=	1
전북	-	-	2	1	3
 전남	-	1(1)	=	=	1
경북	-	1	=	1	2
경남	-	-	1(1)	=	1
제주	1	1	1	=	3
계	1	19	15	5	40

^{※ ()}의 학교 수는 정다운학교 운영 학교 중 연구학교 수임.

- 일반교사의 장애학생 교육 책무성 확보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 일반학교의 일반·특수교사의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청별 통합교육 정다운 학교 운영의 확대 및 지원 강화

6)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양성

■ 관련 법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 교육교원 양성 및 연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강화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무시험검정 기준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0학점, 교직과목 20학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무시험검정 기준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 교직과목 22학점,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무시험검정 기준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 교직과목 22학점,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은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또는 일반교육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 교육을 전공한 경우에 부여됨

● 2018년 기준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한 대학은 38개교이고, 승인 인원은 1,563명임

〈표 3·23〉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단위 :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입학 정원	승인 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공주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46	46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부산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18	18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구인테	시티케릭	-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10	1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유아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국립	전남대 (여수)	사범대학	특수교육학부 초등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창원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한국교통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학과	13	13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한국체육대	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계	6		8	172	172	
	가야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17	17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2 9 11		특수체육교육과	14	14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가톨릭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
	강남대	사범대학	초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0 0 71	\\ \ \ \ \ \ \ \ \ \ \ \ \ \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사립	건양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716	701	#441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경동대	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경주대	교육과	특수체육교육학과	7	7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광주여대	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어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미술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입학 정원	승인 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초등특수교육학과	14	14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극동대	교육과	즈트트스파Oślai	1.4	1.4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어
			중등특수교육학과	14	14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교육과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나사렛대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인문사회계열	재활학부 인간재활학과	50	5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
	I-FHUI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15	1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남부대	<u></u>	초등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단국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죽전)	사람대학	一一一一	40	4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유아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대구대	사범대학	초등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11 1 -11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사립		재활과학대	직업재활학과	38	3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어
	대구한의대	의과학대학	중등특수교육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 정보·컴퓨 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 일본어
	대전대	사회과학대학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백석대	사범학부	특수교육과	60	6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어
			특수체육교육과	40	4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부산장신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세한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 정교사(2급)
	순천향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2급)
	신라대	체육계열	체육학부 특수체육전공	60	2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입학 정원	승인 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영남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영동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70 0	11. 14. 17. 1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용인대	체육과학대학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우석대	사범대학 ·	유아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구극대	시티네릭	특수교육과	31	31	특수학교 정교사(2급)
	원광대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27	27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위덕대	교육과 :	특수교육학부 초등특수교육전공	21	21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귀듹대	ш ң н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21	21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이화여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사립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인제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주대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조선대	사범대학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u> </u>	.,,,,,,	711	00	0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유아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중부대	사범계 ·	초등 특 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011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교목
			특수체육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유이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한국국제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체육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한신대	휴먼서비스대학	특수체육학과	40	4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계	32		54	1,529	1,391	
총계	38		62	1,701	1,563	

• 2018년 기준 17개 대학의 교육대학원에서 27개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24〉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교육대학원)

(단위:교,개)

설립별	대학원명	설립 년도	수업 형태	18학년도 운영전공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1986		중등특수교육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공주대	1999	계절	초등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1997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2001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부산대	1999	01간	초등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1999		중등특수교육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서울대	1999	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 정교사(2급)
국립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국답	창원대	1997	0: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한국교통대	2013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한국교원대	1997	계절	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국립계	6			1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1984	계절	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71710 = H1 [171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감각운동발달장애 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사립	대구대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1007	ᅰᄍ	TI저글L스비LFLTLAII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1997	계절	지적학습발달장애 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설립별	대학원명	설립 년도	수업 형태	18학년도 운영전공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스워하다	1999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순천향대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2011	야간	특수체육교육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세종대	1998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아주대	2001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게건 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영남대	1999	계절·주 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L: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용인대	1998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 정교사(2급)
	우석대	1986		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사립		1900	계절	一十世书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1996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이화여자대	1993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인제대	1998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전주대	2000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조선대	1999	계절	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사립계	11			17	
총계	17			27	

● 2018년 기준 10개의 교육대학교에 설치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과정을 운영 하고 있음

〈표 3·25〉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현황

(단위 : 명)

교육대학명	형태	수업형태	´18학년도 입학정원	´18학년도 운영전공	
서울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0칸	10		
부산교육대학교	트스미하이	0칸	8	초등	
대구교육대학교	- 특수대학원	계절·야간	총정원제 운영		
	전문대학원	계절·야간	30		
광주교육대학교		0칸	소저이미 이어		
춘천교육대학교		계절·야간	총정원제 운영	특수교육	
청주교육대학교	트스미하이	계절	11		
공주교육대학교	- 특수대학원	계절	소전이네이어		
전주교육대학교		0칸	총정원제 운영		
진주교육대학교		0칸	15		

-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강화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일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과정의 교육과정 강화 및 전공 교수 확보

(2) 특수교육 담당교원 현직연수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자질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직연수는 국립특수 교육원, 시·도교육청(산하기관인 시·도 교육연수원 포함) 및 대학 부설 교육 연수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은 출석(집합)연수 혹은 원격교육연수를 통해 특수교사 자격연수 (유·초등·부전공과목), 직무연수, 해외연수 및 기타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은 특수교사 자격연수(초·중등)와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시·도별 특수학교(급)의 전체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율은 특수학교가 99.2%. 특수학급이 99.7%. 전체 99.5%로 나타남

〈표 3·26〉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 소지 현황

(단위:명,%)

			학교 포함)			특수학급				합	계	
시·도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서울	1,476	1,452	24	98.4	1,311	1,311	-	100	2,787	2,763	24	99.1
부산	661	661	-	100	566	566	-	100	1,227	1,227	-	100
대구	521	514	7	98.7	439	439	-	100	960	953	7	99.3
인천	448	447	1	99.8	624	624	-	100	1,072	1,071	1	99.9
광주	351	351	-	100	274	274	-	100	625	625	-	100
대전	326	322	4	98.8	358	358	-	100	684	680	4	99.4
 울산	254	254	-	100	256	254	2	99.2	510	508	2	99.6
세종	52	52	-	100	100	100	-	100	152	152	-	100
경기	1,762	1,759	3	99.8	3,148	3,139	9	99.7	4,910	4,898	12	99.8
강원	359	346	13	96.4	382	375	7	98.2	741	721	20	97.3
충북	431	431	-	100	442	439	3	99.3	873	870	3	99.7
충남	367	359	8	97.8	728	725	3	99.6	1,095	1,084	11	99.0
전북	390	390	-	100	402	401	1	99.8	792	791	1	99.9
전남	376	368	8	97.9	554	553	1	99.8	930	921	9	99.0
경북	485	479	6	98.8	595	593	2	99.7	1,080	1,072	8	99.3
경남	542	541	1	99.8	781	780	1	99.9	1,323	1,321	2	99.8
제주	161	161	-	100	117	117	-	100	278	278	-	100
총계	8,962	8,887	75	99.2	11,077	11,048	29	99.7	20,039	19,935	104	99.5

• 2018년 현재 특수교육교원 연구회는 356개이며 6,769명이 특수교육 관련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표 3·27〉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단위:개,명,천원)

시·도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수	회원 수	지원 예산
 서울	6	450	10,480
 부산	65	458	29,000
대구	26	554	59,180
 인천	46	869	39,870
 광주	17	357	21,540
대전	6	63	12,600
 울산	7	242	7,000
 세종	6	127	16,500
- 경기	7	109	16,000
강원	67	528	14,574
 충북	1	30	3,000
충남	34	601	19,601
 전북	29	275	37,720
 전남	8	814	19,840
 경북	9	359	17,500
경남	16	771	38,660
제주	6	162	12,000
계	356	6,769	375,065

- 특수교육교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 함양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와 연수주기 단축
-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교과 연수 제공 확대
- 특수교육교원 연수과정의 질 제고 및 참여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다양화
- 특수교육교원의 균형적인 자격연수 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 희소과목 담당교사의 자격연수는 관련 교과 연수 참여 인정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 관련 법규

- 각급 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1조)
-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교육책임자가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함(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7년 9월 기준 시·도 교육청 관할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은 779개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5.9%임

〈표 3 · 28〉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7)

(단위:교, %)

				매개	시설					내누	시설				위생	시설		
시 · 도	특수 학급 설치		·입구 - - - - - - -		애인 구역	높이	입구 차이 거		입구 문)	복	·도		또는 강기	화? 대:		화경 소t		평균 설치
<u> </u>	유치원 수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비율
서울	74	72	97.3	74	100.0	71	95.9	71	95.9	71	95.9	67	90.5	67	90.5	66	89.2	94.4
부산	49	48	98.0	48	98.0	47	95.9	47	95.9	47	95.9	47	95.9	47	95.9	47	95.9	96.4
대구	19	19	100.0	18	94.7	19	100.0	19	100.0	19	100.0	19	100.0	19	100.0	19	100.0	99.3
인천	38	38	100.0	37	97.4	38	100.0	38	100.0	38	100.0	38	100.0	35	92.1	33	86.8	97.0
광주	28	26	92.9	23	82.1	25	89.3	25	89.3	24	85.7	26	92.9	24	85.7	20	71.4	86.2
대전	41	40	97.6	41	100.0	40	97.6	41	100.0	41	100.0	37	90.2	36	87.8	35	85.4	94.8
울산	18	18	100.0	18	100.0	18	100.0	18	100.0	18	100.0	18	100.0	18	100.0	18	100.0	100.0
세종	19	19	100.0	19	100.0	19	100.0	19	100.0	19	100.0	19	100.0	19	100.0	19	100.0	100.0
경기	308	303	98.4	305	99.0	297	96.4	306	99.4	294	95.5	291	94.5	295	95.8	273	88.6	95.9
강원	30	27	90.0	26	86.7	27	90.0	28	93.3	28	93.3	27	90.0	26	86.7	22	73.3	87.9
충북	1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0.0
충남	43	43	100.0	43	100.0	43	100.0	43	100.0	43	100.0	43	100.0	43	100.0	40	93.0	99.1
전북	16	16	100.0	16	100.0	15	93.8	15	93.8	13	81.3	15	93.8	15	93.8	14	87.5	93.0
전남	36	36	100.0	36	100.0	36	100.0	36	100.0	36	100.0	36	100.0	36	100.0	36	100.0	100.0
경북	13	12	92.3	12	92.3	12	92.3	13	100.0	13	100.0	13	100.0	12	92.3	11	84.6	94.2
경남	33	33	100.0	33	100.0	32	97.0	33	100.0	33	100.0	33	100.0	33	100.0	31	93.9	98.9
제주	4	4	100.0	3	75.0	3	75.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93.8
계	779	764	98.1	762	97.8	752	96.5	766	98.3	751	96.4	743	95.4	739	94.9	698	89.6	95.9

[※] 단순설치율 현황

● 2017년 9월 기준 시·도 교육청 관할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등학교는 7,099개교 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6.9%임

〈표 3·29〉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7)

(단위:교.%)

_																				(단위	: Ш,	%)		
	투수			매개	시설					내부	시설				위생	시설				안나	시설			
시 · 도	학급 설치 초·	주출 접:		장 ⁰ 주차		주출 높이 제		출입 (단		복	도	계단 승(당실 변기	화? 소:			자 -록	유도 및 연	안내설비	경보 및 ፲	디난설비	평균설치
	중· 고· 학교수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비율
서울	699	699	100.0	697	99.7	694	99.3	692	99.0	684	97.9	656	93.8	698	99.9	682	97.6	587	84.0	412	58.9	662	94.7	93.2
부산	480	480	100.0	480	100.0	480	100.0	480	100.0	480	100.0	479	99.8	479	99.8	478	99.6	480	100.0	479	99.8	478	99.6	99.9
대구	285	285	100.0	285	100.0	285	100.0	285	100.0	285	100.0	284	99.6	285	100.0	284	99.6	285	100.0	284	99.6	284	99.6	99.9
인천	404	402	99.5	395	97.8	404	100.0	404	100.0	403	99.8	404	100.0	399	98.8	347	85.9	396	98.0	236	58.4	329	81.4	92.7
광주	200	200	100.0	200	100.0	199	99.5	200	100.0	156	78.0	178	89.0	200	100.0	196	98.0	199	99.5	200	100.0	196	98.0	96.5
대전	215	215	100.0	215	100.0	215	100.0	215	100.0	211	98.1	214	99.5	215	100.0	215	100.0	215	100.0	213	99.1	214	99.5	99.7
울산	161	161	100.0	161	100.0	161	100.0	161	100.0	161	100.0	161	100.0	161	100.0	161	100.0	161	100.0	161	100.0	161	100.0	100.0
세종	59	59	100.0	59	100.0	59	100.0	59	100.0	59	100.0	59	100.0	59	100.0	59	100.0	59	100.0	59	100.0	59	100.0	100.0
경기	1,710	1,681	98.3	1,703	99.6	1,696	99.2	1,697	99.2	1,634	95.6	1,636	95.7	1,700	99.4	1,561	91.3	1,576	92.2	1,426	83.4	1,507	88.1	94.7
강원	330	324	98.2	324	98.2	329	99.7	329	99.7	324	98.2	316	95.8	328	99.4	250	75.8	322	97.6	315	95.5	308	93.3	95.6
충북	303	302	99.7	302	99.7	303	100.0	303	100.0	299	98.7	284	93.7	303	100.0	289	95.4	298	98.3	284	93.7	290	95.7	97.7
충남	435	434	99.8	434	99.8	435	100.0	434	99.8	434	99.8	430	98.9	435	100.0	418	96.1	425	97.7	408	93.8	433	99.5	98.6
전북	314	307	97.8	314	100.0	314	100.0	304	96.8	298	94.9	298	94.9	306	97.5	303	96.5	302	96.2	307	97.8	306	97.5	97.2
전남	393	392	99.7	393	100.0	392	99.7	391	99.5	392	99.7	387	98.5	392	99.7	386	98.2	388	98.7	390	99.2	382	97.2	99.1
경북	455	454	99.8	454	99.8	455	100.0	455	100.0	455	100.0	451	99.1	450	98.9	449	98.7	452	99.3	445	97.8	441	96.9	99.1
경남	567	567	100.0	565	99.6	566	99.8	564	99.5	565	99.6	563	99.3	567	100.0	563	99.3	565	99.6	562	99.1	563	99.3	99.6
제주	89	89	100.0	89	100.0	89	100.0	89	100.0	89	100.0	89	100.0	89	100.0	88	98.9	89	100.0	78	87.6	89	100.0	98.8
계	7,099	7,051	99.3	7,070	99.6	7,076	99.7	7,062	99.5	6,929	97.6	6,889	97.0	7,066	99.5	6,729	94.8	6,799	95.8	6,259	88.2	6,702	94.4	96.9

[※] 단순설치율 현황

● 2017년 9월 기준 시·도 교육청 관할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등학교는 4,647개교 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0.4%임

〈표 3·30〉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7)

(단위:교,%)

				매개	시설				내부시설						위생	시설				안내	시설			
시 · 도	투수 학급 미설치 초·중·고	주출 접:		_	배인 구역	주출 높이 제		출입 (단		복	도		또는 당기	화? 대:		화장 소년		점 블		유 <u>5</u> 안내		경5 파난		평균 설치
_	학교 수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치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치율	설 치 교	설 자율	비율										
서울	597	560	93.8	592	99.2	541	90.6	551	92.3	543	91.0	456	76.4	565	94.6	562	94.1	379	63.5	321	53.8	531	88.9	85.3
부산	142	141	99.3	142	100.0	142	100.0	142	100.0	142	100.0	137	96.5	141	99.3	141	99.3	137	96.5	137	96.5	138	97.2	98.6
대구	157	157	100.0	156	99.4	156	99.4	157	100.0	157	100.0	152	96.8	153	97.5	155	98.7	154	98.1	153	97.5	153	97.5	98.6
인천	112	96	85.7	96	85.7	108	96.4	112	100.0	112	100.0	112	100.0	98	87.5	89	79.5	96	85.7	48	42.9	91	81.3	85.9
광주	110	110	100.0	109	99.1	108	98.2	109	99.1	102	92.7	67	60.9	108	98.2	100	90.9	105	95.5	106	96.4	109	99.1	93.6
대전	82	81	98.8	82	100.0	82	100.0	82	100.0	71	86.6	64	78.0	82	100.0	82	100.0	80	97.6	74	90.2	82	100.0	95.6
울산	78	78	100.0	78	100.0	78	100.0	78	100.0	78	100.0	78	100.0	78	100.0	78	100.0	77	98.7	78	100.0	78	100.0	99.9
세종	22	22	100.0	22	100.0	22	100.0	22	100.0	22	100.0	22	100.0	22	100.0	22	100.0	22	100.0	22	100.0	22	100.0	100.0
경기	653	602	92.2	627	96.0	587	89.9	615	94.2	563	86.2	464	71.1	591	90.5	502	76.9	508	77.8	426	65.2	516	79.0	83.5
강원	330	306	92.7	308	93.3	308	93.3	321	97.3	299	90.6	297	90.0	286	86.7	220	66.7	285	86.4	270	81.8	276	83.6	87.5
충북	161	160	99.4	161	100.0	159	98.8	158	98.1	159	98.8	139	86.3	160	99.4	154	95.7	158	98.1	147	91.3	148	91.9	96.2
충남	287	282	98.3	282	98.3	282	98.3	287	100.0	286	99.7	272	94.8	275	95.8	273	95.1	270	94.1	257	89.5	285	99.3	96.6
전북	442	414	93.7	437	98.9	425	96.2	394	89.1	388	87.8	368	83.3	406	91.9	409	92.5	369	83.5	389	88.0	428	96.8	91.1
전남	485	424	87.4	428	88.2	411	84.7	449	92.6	459	94.6	427	88.0	408	84.1	391	80.6	385	79.4	364	75.1	362	74.6	84.5
경북	473	459	97.0	466	98.5	460	97.3	468	98.9	463	97.9	446	94.3	438	92.6	434	91.8	458	96.8	446	94.3	440	93.0	95.7
경남	415	396	95.4	394	94.9	393	94.7	399	96.1	391	94.2	363	87.5	396	95.4	386	93.0	391	94.2	384	92.5	373	89.9	93.5
제주	101	101	100.0	100	99.0	101	100.0	101	100.0	101	100.0	101	100.0	101	100.0	98	97.0	100	99.0	97	96.0	101	100.0	99.2
계	4,647	4,389	94.4	4,480	96.4	4,363	93.9	4,445	95.7	4,336	93.3	3,965	85.3	4,308	92.7	4,096	88.1	3,974	85.5	3,719	80.0	4,133	88.9	90.4

[※] 단순설치율 현황

● 2017년 9월 기준 시·도 교육청 관할 특수학교는 174개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 균 설치율은 99.3%임

〈표 3·31〉 특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7)

(단위:교,%)

				매기	바시설					내부	시설				위생	시설				안나	시설			
시 · 도	투수 학교		:입구 근로	_	애인 타구역	높0	입구 차이 거		입구 문)	복	· 도	계단 승진	또는 강기		당실 변기		장실 변기	_	자 록		E 및 설비	경5 피닌	선 및 설비	평균설치
_	수 -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설 치 교	설 치 율	율										
서울	29	29	100.0	28	96.6	29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28	96.6	29	100.0	28	96.6	99.0
부산	15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00.0
대구	9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100.0
인천	8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100.0
광주	5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4	80.0	5	100.0	5	100.0	98.2
대전	5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100.0
울산	4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100.0
세종	1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00.0
경기	35	34	97.1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3	94.3	33	94.3	33	94.3	33	94.3	35	100.0	97.7
강원	7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100.0
충북	1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0.0
충남 	6	6	100.0	6	100.0	6	100.0	6	100.0	6	100.0	6	100.0	6	100.0	6	100.0	6	100.0	6	100.0	6	100.0	100.0
전북	11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00.0
전남 	8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100.0
경북	8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100.0
경남	9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100.0
제주	3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100.0
계	174	173	99.4	173	99.4	174	100.0	174	100.0	174	100.0	174	100.0	172	98.9	172	98.9	170	97.7	172	98.9	173	99.4	99.3

※ 단순설치율 현황

■ 향후 과제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지속적 추진

②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현재 유치원 530명, 초등학교 740명, 중학교 355명, 고등학교 255명
 총 1.850명의 학생이 순회교육 지원을 받고 있음

〈표 3·32〉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단위: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52	26	21	18	117
 부산	40	11	10	26	87
대구	4	19	4	3	30
 인천	24	12	8	2	46
 광주	15	5	4	1	25
대전	15	5	6	14	40
 울산	22	20	5	6	53
세종	2	-	-	_	2
 경기	17	66	28	12	123
강원	28	45	19	20	112
 충북	49	47	28	17	141
충남	47	83	31	17	178
전북	32	54	41	3	130
전남	33	87	49	9	178
경북	31	91	41	28	191
경남	90	116	54	42	302
제주	29	53	6	7	95
계	530	740	355	225	1,850

■ 향후 과제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운영 등 지원 강화
-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 관련 법규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 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 포함) 등 특수교육대 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8년도 4월 기준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에 199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으로는 802명의 교사, 일반직 43명, 치료사와 보조인력을 포함한 기타인력 555명으로 모두 1.400명임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설비비,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 운영비 등 지원
 예산은 약 842억원임

〈표 3·3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 · 도	센 터		교사			일반직			기 (전체 계			전체	연간 지원 예산
_	수	정 규	계 약	계	정 규	계 약	계	치 료 사	사회 복무 요원	기타	계		(총액)
서울	12	51	21	72	-	-	-	-	-	40	40	112	9,055
부산	6	33	3	36	8	-	8	-	-	1	1	45	3,415
대구	5	21	25	46	1	-	1	-	11	-	11	58	4,790
인천	6	26	5	31	-	-	-	6	3	3	12	43	2,657
광주	3	14	3	17	1	6	7	-	4	5	9	33	1,593
대전	6	17	12	29	-	2	2	3	-	4	7	38	1,479
울산	3	13	6	19	1	-	1	34	3	12	49	69	6,523
세종	1	6	-	6	-	-	-	5	-	-	5	11	1,087
경기	26	74	27	101	-	9	9	50	1	54	105	215	13,588
강원	18	28	17	45	-	-	-	37	9	2	48	93	2,892
충북	11	32	27	59	1	-	1	13	1	11	25	85	5,252
충남	15	31	35	66	3	-	3	39	2	11	52	121	8,425
전북	15	27	28	55	5	-	5	15	1	24	40	100	5,552
전남	23	33	39	72	-	-	-	25	1	-	26	98	6,303
경북	24	37	30	67	-	1	1	11	25	2	38	106	3,330
경남	22	43	25	68	5	-	5	74	-	7	81	154	7,037
제주	3	9	4	13	_	-	-	6	-	-	6	19	1,189
계	199	495	307	802	25	18	43	318	61	176	555	1,400	84,167

[※] 정규교사에 파견교사 16명 포함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담당 전문직 및 행정직원 확대
- 상담 및 통합교육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확대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3)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 관련 법규

●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8년 4월 현재 특수학교 257개 순회·파견학급에서 263명의 교사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 학생 수는 총 925명으로, 기관별로 가정 569명, 시설 318명, 병원 38명이며, 학교과정별로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174명, 초등학교 282명, 중학교 200명, 고등학교 269명임
- 2018년 4월 현재 특수학급 312개의 순회·파견학급에서 353명의 교사들이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학급 순회교육 대상자의 수는 총 1,135명으로, 기관별로 가정 503명, 시설 544명, 병원 10명, 일반학교 78명이며, 학교과정별로 유치원 53명, 초등학교 464명, 중학교 317명, 고등학교 301명임

〈표 3·34〉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자 수

(단위:학급,명)

						학생 수						
			기관				ō	교과정			학	교
구분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장애영아 포함)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급 수	사 수
특수학교에서 순회·파견	569	318	38	-	925	174	282	200	269	925	257	263

〈표 3·35〉 특수학급 순회교육 대상자 수

(단위:학급,명)

					학	생 수					-1	
구분			기관					학교과정	!		학 급	교 사
1 E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수	수
특수학급에서 순회· 파견· 겸임	503	544	10	78	1,135	53	464	317	301	1,135	312	353

- 2018년 4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721명의 교사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대상자는 총 2,232명으로, 기관별로 가정 465명,
 시설 98명, 병원 16명, 일반학교 1,653명이며, 학교과정별로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731명, 초등학교 825명, 중학교 405명, 고등학교 271명임

〈표 3·36〉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대상자 수

(단위 : 학급, 명)

										(011.	70,0/
					학	생 수					
			기관				2	학교과정			교
구분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장애영 아 포함)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사 수
특수교육지원센터	465	98	16	1,653	2,232	731	825	405	271	2,232	721*

^{*}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교사 등 292명 포함

- 가정·병원·시설 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 지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
- 순회교육 내실화를 위해 순회교육 전담인력 연수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 확대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교육감은 가족지원과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인력,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8년 현재 43,340명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과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3·37〉 치료지원 현황

(단위 : 명. 처원)

구분	지원 인원	지원 예산
서울	8,917	12,762,170
부산	3,468	4,657,800
대구	3,894	4,078,080
인천	2,385	2,781,946
광주	2,186	2,873,640
대전	1,364	1,300,622
울산	968	2,327,473
세종	385	384,576
경기	2,911	4,024,842
강원	2,239	1,264,800
충북	2,690	3,206,242
충남	2,012	2,659,833
전북	2,614	3,227,879
전남	1,336	2,091,857
경북	3,236	3,845,740
경남	2,019	4,373,605
제주	716	875,938
계	43,340	56,737,043

-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2018년 4월 현재 국고·지방비 지원 등 유급 특수교육 보조인력, 공공근로 및 사회복무요원 등 무급 특수교육 보조인력 포함 모두 12,449명이 배치 되어 있음
- 국고·지방비 지원 등 유급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7,982명으로 특수학교 2,539명, 특수학급 5,252명, 일반학급에 191명이 배치됨
- 공공근로 및 사회복무요원 등 무급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4.467명이 배치됨

〈표 3·38〉 시·도별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수

(단위 : 명)

			특	수학교					특	수학급					일빈	학급			
		유	급		공			유	급		공			유	급		공		
시 도	국고 · 지방비	자치 단체 (자활 후원 단체)	기타	소계	근로 사회 목무 - 다급	소계	국고 · 지방비	자치 단체 (자활 후원 단체)	기타	소계	전 사회 목 - 무 - 무	소계	국고 · 지방비	자치 단체 (자활 후원 단체)	기타	소계	근로 사회 복무 무급	소계	계
서울	303	-	-	303	755	1,058	681	50	-	731	515	1,246	12	-	1	13	10	23	2,327
부산	293	1	-	293	53	346	289	22	1	311	38	349	9	-	-	9	-	9	704
대구	217	-	-	217	68	285	295	-	-	295	125	420	2	-	-	2	5	7	712
인천	183	-	-	183	23	206	412	6	3	421	38	459	1	-	-	1	-	1	666
광주	78	-	-	78	58	136	157	10	-	167	80	247	1	-	-	1	-	1	384
대전	160	1	-	160	37	197	300	4	-	304	107	411	-	1	-	1	-	1	609
울산	108	1	-	108	102	210	182	-	1	182	126	308	-	-	-	-	7	7	525
세종	20	ı	ı	20	2	22	52	1	ı	52	İ	52	ı	-	-	-	-	-	74
경기	244	33	-	277	312	589	775	62	2	839	633	1,472	8	-	-	8	6	14	2,075
강원	69	ı	-	69	36	105	205	8	1	213	2	215	25	-	-	25	-	25	345
충북	199	1	ı	199	17	216	257	-	ı	257	45	302	16	-	-	16	3	19	537
충남	108	ı	3	111	24	135	341	1	7	348	26	374	ı	-	-	-	-	-	509
전북	146	-	-	146	19	165	224	-	-	224	21	245	26	-	-	26	5	31	441
전남	74	1	ı	74	67	141	168	4	ı	172	105	277	35	-	-	35	27	62	480
경북	102	-	ı	102	151	253	316	2	-	318	109	427	28	-	-	28	52	80	760
경남	149	ı	-	149	122	271	333	-	- 1	333	304	637	17	-	-	17	33	50	958
제주	50	-	-	50	95	145	82	3	-	85	70	155	9	-	-	9	34	43	343
계	2,503	33	3	2,539	1,941	4,480	5,069	171	12	5,252	2,344	7,596	189	1	1	191	182	373	12,449

- 교통비 지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26,337명 중 통학버스 이용학생 16,272명을 제외한 10,065명 중 8,964명(학부모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학생 64,443명 중 통학버스 이용학생 5,106명을 제외한 59,337명 중 28,044명(학부모 포함)을 지원하고 있음
- 교통비 지원예산은 약 202억원임

〈표 3·39〉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특 ·	수학교(선	센터 포함	<u></u> })				일빈	학교		
시 ·	전체	학교 통학		비 지원		교통비	전체	학교 통학		비 지원 학부모 포		교통비
도	학생 수	버스 이용 학생 수	유치원	초등 학교	중· 고등 학교	지원 예산	학생 수	버스 이용 학생 수	유치원	초등 학교	중 고등 학교	지원 예산
서울	4,537	2,480	92	404	488	359	8,204	-	-	-	1,679	687
부산	1,814	1,237	-	244	294	106	4,112	-	-	396	396	185
대구	1,627	875	4	304	371	246	3,228	72	-	318	857	534
인천	1,505	856	36	69	153	397	4,267	156	35	65	722	457
광주	1,016	684	3	92	138	190	1,811	_	56	227	506	560
대전	1,069	625	20	58	156	948	2,256	-	114	119	450	545
울산	801	513	I	92	335	180	1,787	96	45	239	490	430
세종	132	97	1	6	2	44	370	38	7	11	38	38
경기	4,813	2,925	50	829	1,635	955	15,997	395	1,029	3,705	5,559	3,700
강원	917	679	1	15	48	142	1,985	223	105	529	418	554
충북	1,275	781	25	148	408	369	2,747	291	96	645	904	704
충남	1,039	864	28	41	107	1,450	3,455	2,224	105	136	728	455
전북	1,151	837	5	41	134	90	2,420	130	12	320	738	535
전남	1,072	610	30	80	235	332	2,638	375	40	450	865	984
경북	1,502	898	10	267	477	758	3,347	626	44	1,131	1,543	1,120
경남	1,590	1,031	6	318	584	581	4,831	480	82	569	1,169	1,025
제주	477	280	-	44	36	219	988	-	25	208	119	340
계	26,337	16,272	311	3,052	5,601	7,366	64,443	5,106	1,795	9,068	17,181	12,853

• 2018년 4월 현재 전국 175개 특수학교에서 통학버스 677대를 운영하며 25,919명의 재학생 중 16,272명(62.8%)의 학생을 통학 지원하고 있음

〈표 3·40〉 시·도별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비율

(단위 : 명, 대, %)

시·도	전체학생 수	통학버스 수	이용학생 수	이용비율
서울	4,397	94	2,480	56.4
부산	1,814	51	1,237	68.2
대구	1,621	35	875	54.0
인천	1,497	33	856	57.2
광주	1,016	34	684	67.3
대전	1,057	25	625	59.1
울산	775	26	513	66.2
 세종	132	4	97	73.5
 경기	4,723	133	2,925	61.9
강원	903	26	679	75.2
충북	1,262	34	781	61.9
 충남	1,035	35	864	83.5
 전북	1,148	45	837	72.9
 전남	1,064	24	610	57.3
경북	1,458	35	898	61.6
경남	1,564	32	1,031	65.9
제주	453	11	280	61.8
계	25,919	677	16,272	62.8

-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26,337명 중 25,481명,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학생 64,443명 중 63,454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 급식비 지원예산은 약 649억원임

〈표 3·41〉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u>=</u>	수학교(센터 포함)				일반	학교		
시 ·	전체	지원	급식비	보조금(1	인 1식)	급식비	전체	지원	급식비	보조금(1	인 1식)	급식비
도	학생 수	학생 수	유치원	초등 학교	중·고등 학교	지원 예산	학생 수	학생 수	유치원	초등 학교	중·고등 학교	지원 예산
서울	4,537	4,397	5,753	5,753	5,753	4,806	8,204	8,204	4,430	4,430	4,795	6,980
부산	1,814	1,814	3,500	3,500	3,500	1,230	4,112	4,112	3,290	2,900	3,640	2,612
대구	1,627	1,592	6,171	6,171	6,171	1,835	3,228	3,199	4,198	4,198	5,242	2,805
인천	1,505	1,497	3,100	3,100	3,100	875	4,267	4,267	2,880	2,880	3,770	3,299
광주	1,016	1,016	6,465	6,465	6,465	1,248	1,811	1,811	4,392	4,392	5,326	1,661
대전	1,069	1,057	2,700	2,700	2,700	722	2,256	2,256	2,850	2,850	3,400	1,397
울산	801	698	3,750	3,750	3,750	414	1,787	1,586	2,937	2,937	3,596	879
세종	132	132	3,130	4,510	4,985	115	370	370	3,130	4,510	4,985	310
경기	4,813	4,723	3,140	3,142	3,790	2,714	15,997	15,997	3,026	3,187	4,283	10,467
강원	917	903	3,160	3,160	3,160	1,257	1,985	1,985	1,510	2,250	2,635	878
충북	1,275	1,053	7,247	7,247	7,247	1,471	2,747	2,747	-	4,216	4,963	2,132
충남	1,039	996	2,989	2,989	2,989	552	3,455	3,455	2,276	4,260	4,428	2,660
전북	1,151	1,096	3,100	3,100	3,100	643	2,420	2,420	2,400	2,600	3,300	1,330
전남	1,072	1,023	5,825	5,825	5,825	1,213	2,638	2,626	4,825	4,825	5,421	1,769
경북	1,502	1,458	3,000	3,000	3,000	837	3,347	3,347	2,600	2,600	3,150	1,817
경남	1,590	1,573	2,460	2,460	3,130	921	4,831	4,084	=	2,248	2,965	1,945
제주	477	453	4,173	4,173	4,173	469	988	988	3,931	3,931	4,178	714
계*	26,337	25,481*	69,663	71,045	72,838	21,322	64,443	63,454	48,675	59,214	70,077	43,655

^{*} 급식을 하지 않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418명) 등은 미포함

[※] 충북, 경남 일반학교 유치원의 급식비는 의무교육비에 포함되어 미산정되나, 급식비 지원하고 있음

■ 향후 과제

-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상자별 적합한 지원 영역,
 치료지원 적정단가 산출 등 효율적 제공 방법 강구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다양화 및 역량 강화 등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활용한 효율적 지원 추진
- 치료지원을 비롯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가족지원,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통학 지원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

5)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및 병원학교 설치·운영 강화

■ 관련 법규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건강장애를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0조 별표)
 -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시스템은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에 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실시간 온라인으로 수업을 제공하고 출석인정을 하는 제도임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8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병원학교는 36개교로 47명의 담당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월 평균 이용 건강장애 학생 수는 863명임
- 병원학교에 배치된 학생에게 교과교육, 체험활동, 방과후활동 등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학교교육 지원

〈표 3·42〉 병원학교 운영 현황

(단위 : 명)

		01-1-7	(211.0)
시·도	병원명 또는 병원학교명	월평균 이용 학생 수	담당 인력 수
	국립정신건강센터	14	특수교사 3
	삼성서울병원	45	중등정교사 1
	서울대병원	38	평생교육사 1
	서울성모병원	25	사회복지사 1
서울	서울시어린이병원	3	음악치료사 1, 특수교사 1
시돌	서울아산병원	28	의료사회복지사 1
	연세암병원	74	중등정교사 1, 심리상담사 1
	원자력병원	14	간호사 1, 사회복지사 1
	한양대병원	9	간호사 1
	고대구로병원	24	사회복지사 1
	부산대병원학교	5	특수교사 1
HAL	동아대병원학교	6	특수교사 1
부산	인제대부산백병원학교	8	특수교사 1
	인제대해운대백병원학교	5	특수교사 1
	영남대의료원병원학교	15	특수교사 1
대구	대동병원학교	17	특수교사 1
	경북대병원학교	10	특수교사 1
인천	인하대병원학교	58	특수교사 1
광주	학마을병원학교	5	특수교사 1
대전	충남대병원학교	8	특수교사 1
울산	울산대학교병원학교	14	특수교사 1, 순회교사 1
7471	국립암센터	10	특수교사 2
경기	브론코기념병원	3	특수교사 2
7101	강원대병원학교	260	특수교사 1
강원	강릉이산병원학교	30	특수교사 1
충북	충북대병원학교	2	특수교사 1
	국립공주병원학교	8	특수교사 2
충남	아람메디컬 병원학교	8	특수교사 1
	단국대병원학교	6	특수교사 1
전북	한누리병원학교	12	특수교사 1
T-J1	느티나무병원학교	10	특수교사 1
전남	여미사랑병원학교	15	특수교사 2
	경상대병원학교	7	특수교사 1
경남	양산부산대병원학교	61	특수교사 2
	국립부곡병원학교	4	특수교사 1
제주	제주대학교병원학교	2	특수교사 1
계	36	863	47

• 건강장애학생 학습 지원을 위해 5개 기관에서 원격수업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건강장애학생은 1,392명이고, 월 평균 이용 학생 수는 1,742명임

〈표 3·43〉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기관 현황

			진	선체 학생 -	수	월 평균	개별학생
기관명	학급 수	강사 수	건강 장애	기타	계	이용 학생 수	평균 이용일
꿀맛무지개학교(서울특별시교육청)	14	15	165	72	237	208	78
인천사이버학교(인천광역시교육청)	6	6	32	4	36	32	20
꿈빛나래학교(충청남도교육청)	6	28	18	7	25	24	48
꿈사랑학교	55	34	890	329	1,219	1,147	84
한국교육개발원	12	5	287	85	372	331	63
계	93	88	1,392	497	1,889	1,742	293

- 건강장애학생의 유급방지 및 학습권 보장
- 자원봉사교사제 활용 및 학생 소속 학교와의 연계 강화
- 병원학교 유관기관 및 관계자간 협력체계 운영 활성화
- 건강장애학생 학교 복귀 프로그램 지원

6)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 강화

■ 관련법규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일반학급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 현황 및 실적

-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전국 775개 기관과 연계하여 1,378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29.15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392개 기관과 연계하여 69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24.51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

〈표 3·44〉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현황

(단위 : 명)

시·도		문화예술			체육	(ЦП • 6)
교육청	연계 기관 수	운영프로그램수	참여 학생 수	연계 기관 수	운영프로그램수	참여 학생 수
서울	57	159	3,794	31	82	1,733
부산	143	436	2,198	71	264	1,402
대구	60	84	6,130	24	27	7,802
인천	28	61	1,052	7	6	40
광주	7	48	1,751	6	19	1,967
대전	34	50	1,417	13	19	862
울산	5	19	1,089	7	50	290
세종	5	14	95	7	10	72
경기	39	35	392	1	31	3,332
강원	100	56	1,861	29	27	493
충북	11	60	635	10	11	304
충남	85	157	2,491	11	12	102
전북	24	35	2,800	24	24	2,800
전남	98	70	1,181	57	58	1,107
경북	49	62	1,411	25	30	891
경남	24	24	181	66	18	630
제주	6	8	679	3	9	687
계	775	1,378	29,157	392	697	24,514

■ 향후 과제

- 장애학생 문화예술·맞춤형 체육활동의 지속적 지원 필요
- 장애학생 건강체력의 체계적 관리 및 증진을 위한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시스템 도입·정착 필요

③ 진로 및 고등 · 평생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 관련 법규

- 중학교의 장은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자유학기를 운영함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 현황 및 추진실적

- '18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으로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 (164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자유학기제(한 학기)는 136 교.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두 학기)는 48교에서 운영함
 - ※ '18학년도 한시적으로 중학교 졸업 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수는 1,906명, 자유학년제 참여 학생수는 714명
 으로 총 2.62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음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처 1,964개, 시·도교육청 자체 체험처 887개 발굴·확보함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교사연구회가 116개 조직·운영되고 있으며 2.244명 연수 이수함

〈표 3·45〉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현황

※ 기준일: 2018.6.1. (단위: 교, 명, 개)

			특수학교 자유학	가기제 운영 현황	}	체험처	학보 현황		자유학기제 성 향상
시·도	중학교과정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꿈길에	자체 발굴	특수학교	투수학교
ŊΙ	특수학교 수	운영교	참여학생	운영교	참여학생	등록된 체험처	보유한 체험처	자유학기제 교사 연구회 현황	자유학기제 연수 이수 인원
서울	26	26	387	_	-	152	150	24	739
부산	13	9	90	4	32	268	39	9	96
대구	9	7	89	2	31	88	105	1	172
인천	8	6	66	2	37	66	33	8	77
광주	5	5	112	=	-	89	52	1	53
대전	5	3	32	2	26	71	67	5	66
울산	4	3	54	1	35	81	12	1	84
세종	1	1	27	=	-	16	4	1	27
경기	32	22	340	30	471	316	95	27	316
강원	7	6	103	1	18	49	27	7	25
충북	10	10	131	-	-	167	66	-	35
충남	7	6	71	1	5	119	49	8	36
전북	9	7	89	2	19	92	54	9	52
전남	8	8	83	-	-	169	34	6	272
경북	8	7	95	1	8	164	36	4	114
경남	9	7	76	2	32	18	30	2	56
제주	3	3	61	=	-	39	34	3	24
계	164	136	1,906	48	714	1,964	887	116	2,244

^{※ &#}x27;18학년도 한시적으로 중학교 졸업 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 특수학교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자유학기제 운영의 자율성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 활동 및 미래 진로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로 확대 추진
- 교실 수업 운영 능력 신장을 위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담당교원 역량 강화
- 지역단위 진로체험지원 협의체 구성,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장애학생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 활성화를 통한 특수학교 진로체험활동 온라인 매칭 기능 강화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 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 강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 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1항)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3항)
-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 현황 및 추진 실적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정 전문화 및 특성화 지원, 현장중심 직업교육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학교 학교기업(29교) 내실화 지원
 - 일반학교에 통합된 장애학생의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 지원하기 위해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49교) 지정·운영 확대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전공과(642학급) 및 특수학교 직업 교육 중점학교(21교) 운영 확충
-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중심
 직업교육 강화을 위한 특수학교 학교기업 내실화 지원
 - ** '18년 현재 교육부 지정 25개 특수학교 학교기업 : 운영(24개), 개관 예정(1개) ('18년 현재 경기도교육청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 2개교, 부산광역교육청 지정 1개교 및 대구 광역시교육청 지정 1개교 운영)

〈표 3·46〉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학교명	교육청	설립별	장애유형	사업직종
대구5교통합	대구	사립	시각 · 청각 · 지체 · 지적장애 · 정서장애	커피바리스타, 사무용지, 제과제빵, 세탁 등
전주선화학교	전북	공립	청각장애	커피바리스타, 도자기, 천연비누, 직업체험 등
한빚맹학교	서울	사립	시각장애	예술, 스포츠 등
대전혜광학교	대전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천연비누, 운동화 전문세탁 등
부산혜성학교	부산	공립	지적장애	도자기, 원예, 천연비누, 조립임가공, 직업체험 등
꽃동네학교	충북	사립	지적장애	제과·제빵 등
미추홀학교	인천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조명장치, 천연비누, 직업체험 등
순천선혜학교	전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콩나물, 세탁 등
속초청해학교	강원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등
광주선광학교	광주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비누, 도자기 등
천안인애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목장갑, 도자기, 공예품 등
성은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공예, 원예 등
청주맹학교	충북	사립	시각장애	천연비누, 향초 등
울산혜인학교	울산	공립	지적장애	자동차 부품제조, 세차, 신발세탁 등
창원천광학교	경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양파즙, 공예, 자동차 부품제조 등
공주정명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장갑, 핸드페인팅, 직업체험 등
태백미래학교	강원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세차, 공예, 건설·기계 재활용 등
부천상록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스팀세차, 허브재배, 천연비누 등
부천혜림학교*	경기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식품제조가공, 소독, 직업체험 등
서울맹학교	서울	국립	시각장애	점자도서 출판
한국선진학교	경기	국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식품제조, 임가공업 등
대전원명학교	대전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면장갑, 가구, 임가공 등
안동영명학교	경북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보안문서피쇄, 운동화세탁, 직업체험 등
포항명도학교	경북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세차, 직업체험 등
한국경진학교	경기	국립	정서장애	커피바리스타, 버섯재배·유통, 임가공업, 직업체험 등
서산성봉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건조식품, 위생용품 제조
대구성보학교**	대구	공립	지체장애	문화 예술
***때추탁매하나	부산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재배·원예, 도자기, 비누, 직업체험 등
소림학교	전남	사립	청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등
	전주신화학교 한빛맹학교 대전혜광학교 부산혜성학교 구천선혜학교 수천선혜학교 수천선혜학교 수천선혜학교 청우건광학교 청우학교 청우학교 청우학교 청우행학교 청원천광학교 당천성록학교* 부천성록학교* 부천혜림학교* 나업원명학교 대전원명학교 대전원명학교 대전원명학교 단대전원명학교 단대전원명학교 대전원명학교 전상성봉학교 건사성봉학교 대구성보학교** 부산해 라학교** 부산해 라학교 대구성보학교** 부산해 라학교**	대구5교통함 대구 전주선화학교 전북 한빛맹학교 서울 대전혜광학교 대전 부산혜성학교 부산 꽃동네학교 충북 미추홀학교 인천 순천선혜학교 건남 속초청해학교 강원 광주선광학교 경기 청주맹학교 경기 청구맹학교 경기 청구맹학교 경기 청구맹학교 경기 청구맹학교 경기 청구행학교 경기 청건상목학교 경기 부천상목학교 경기 부천상목학교 경기 나건원명학교 경기 대전원명학교 경부 한국경진학교 경기 서산성봉학교 중남 대구성보학교** 부산	대구5교통함 대구 사립 전주선화학교 전북 공립 한빛맹학교 서울 사립 대전혜광학교 대전 공립 부산혜성학교 부산 공립 구청선체학교 인천 공립 구청선체학교 인천 공립 구청선체학교 건남 공립 소청해학교 건남 공립 장주선광학교 경기 공립 청우학교 경기 공립 청우학교 경기 공립 청유학학교 경기 공립 청유학학교 경기 공립 청원천광학교 경기 공립 청원천광학교 경기 공립 당원천광학교 경기 공립 당원천광학교 경기 공립 당원천광학교 경기 공립 라신산학교 경기 공립 대전원명학교 경기 공립 대전원명학교 성기 공립 대전원명학교 경기 공립 대전원명학교 대전 사립 만동영명학교 경부 사립 한국성진학교 경기 국립 대전원명학교 경기 국립 대구성보학교** 대구 공립 대구성보학교** 부산 공립	대구5교통합 대구 사립 시각·청각·지체· 지적장애·정서장애 한빛맹학교 서울 사립 시각장애 한빛맹학교 대전 공립 지적장애 부산혜성학교 부산 공립 지적장애 무동네학교 충북 사립 지적장애 연천선혜학교 전남 공립 지적장애 수초성해학교 전남 공립 지적장애 우조청해학교 강원 공립 지적장애 왕주선광학교 경우 공립 지적장애 청우막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청우맹학교 충북 사립 시각장애 청원천광학교 경남 공립 지적장애 청원천광학교 경남 공립 지적장애 청원천광학교 경남 공립 지적장애 왕천천경학교 경남 공립 지적장애 왕천천경학교 경남 공립 지적장애 왕천천경학교 경남 공립 지적장애 왕천청학교 경남 공립 지적장애 부천성록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부천혜림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부천혜림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부천해림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부천해림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부전장막교 경기 국립 지적장애 안동영명학교 경북 사립 지적장애 안동영명학교 경부 사립 지적장애 안동영명학교 경부 사립 지적장애 안동영명학교 경부 사립 지적장애 안국경진학교 경기 국립 정서장애 대구성보학교** 대구 공립 지적장애

^{*} 경기도교육청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임

^{**}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임

[※] 사업직종은 학교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18년 현재 교육부 지정 35교 및 시·도교육청 지정 14교가 운영 중임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장애학생에게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장애학생 직업교육 거점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표 3·47〉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현황

и г				지정	성연도 및 운영	학교				거쉐
시·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서울	상암고	경복고		(문현고) (서울문화고)	(경기고)			관악고		3(3)
부산	동래원예고*		부산 전자공업고							1
대구	대구서부공고					대구자연 과학고				2
인천			강남영상 미디어고			박문여고		인화여고		3
광주	광주전자공고									1
대전		동대전고								11
울산										-
경기	성남방송고 이천제일고	안양공고 은행고 (포천일고) (안성고)	수원 정보과학고			(오산정보고)				5(3)
강원			영서고							1
충북	제천제일고		청주농업고				충북산업과학교			3
충남	공주생명 과학고	금산산업고 논산공업고	당진정보고 서천고	(온양용화고) (천안공업고)	(태안고)	주산산업고 (부여정보고)		(청양고)	(서신중앙고)	6(6)
전북					(이라공업고)** (장계공업고)** (고창여고)**	(진단제일고)** (해리고)** (무주고)** (함열고)**	이리고			1
전남	목포공고		전남 기술과학고				순천공업고			3
경북		김천생명과학고						(구미인동고)		1(1)
경남		이림고 김해생명과학고								2
제주	제주고	함덕고		(표선고)		(제주중앙 여고)**				2(1)
계	9	10(2)	8	(5)	(2)	3(2)	3	2(2)	(1)	35(14)

^{*} 동래원예고 :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이관

^{**} 시·도교육청 지정 거점학교로 한시적 운영

^{※ ()}안의 학교는 시·도교육청 지정 거점학교

-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기본 교육과정의 '진로와 직업'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21교 운영
 - 지역 및 학교 여건을 반영한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 운영 및 장애학생 직업역량 강화 도모

〈표 3·48〉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지정·운영 현황

지정연도	운영 학교
2015	부산해마루학교, 대전원명학교, 원주청원학교, 청주혜원학교, 진주혜광학교
2016	울산행복학교, 다원학교, 다솜학교, 함평영화학교, 제주영송학교
2017	대구보명학교, 미추홀학교, 성은학교, 이산성심학교, 전주은화학교, 경산자인학교, 경남은혜학교
2018	부산솔빛학교, 대구덕희학교, 광주선광학교, 성세재활학교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위해 장애학생 취업지원 확대 워크숍 개최 및 원스톰 취업 지원 체계 구축
 -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복지·고용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주제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취업지원 담당자 327명 참여
 - 장애학생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원스톱 취업지원을 위한 관계 부처(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및 유관기관 협약 체결*
 - *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3개부처 차관 및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 용공단 참여
 -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확대 위해 장애인 고용 지원 설명회, 대학 내 및 지역사회 중심 일자리사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장애인 고용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등 추진

2018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2,454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97명
 으로 취업률은 8.6%임

〈표 3·49〉 2018년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명,%)

									취업	자 수							
시 · 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보건 · 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기	식품 가공 제과 제빵	이료	영업 · 판매	청소 · 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 · 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취업률
서울	459	328	-	10	-	1	1	1	-	1	1	-	1	-	6	22	16.8
- 부산	186	75	-	4	-	-	-	2	-		-	-	-	-	-	6	5.4
대구	152	72	-	10	-	-	-	-	-		-	-	-		-	10	12.5
인천	142	71	-	5	-	-	-	3	1	-	-	-		-	-	9	12.7
광주	111	28	-	1	-	-	-	4	-	-	-	-		-	1	6	7.2
대전	101	65	-	-	-	-	-	1	-		-	-	-		-	1	2.8
울산	61	38	-	1	-	-	-	-	-	1	-	-		-	-	2	8.7
세종	7	7	-	-	-	-	-	-	-		-	-	-	-	-	0	0
경기	380	103	1	6	-	-	-	-	-	2	1	-	=	1	5	16	5.8
	82	53	-	-	-	-	-	-	-	-	-	-	-	-	-	0	0
충북	108	84	-	3	-	-	1	1	-	-	-	-		-	2	7	29.2
충남	92	72	-	-	-	-	-	-	-	-	-	-	-	-	-	0	0
전북	121	60	-	1	-	-	5	-	-		1	-		-	-	7	11.5
전남	135	55	-	-	-	-	-	3	-	-	-	-	-	-	3	6	7.5
경북	123	92	=	=	-	-	=	-	-	=	-	-	=	-	=	0	0
경남	151	108	1	-	-	-	-	-	-	1	1	-	-	-	2	5	11.6
제주	43	10	-	-	-	-	-	-	-	-	-	-		-	-	0	0
계	2,454	1,321	2	41	0	1	7	15	1	5	4	0	1	1	19	97	8.6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15}년부터 진로 현황 조사 방법 개선: ① 진학과 취업 직종을 단순 수치로만 조사하던 방식에서 졸업 생별로 검증 가능하도록 자료 수합 ② 취업자의 경우, 개별 취업확인을 위한 근거자료(4대 보험 기입 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확보 ③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취업자 인정 기준 개선 등

 2018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4,101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824명으로 취업률은 33.9%임

〈표 3·50〉 2018년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명,%)

			취업자 수														
시 · 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보건· 의료	제품 제조	<u>농</u> 림 어업	정보 통신 기기	식품 기공· 제과 제빵	이료	영업· 판매	청소· 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 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취업률
서울	551	63	2	23	-	1	9	-	11	18	63	1	11	4	21	164	33.6
부산	204	93	1	15	-	-	-	-	1	2	8	-	16	1	2	46	41.4
대구	166	130	-	-	-	1	-	-	-	-	-	-	-	-	1	2	5.6
인천	243	112	1	7	-	1	2	-	-	5	11	1	8	2	4	42	32.1
광주	112	65	-	7	-	-	3	-	-	-	1	-	-	-	1	12	25.5
대전	120	71	3	-	-	1	2	-	-	6	2	-	2	1	-	17	34.7
울산	98	75	=	3	-	=	-	-	=	-	=	-	1	=	1	5	21.7
세종	11	6	-	1	-	-	-	-	1	-	2	-	-	-	-	4	80.0
경기	1,196	446	3	90	2	-	24	-	8	33	46	1	24	7	34	272	36.3
강원	121	60		6	-	1	2	-	-	-	=	-	1	-	1	11	18.0
충북	151	49	-	9	1	-	-	-	1	26	3	-	4	1	2	47	46.1
충남	212	88	1	22	-	-	8	-	-	5	12	-	6	1	6	61	49.2
전북	126	54	2	4	-	-	6	-	-	-	=	2	2	-	3	19	26.4
 전남	186	76	-	4	-	-	2	-	-	7	1	-	1	2	3	20	18.2
경북	244	144	2	10	-	-	-	-	-	7	2	-	1	1	1	24	24.0
경남	314	108	4	27	-	-	8	-	2	7	5	-	7	1	9	70	34.0
제주	46	27	-	3	-	-	1	-	-	3	-	-	-		1	8	42.1
계	4,101	1,667	19	231	3	5	67	0	24	119	156	5	84	21	90	824	33.9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15}년부터 진로 현황 조사 방법 개선: ① 진학과 취업 직종을 단순 수치로만 조사하던 방식에서 졸업생별로 검증 가능하도록 자료 수합 ② 취업자의 경우, 개별 취업확인을 위한 근거자료(4대 보험 가입 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확보 ③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취업자 인정 기준 개선 등

• 2018년 2월 고등학교 일반학급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 1,256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85명으로 취업률은 14.8%임

〈표 3·51〉 2018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 명, %)

									취업	자 수							
시 도	<u>졸업</u> 자 수	진학자 수	보건 · 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기	식품 가공 · 제과 제빵	이료	영업 · 판매	청소 · 세탁	식음 료 서비 스	문화 · 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취업률
서울	224	101	_	4	-	_	-	1	1	1	4	3	2	-	5	21	17.1
부산	105	58	-	5	-	-	-	-	1	-	2	-	-	-	-	8	17.0
대구	96	71	-	1	-	-	-	-	-	-	-	-	-	1	-	2	8.0
인천	68	26	1	2	-	1	=	-	-	=	-	-	-	=	3	7	16.7
광주	53	32	-	1	-	-	-	-	-	-	-	-	-	=	-	1	4.8
대전	38	17	-	1	-	-	-	-	-	-	1	-	-	=	1	3	14.3
울산	46	36	-	1	-	-	=	-	-	-	-	-	-	=	-	1	10.0
세종	5	3	-	-	-	-	-	-	1	-	-	-	-	-	-	1	50.0
경기	172	94	1	3	-	1	2	-	-	-	1	1	-	-	3	12	15.4
강원	35	20	-	-	-	-	-	-	-	-	-	-	-	-	-	0	0
충북	79	28	-	5	-	-	-	-	-	1	1	-	-	-	1	8	15.7
충남	33	15	-	1	-	-	-	-	-	-	-	-	-	-	1	2	11.1
전북	53	35	2	-	-	-	1	-	-	-	-	-	1	-	1	5	27.8
전남	16	6	-	=	-	-	=	-	-	-	-	-	-	=	-	0	0
경북	65	41	=	2	-	-	-	-	=	1	-	=	-	-	=	3	12.5
경남	148	82	=	1	-	1	-	-	-	-	-	-	1	-	5	8	12.1
제주	20	15	-	1	-	-	1	-	-	-	-	-	-	-	1	3	60.0
계	1,256	680	4	28	0	3	4	1	3	3	9	4	4	1	21	85	14.8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15}년부터 진로 현황 조사 방법 개선:① 진학과 취업 직종을 단순 수치로만 조사하던 방식에서 졸업생별로 검증 가능하도록 자료 수합②취업자의 경우, 개별취업확인을 위한 근거자료(4대 보험 가입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확보③ 상시근로자기준으로취업자인정기준개선 등

● 2018년 2월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2.140명 중 897명 취업으로 취업률은 42.3%임

〈표 3·52〉 2018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단위:명,%)

			취업자 수														
시 · 도	이수자 수	진학자 수	보건 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기	식품 가공 제과 제빵	이료	영업 · 판매	청소 · 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 · 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취업률
서울	261	3	I	17	-	1	2	28	1	2	3	1	_	-	8	63	24.2
부산	126	6	4	45	1	_	_	5	1	_	3	1	9	_	_	69	56.9
대구	161	ı	7	66	-	1	7	5	3	4	8	-	3	-	6	110	68.3
인천	109	1	=	13	=	-	-	7	6	1	26	=	2	-	3	58	53.7
광주	73	ı	3	22	-	-	4	5	-	-	3	-	-	1	4	42	57.5
대전	116	2	1	7	1	-	-	11	-	1	12	=	1	=	-	34	29.8
울산	98	2	=	17	=	-	-	=	-	6	5	4	1	=	5	38	39.6
세종	8	-	=	3	-	-	-	=	-	-	1	-	3	-	-	7	87.5
경기	376	1	1	68	4	2	15	=	10	21	31	1	12	1	28	194	51.6
강원	100	2	=	3	=	-	7	2	-	2	8	=	3	1	6	32	32.7
충북	102	1	=	10	=	-	7	6	1	4	=	=	-	1	4	33	32.7
충남	89	-	-	34		-	6	-	-	5	2		2	-	7	56	62.9
전북	87	-	1	1	-	1	3	4	-	1	3		4	-	10	28	32.2
전남	91	1	3	-	=	-	6	4	1	6	2	=	4	=	13	39	43.4
경북	185	-	2	18	-	-	8	-		8	2	-	3	1	12	54	29.2
경남	146	1	2	15	-	-	5	-		4	2	-	3	1	2	34	23.4
제주	12	-	-	2	-	-	-	-	-	1	3	-	-	-	-	6	50.0
계	2,140	20	24	341	6	5	70	77	23	66	114	7	50	6	108	897	42.3

[※] 취업률 = {취업자 수 / (이수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15}년부터 진로 현황 조사 방법 개선: ① 진학과 취업 직종을 단순 수치로만 조사하던 방식에서 졸업생별로 검증 가능하도록 자료 수합 ② 취업자의 경우, 개별 취업확인을 위한 근거자료(4대 보험 가입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확보 ③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취업자 인정 기준 개선 등

[※] 일반학교 전공과 이수자 110명 및 취업자 수 72명 포함

- 2018년 전국 143개 특수학교에 전공과 과정 609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4,956명이 배치되어 있음
- 2018년 대구, 인천, 경기, 충북 일반학교 18개교에 전공과 33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209명의 학생이 배치되어 있음

〈표 3·53〉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단위:교,학급,명)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특수학교	143	609	4,956
일반학교	18	33	209
계	161	642	5,165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와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내실화 도모 및 효과성 확대
- 진로·직업 교육과정 전문화 및 특성화 정착을 통해 장애학생 진로의 다양화 및 직업역량 강화 도모
-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전공과 설치 확대 및 운영 강화
-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우수사례 발굴·보급, 성과관리 등을 통해 장 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의 전문화 지원
- 교육·복지·고용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장애학생의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 원·사후관리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진로·직업교육 효율화·안정화 도모
-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확대 통해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장애·비장애 차별없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 구현

3)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대학에 특별지원위원회를 두어 장애학생 지원 계획수립,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등을 수행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 지원, 편의제공,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등을 담당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학습보조기기 등 물적지원, 보조 인력 배치 등 인적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등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 현황 및 추진실적

 2018년 2월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7,811명의 진학률을 보면, 특수학교 졸업생은 53.8%, 특수학급 졸업생은 40.6%,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졸업생은 54.1%이며 전체 진학률은 47.0%임

 $\langle \pm 3 \cdot 54 \rangle$ 2018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단위 : 명, %)

					TIÁTI A												5, 70)	
		졸업	낸 수							<u>.</u>	<u> </u> 학자 수							T I
시 ·			,			전공과			전문대흐	ł		대학교			7	#		진 학 률
도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계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특수 학교	투수 학급	일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알반 학급	소계	률
서울	459	551	224	1,234	288	15	2	7	21	25	33	27	74	328	63	101	492	39.9
부산	186	204	105	495	66	48	-	-	32	18	9	13	40	75	93	58	226	45.7
대구	152	166	96	414	58	94	3	1	24	38	13	12	30	72	130	71	273	65.9
인천	142	243	68	453	67	94	3	1	8	6	3	10	17	71	112	26	209	46.1
광주	111	112	53	276	16	47	-	-	11	6	12	7	26	28	65	32	125	45.3
대전	101	120	38	259	60	56	1	-	8	5	5	7	11	65	71	17	153	59.1
울산	61	98	46	205	36	64	-	-	8	15	2	3	21	38	75	36	149	72.7
세종	7	11	5	23	7	5	-	-	1	-	-	-	3	7	6	3	16	69.6
경기	380	1,196	172	1,748	90	332	2	9	52	14	4	62	78	103	446	94	643	36.8
강원	82	121	35	238	50	45	3	-	12	10	3	3	7	53	60	20	133	55.9
충북	108	151	79	338	80	34	3	2	11	12	2	4	13	84	49	28	161	47.6
충남	92	212	33	337	72	66	1	-	11	7	-	11	7	72	88	15	175	51.9
전북	121	126	53	300	58	31	3	-	19	12	2	4	20	60	54	35	149	49.7
전남	135	186	16	337	52	47	1	-	21	1	3	8	4	55	76	6	137	40.7
경북	123	244	65	432	91	92	2	1	30	20	-	22	19	92	144	41	277	64.1
경남	151	314	148	613	108	49	-	-	36	32	-	23	50	108	108	82	298	48.6
제주	43	46	20	109	10	12	3	-	13	5	-	2	7	10	27	15	52	47.7
계	2,454	4,101	1,256	7,811	1,209	1,131	27	21	318	226	91	218	427	1,321	1,667	680	3,668	47.0

-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2018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실시 대학은 전문대학 16개교와 4년제 대학교 100개교로 모두 116개교이며, 이를 통해 입학한 학생은 전문대학 16개교 56명, 대학 100개교 888명으로 총 944명임

〈표 3·55〉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단위:교,명)

\$h ㅓㄷ	전문	대학	대호	학교	합계			
학년도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1997	6	42	30	234	36	276		
1998	6	57	39	298	45	355		
1999	6	47	40	349	46	396		
2000	9	55	48	313	57	368		
2001	11	61	43	360	54	421		
2002	15	194	46	420	61	614		
2003	14	117	47	310	61	427		
2004	24	115	49	309	73	424		
2005	11	45	53	344	64	389		
2006	10	31	63	388	73	419		
2007	9(7)	79	71(71)	439	80(78)	518		
2008	8(7)	100	74(65)	460	82(72)	560		
2009	10(10)	74	80(70)	498	90(80)	561		
2010	19(12)	51	80(75)	601	99(87)	652		
2011	14(14)	60	89(77)	574	103(91)	634		
2012	16(16)	97	90(84)	566	106(100)	663		
2013	25(17)	185	97(89)	649	122(106)	834		
2014	23(16)	84	98(80)	637	121(96)	721		
2015	23(18)	54	98(84)	753	121(102)	807		
2016	24(15)	48	100(88)	768	124(103)	816		
2017	(15)	46	(97)	832	(112)	878		
2018	(16)	56	(100)	888	(116)	944		

[※] 괄호는 최종 등록기준 학교 수

• 2018년 6월 현재 대학(원)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도우미는 207개 대학에 3,167명을 배치하여 지원함

〈표 3·56〉 대학(원) 장애학생 도우미 영역별 지원 현황

(단위:교,명)

				도위	기 수	
Ξ	구분	학교 수	1~3급 장애학생 지원	4급 이하 장애학생 지원	구분 없음	계
	대학(원)	131			2,557	2,557
일반	전문대학	64			381	381
도우미 원격대학		2	_	_	72	72
소계		197			3,010	3,010
	대학(원)	34	107	5		112
전문	전문대학	7	13	1		14
도우미	원격대학	3	9	1	_	10
	소계	44	129	7		136
	대학(원)	28				
원격교육	전문대학	1			01	01
전문 도우미	원격대학	5	=	=	21	21
±1-1	소계	34				
	계	207(중복제외)	129	7	3,031	3,167

- ※ 영역별 도우미 유형: 일반도우미(학내이동 및 강의 등 대필지원), 전문도우미(수화통역사, 속기사 등에 의한 교수·학습지원), 원격교육전문도우미(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 내용 수화통역 및 문자통역 지원)
- ※ 원격교육지원 시스템: 교수 강의 내용을 웹 카메라와 스피커를 통하여 원격교육지원시스템(한국복지대학교) 내의 원격강의 지원센터에 접속하여, 전문도우미(수화통역사 및 속기사)가 내용을 전달 받으면 실시간으로 수화와 텍스트로 전환하여 학습자(청각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시스템
- ※ 출처: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장학재단

- 장애학생의 이동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 장애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하여 현장 수요에 맞춘 장애대학생 도우미사업 개선 등을 통한 대학 환경 조성
- 장애학생의 교내활동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법적기구 설치 확대 및 내실화

(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

■ 관련 법규

●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제2항)

■ 현황 및 실적

- 대학의 자체적인 진단과 개선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유도를 위해 2017년도에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실시 및 2018년 4월 결과 공표
- 평가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모든 대학(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사이 버대학 등)
- 평가분야는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의 3개 영역으로 평가함

〈표 3·5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영역(4년제 및 전문대학)

영역	부문	항목	수
77 	十世 	부문별	영역별
선발	1.1 전형(6%)	4	7
(10%)	1.2 정보제공(4%)	3	'
	2.1 학습권 보장 자체발전계획(5%)	3	
	2.2 교수·학습 지원체제 및 운영(16%)	6	
	2.3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구비 및 활용(6%)	3	
교수・학습	2.4 학습지원(12%)	6	29
(50%)	2.5 평가지원(2%)	1	29
	2.6 장학지원(2%)	1	
	2.7 상담·진로 및 취업지원(6%)	4	
	2.8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만족도(1%)	5	
	3.1 매개시설(8%)	7	
	3.2 내부시설(12%)	8	
	3.3 위생시설(8%)	3	
	3.4 안내 및 기타시설(4%)	3	
	3.5 강의실(1%)	1	
시설·설비	3.6 도서관(1%)	1	33
(40%)	3.7 강당(1%)	1	00
	3.8 식당(1%)	1	
	3.9 체육관(1%)	1	
	3.10 기숙사(1%)	1	
	3.11 무장애 교육환경 구출 실적(1%)	1	
	3.12 장애대학생 시설·설비 만족도(1%)	5	

〈표 3·58〉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영역(사이버대학)

odod	U 0	항도	목수	
영역	부문	부문별	영역별	
선발	1.1 전형(6%)	4	6	
(12%)	1.2 정보제공(6%)	2	0	
	2.1 학습권 보장 자체발전계획(6%)	3		
	2.2 교수·학습 지원체제 및 운영(16%)	5		
	2.3 학습 및 보조공학기기 구비 및 활용(4%)	2		
교수·학습	2.4 학습지원(23%)	9	30	
(60%)	2.5 평가지원(3%)	1	30	
	2.6 장학지원(2%)	1		
	2.7 상담·진로 및 취업지원(5%)	4		
	2.8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만족도(1%)	5		
	3.1 매개시설(8%)	7		
시설 · 설비	3.2 내부시설(11%)	8		
(28%)	3.3 위생시설(6%)	3	23	
(20%)	3.4 안내 및 기타시설(2%)	1		
	3.5 장애대학생 시설·설비 만족도(1%)	4		

〈班 3·59〉	201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	------	-------	--------	------	----

등급	캠퍼스 수	등급 판정기준 점수
최우수	33(7.8%)	90점 이상
우수	68(16.1%)	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	163(38.6%)	65점 이상 80점 미만
 개선요망	158(37.5%)	65점 미만
계	422(100%)	100점 만점 기준

- 평가대상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에 이어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한 후 종합평가결과를 산출함
- 평가방법은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의 4단계 등급으로 평가함

- 2020년에는 교육환경 변화 및 모든 대학유형을 고려하여 2018년에 개정한 평가 지표로 평가를 실시함
 - 4년제 및 전문대학, 사이버 대학으로 평가 지표를 구분하여 평가 실시
-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권고하기 위하여 2018년에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컨설팅을 운영함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평생교육법 제5조 제2항)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평생교육법 제9조)
 -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 6.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국가·지자체·교육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음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전국 53개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야학)에서 552명의 교사가 2,028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은 총 432개임
-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야학) 지원 예산은 약 33억원

〈표 3·60〉 장애성인교육(야학) 지원 현황

(단위 : 명, 개, 백만원)

							-11 4		
시·도	설립형태 및 기관 수	교사 수	학생 수		운영	프로그	램 수		지원예산
~1	글	112/4 1	701	문해	교양	직업	기타	계	시즌에는
서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4	37	186	26	14	3	19	62	631
부산	민간단체 1	22	45	_	1	-	2	3	50
대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	15	59	4	8	1	1	14	130
인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6	93	169	6	8	3	3	20	125
광주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3	26	88	5	13	4	-	22	300
대전	법인 1	28	45	3	1	1	3	8	62
울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2	12	54	9	9	4	7	29	78
경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4	148	512	13	72	10	31	126	630
강원	민간단체 2,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	25	94	11	7	3	4	25	73
충북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2, 민간단체 1	36	173	34	2	-	3	39	111
충남	법인 1	21	94	4	1	2	1	8	48
전북	법인 2, 민간단체 2	45	247	29	6	=	5	40	41
경남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9	26	140	24	=	=	-	24	990
제주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1	18	122	6	2	-	4	12	70
계	53	552	2,028	174	144	31	83	432	3,339

●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216개의 기관에서 67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지원예산은 약 24억원임

〈표 3·6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평	생교육기	 관	-	특수학교		특수고	고육지원	<u>센</u> 터		계	
시·도	기관 수	프로 그램 수	예산	학교 수	프로 그램 수	예산	센터 수	프로 그램수	예산	기관 수	프로 그램 수	예산
서울	78	84	183.5	1	1	1.4	-	-	-	79	85	184.9
부산	11	56	215	_	-	-	-	-	-	11	56	215
대구	9	46	20.5	-	-	-	-	-	-	9	46	20.5
인천	9	55	70.5	1	1	1.1	-	-	-	10	56	71.7
광주	5	5	8.5	-	-	-	-	-	-	5	5	8.5
대전	13	29	144	-			ı	ı	-	13	29	144
울산	2	29	78.4	-	-	-	1	1	0.6	3	30	79
세종	_	_	_	_	-	-	-		-	-		_
경기	-	-	-	2	5	15	-	-	-	2	5	15
강원	5	51	211	-	-	-	-	-	-	5	51	211
충북	4	20	111.5	_	-	-	-		-	4	20	111.5
충남	10	92	66.5	2	3	5.8	1	1	3	13	96	75.3
전북	1	9	24	-	-	-	1	9	26	2	18	50
전남	21	94	99.4	_	_	-	-		-	21	94	99.5
경북	9	14	20	4	11	12	-	-	-	13	25	32
경남	23	47	1,022	-	-	_		1	1	23	47	1,022
제주	3	11	65	=	-	-	=	=	-	3	11	65
계	203	642	2,339.8	10	21	35.3	3	11	29.6	216	674	2,404.9

-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 및 확대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1)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 강화

■ 관련법규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교육기본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마련하여야함(초·중등교육법제59조)
-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현황 및 실적

-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202개, 2.326명 위원을 구성·운영함
-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일반학교·특수학교 4,406개교 (2017년 전체) 현장지원을 실시함

〈표 3·6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및 위원 수

(단위:개,명)

시·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수				
 서울	11	148				
 부산	6	66				
대구	5	74				
인천	6	64				
 광주	3	37				
대전	3	40				
 울산	3	37				
 세종	2	20				
 경기	33	369				
 강원	18	195				
충북	11	151				
 충남	15	191				
 전북	15	175				
 전남	23	286				
 경북	24	244				
경남	21	198				
제주	3	31				
계	202	2,326				

[※] 인권지원단 구성(최소 8명 이상): 센터장(담당과장) 1명, 장학사(연구사) 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1명, 특수학교(급) 교장(감) 1명,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1명, 장애학생 보호자 1명,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전문가 1명, 상담전문인력 1명, 기타 법률 전문가, 장애인권 전문가, 의료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

〈표 3·6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모니터링 학교 수(´17)

(단위:개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모니터링 학교 수	226	228	297	394	450	457	462	308	425	400	385	374	4,406

- 장애인 인권교육이 강화됨으로써 2018년 특수교육교원 대상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를 포함한 연수과정은 306개임
- 2018년 일반교육교원의 전체 연수과정 8,359개 중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를 포함한 연수과정은 651개임

〈표 3·64〉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단위: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강좌 수	30	26	10	9	7	1	5	6	47	24	9	16	25	29	24	36	2	306

〈표 3·65〉 일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단위:개)

시·도	일반교육교원 대상 연수과정 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포함 연수과정 수
서울	940	58
부산	1,121	30
대구	1,236	123
인천	841	25
광주	755	51
대전	193	14
울산	266	18
세종	178	22
경기	1,048	53
강원	75	74
충북	331	10
충남	23	22
전북	359	15
전남	76	63
경북	339	53
경남	187	8
제주	391	12
계	8,359	651

- 장애학생의 성폭력 등 각종 폭력 예방을 위해 장애학생 및 교직원 등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 인권침해 가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

2) 장애학생 안전 지원 강화

■ 관련법규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과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 제공,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 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 등을 제공하고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 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현황 및 실적

• 2018년 6월 현재 전국 175개 특수학교에서 통학 등을 위한 차량 68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자(학교장) 및 운전자 838명이 안전교육 이수(예정 포함)

〈표 3·66〉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현황

(단위:교,대,명)

	특수 학교 수			안전교육 이수						
		전체	운	영 차종(대수))	운영 형태	배(대수)			
시·도		전세 통학 차량 수	16인승 이하			학교소유	학교소유 임대		운전자	통학보조 인력
서울	30	102	4	14	84	77	25	27	102	102
부산	15	51	-	15	36	51	-	15	51	51
대구	9	35	-	5	30	11	24	9	35	35
인천	9	33	-	4	29	9	24	8	33	33
광주	5	34	1	10	23	9	25	5	33	33
대전	5	25	2	4	19	13	12	5	24	43
울산	4	26	1	7	18	17	9	3	26	33
세종	1	4	=	-	4	4	=	1	4	4
경기	35	133	7	46	80	88	45	31	129	120
강원	7	26	1	6	19	26	=	7	26	25
충북	10	34	3	5	26	27	7	10	31	36
충남	7	35	-	13	22	15	20	7	33	31
전북	10	45	3	23	19	25	20	10	45	45
전남	8	24	-	6	18	19	5	8	24	24
경북	8	35	1	9	25	27	8	8	37	31
경남	9	32	-	4	28	22	10	6	31	31
제주	3	11	-	3	8	9	2	3	11	31
계	175	685	23	174	488	449	236	163	675	708

■ 향후 과제

● 특수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장애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

3) 장애발견 진단 배치 체계 고도화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 1. 시각장애
 - 2. 청각장애
 - 3. 지적장애
 - 4. 지체장애
 - 5. 정서·행동장애
 -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7. 의사소통장애
 - 8. 학습장애
 - 9. 건강장애
 - 10. 발달지체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 보건소 및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14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진단·평가 시행결과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 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 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8년 특수교육 요구 학생의 선정·배치 현황은 37,845명의 신청을 받아 34,878명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하여 92.9%의 배치율을 보임

〈표 3·67〉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현황

(단위 : 명)

	EA	<u></u> 학교		일반	학교		특수	교육	-	4	ott=1
시·도	==	.≓ π	특수	학급	일반	학급	지원	센터	,	11	배치 비율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12
서울	1,290	1,220	2,332	2,080	1,250	1,145	220	181	5,092	4,626	90.8
부산	570	552	1,168	1,111	1,114	870	-	-	2,852	2,533	88.8
대구	328	328	677	639	604	556	34	34	1,643	1,557	96.0
인천	649	649	1,341	1,259	825	691	20	17	2,835	2,616	92.3
광주	297	297	524	508	297	274	-	ı	1,118	1,079	96.5
대전	284	284	781	727	305	261	26	26	1,396	1,298	93.0
울산	168	168	801	775	388	351	27	24	1,384	1,318	95.2
세종	46	46	182	165	20	15	1	1	249	227	91.2
경기	1,411	1,304	5,566	5,137	1,657	1,459	134	117	8,768	8,017	91.4
강원	213	212	672	604	259	230	20	19	1,164	1,065	91.5
충북	668	668	954	945	451	436	14	14	2,087	2,063	98.9
충남	265	260	1,246	1,108	165	135	18	13	1,694	1,516	89.5
전북	301	299	611	598	511	407	18	18	1,441	1,322	91.7
전남	265	263	844	815	205	184	6	6	1,320	1,268	96.0
경북	302	295	874	802	515	432	48	44	1,739	1,573	90.5
경남	359	355	1,427	1,283	687	605	29	28	2,502	2,271	90.8
제주	124	123	204	198	205	180	28	28	561	529	94.3
계	7,540	7,323	20,204	18,754	9,458	8,231	643	570	37,845	34,878	92.9
영아	206	195	2	-	1	-	642	570	851	765	89.9
유	793	748	2,802	2,492	2,293	1,928	1		5,889	5,168	87.8
초	2,144	2,027	9,356	8,473	3,678	3,095	-	ı	15,178	13,595	89.6
중	2,014	1,973	4,116	3,906	1,839	1,648	-	Ì	7,969	7,527	94.5
고	2,383	2,380	3,928	3,883	1,647	1,560	-		7,958	7,823	98.3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재배치자 수 포함

●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329명이며, 이 중 만 6세 는 90명, 만 7세는 133명, 만 8세 이상은 106명으로 나타남

〈표 3·68〉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단위 : 명, %)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시·도	만	6세	만	7세	만 8시	에 이상	소계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서울	7	3	3	1	1	-	11	4							
 부산	14	9	10	2	2	1	26	12							
대구	21	6	55	18	39	19	115	43							
인천	2	2	6	1	4	1	12	4							
 광주	-	-	2	2	9	3	11	5							
대전	4	2	5	1	4	-	13	3							
울산	9	1	-	-	-	-	9	1							
세종	1	-	-	-	-	-	1	-							
경기	19	5	16	2	7	3	42	10							
 강원	4	2	4	2	-	-	8	4							
충북	_	_	-	_	_	_	-	-							
충남	5	2	4	1	6	3	15	6							
전북	2	0	13	4	11	4	26	8							
전남	1	_	-	_	7	_	8	8							
경북	1	1	6	1	4	2	11	4							
경남	-	-	9	3	10	4	19	7							
제주	_	-	-	_	2	1	2	1							
계	90	33	133	38	106	41	329	120							

• 2018학년도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원인은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서'가 51.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치료나 수술 등을 위해서'가 38.0%로 나타남

〈표 3·69〉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단위:명,%)

		특	수교육대상자의	의 초등학교 취	학유예자의 원	·인		
시·도	인근에 특수교육 기관이 없어서	치료나 수술 등을 위해서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서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	이동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녀가 등교를 거부해서	기타	계
서울	1	1	6	1	_	_	2	11
부산	-	7	19	-	-	-	-	26
대구	-	81	34	-	=	-	-	115
인천	-	5	2	4	=	-	1	12
광주	-	3	6	2	=	-	-	11
대전	-	2	9	-	1	=	1	13
울산	-	_	9	-	-	_	-	9
세종	-	_	1	-	-	-	-	1
경기	1	5	36	-	-	-	-	42
강원	-	_	6	2	-	_	-	8
충북	-	_	-	-	-	_	-	-
충남	-	3	11	1	-	_	-	15
전북	-	7	16	3	-	_	-	26
전남	-	1	4	2	-	_	1	8
경북	-	3	6	2	-	-	İ	11
경남	-	6	4	9	-	-	l	19
제주	-	1	=	1	=	-	=	2
계	2 (0.6)	125 (38.0)	169 (51.4)	27 (8.2)	1 (0.3)	0 (0.0)	5 (1.5)	329 (100)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교 25,919명 중 25,336 명(97.8%), 특수학급 48,848명 중 31,923명(65.4%), 일반학급 15,595명 중 7,480명(48.0%),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418명 중 199명(47.6%)이 장애인으로 등록한 학생임

 \langle 표 $3\cdot70\rangle$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 : 명, %)

T Lollod od	E 人 おしつ	일반	·학교	TIOLUIFI	지레
장애영역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지원센터	전체
지체장애	695	1,018	1,079	9	2,801
뇌병변장애	3,275	3,024	1,534	150	7,983
시각장애	1,228	233	387	4	1,852
청각장애	685	657	1,660	19	3,021
언어장애	138	929	290	2	1,359
지적장애	13,789	19,969	1,852	9	35,619
자폐성장애	5,457	5,960	583	4	12,004
정신장애	41	33	4	-	78
신장장애	_	8	14	-	22
심장장애	1	22	30	-	53
호흡기장애	3	3	6	-	12
간장애	_	8	14	1	23
안면장애	4	4	9	-	17
	1	4	11	-	16
 뇌전증장애	19	51	7	1	78
Й	25,336 (97.8)	31,923 (65.4)	7,480 (48.0)	199 (47.6)	64,938 (71.5)

• 전국에 225개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804명의 운영위원이 1.507회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음

〈표 3·7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단위 : 개, 명, 회)

	위원회					구성원					운영실적
시·도	수	교장 (감)	특수 교사	대학 교원	공무원	의사	보호자	사회 복지사	기타	계	(′17.6~ ′18.5)
서울	12	15	44	1	26	2	12	-	10	110	147
부산	6	10	12	6	15	1	2	4	12	62	50
대구	5	8	7	4	15	2	5	=	=	41	67
인천	6	8	13	=	12	2	6	4	12	57	81
광주	3	4	2	3	13	2	3	1	3	31	10
대전	3	7	11	3	5	2	1	-	6	35	32
울산	3	3	8	=	10	1	4	-	5	31	39
세종	1	2	1	1	7	1	1	=	=	13	8
경기	26	47	66	5	55	7	25	8	11	224	301
강원	18	29	64	5	24	1	15	3	17	158	175
충북	11	13	17	5	27	9	12	9	9	101	91
 충남	46	21	39	8	32	6	15	4	18	143	19
전북	16	36	49	4	30	8	20	6	5	158	86
전남	23	39	108	5	35	9	12	8	11	227	114
경북	24	38	55	7	49	19	22	5	16	211	132
경남	19	26	44	5	31	13	20	9	16	164	106
제주	3	5	8	2	12	4	4	1	2	38	49
계	225	311	548	64	398	89	179	62	153	1,804	1,507

■ 향후 과제

- 진단·평가 역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급), 지자체, 병의원, 보건소 등 유관기관 간 조기진단 연계체계 강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체계 마련

4)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관련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이 외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 현황 및 실적

- 기존 특수학급당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40,227천원, 초등학교 28,033천원, 중학교 29.994천원, 고등학교 37.534천원임
- 신설 특수학급당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55,372천원, 초등학교 48,225천원, 중학교 48,297원, 고등학교 54,194천원임

〈표 3·72〉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단위: 처원)

시·도	유쳐	1원	초등	학교	중력	학교	고등	학교
시·エ	기존	신설	기존	신설	기존	신설	기존	신설
서울	40,625	38,462	18,908	43,908	19,084	44,084	25,891	50,622
부산	38,629	52,629	22,865	36,865	25,869	39,869	36,477	50,477
대구	39,993	59,993	27,773	47,773	34,160	54,160	39,298	59,298
인천	40,102	40,102	17,832	47,832	20,192	50,192	24,183	54,183
광주	39,482	57,988	23,976	60,269	24,960	56,164	33,646	27,556
대전	26,296	46,296	22,585	42,585	24,250	44,250	28,692	48,692
울산	31,761	66,370	30,767	44,110	26,369	34,768	42,241	53,686
세종	31,427	41,427	27,112	37,112	24,276	34,276	31,195	41,195
경기	41,725	66,554	34,119	58,949	45,166	69,994	64,004	88,833
강원	55,537	58,037	55,537	58,037	55,537	58,037	56,537	59,037
충북	23,909	63,909	18,650	58,650	18,868	58,868	31,952	71,952
충남	47,907	67,907	30,478	50,478	32,481	52,481	36,884	56,884
전북	42,428	64,428	34,120	56,120	38,738	60,738	46,849	68,849
전남	35,782	45,872	34,123	44,123	28,583	38,583	32,280	42,280
경북	39,889	43,917	20,118	32,338	25,871	19,577	29,283	25,966
경남	60,372	80,372	33,617	53,617	35,558	55,558	34,740	54,740
제주	48,006	47,061	23,993	47,061	29,938	49,461	43,927	67,061
평균	40,227	55,372	28,033	48,225	29,994	48,297	37,534	54,194

[※] 특수학급 운영비: 특수학급 기본 운영비 및 장애유아무상교육비, 특수교육 보조인력(인건비 제외),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운영비, 특수학급 관련 특별교부금사업, 기타 통학비, 급식비 지원 등 특수학급 예산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예산은 2조 7,105억 원으로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대비 4.0%의 비율을 나타냄

〈표 3·73〉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단위:천원,%)

					특수	교육 예산			(단위・신간	
				시실	설비					
시·도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전체(A)	전체(A) 중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자산 취득비	연수비	기타	계	비율
서울	9,151,267,311	251,248,809	92,097,621	15,504,199	10,364,000	1,441,118	308,312	875,000	361,475,059	4.0
부산	3,920,494,724	98,980,263	47,771,837	9,891,550	939,492	1,906,344	171,219	65,000	158,786,213	4.1
대구	3,396,291,640	72,384,142	78,521,272	23,077,235	13,313,235	218,255	43,440	141,200	174,385,544	5.1
인천	3,462,858,823	65,894,062	65,008,786	6,315,949	2,054,774	110,176	222,031	6,315,949	143,866,953	4.2
광주	2,002,521,901	41,440,099	26,328,951	5,448,704	2,231,721	118,490	95,236	571,950	74,003,430	3.7
대전	1,903,224,104	57,123,137	30,568,027	882,931	264,153	688,950	59,002	952,479	90,274,526	4.7
울산	1,746,142,605	48,888,212	34,663,109	517,443	203,147	137,860	48,933	142,000	84397557	4.8
세종	1,033,004,096	13,624,303	2,820,736	6,743,510	4,935,900	4,000	38,100	849,150	24,079,799	2.3
 경기	16,398,845,429	353,683,236	125,159,030	41,704,951	25,377,622	14,418,702	300,120	8,863,570	544,129,609	3.3
강원	2,993,525,000	59,435,444	36,353,694	11,901,711	126,000	395,716	190,613	-	108,277,178	3.6
충북	2,636,535,295	56,349,986	30,133,309	4,706,252	1,343,071	78,530	99,900	2,673,830	94,041,807	3.6
충남	3,105,262,214	87,647,520	48,216,421	23,762,420	985,621	922,040	536,427	723,412	161,808,240	5.2
전북	3,315,706,507	81,471,086	45,333,747	4,980,682	3,263,104	1,574,088	377,577	646,878	134,384,058	4.1
전남	3,786,465,000	68,357,200	47,372,806	16,891,435	748,500	437,909	256,710	2,421,545	135,737,605	3.6
경북	4,103,546,000	105,816,080	22,589,745	44,238,965	528,172	300,355	588,459	447,160	173,980,764	4.2
경남	4,979,009,939	120,008,355	62,043,878	16,304,820	1,449,580	1,030,000	432,595	3,306,320	203,125,968	4.1
제주	1,093,372,565	27,100,442	11,214,764	2,071,400	1,637,774	364,123	67,570	2,952,584	43,770,883	4.0
계	69,028,073,153	1,609,452,376	806,197,733	234,944,157	69,765,866	24,146,656	3,836,244	31,948,027	2,710,525,193	4.0

[※] 국고, 지방비,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 재원 등을 포함한 총 예산 기준임

2018년도 특수교육 총예산은 시·도교육청 예산 2조 7,105억, 국립 특수학교 예산 443억, 국립 특수학급 예산 47억을 합하여 총 2조 7,595억원임

〈표 3·74〉 특수교육 총예산

(단위 : 천원)

	그ㅂ			į	특수교육 예산			
구분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연수비	기타	소계
	시·도	1,609,452,376	806,197,733	234,944,157	24,146,656	3,836,244	31,948,027	2,710,525,193
국립	특수학교	30,672,428	9,457,864	2,512,797	578,822	77,150	978,732	44,277,793
국업	특수학급	2,369,719	1,385,813	763,100	1,200	33,780	146,552	4,700,164
	계	1,642,494,523	817,041,410	238,220,054	24,726,678	3,947,174	33,073,311	2,759,503,150

● 2018년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30,39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01천원 증가함

〈표 3·75〉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단위: 천원)

연도	특수교육비	수혜학생 수	1인당 특수교육비
1999	315,782,768	50,269	6,282
2000	340,225,173	54,732	6,216
2001	406,310,075	51,330	7,916
2002	443,073,183	54,470	8,134
2003	564,394,700	53,404	10,568
2004	666,840,034	55,374	12,042
2005	822,051,094	58,362	14,085
2006	1,051,284,265	62,538	16,810
2007	1,145,295,143	65,940	17,369
2008	1,352,939,269	71,484	18,926
2009	1,545,753,946	75,187	20,559
2010	1,667,641,925	79,711	20,921
2011	1,966,284,753	82,665	23,786
2012	2,138,496,638	85,012	25,155
2013	2,245,781,336	86,633	25,923
2014	2,076,048,794	87,278	23,787
2015	2,227,638,518	88,067	25,295
2016	2,376,062,265	87,950	27,016
2017	2,653,497,809	89,353	29,697
2018	2,759,503,150	90,780	30,398

2018년도 특수교육 예산은 2조 7,834억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약 1,190억
 원 증가된 금액이며, 2018년 6월 현재 교육 예산의 4.4%를 차지함

〈표 3·76〉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단위 : 천원)

연도	교육 예산*	특수교육 예산**	비율(%)
1997	18,287,608,665	298,596,440	1.6
1998	18,127,837,527	337,070,063	1.9
1999	17,456,265,000	315,782,768	1.8
2000	19,172,027,020	340,225,173	1.8
2001	20,049,279,000	406,310,075	2.0
2002	22,278,358,000	443,073,183	2.0
2003	24,404,401,310	564,394,700	2.3
2004	26,384,088,000	666,840,034	2.5
2005	27,438,044,595	822,051,094	3.0
2006	29,426,304,000	1,051,284,265	3.6
2007	31,044,748,000	1,145,295,143	3.7
2008	35,897,425,000	1,352,939,269	3.8
2009	38,698,867,000	1,545,753,946	4.0
2010	38,595,975,000	1,667,641,925	4.3
2011	41,618,722,000	1,966,284,753	4.7
2012	45,752,654,000	2,138,496,638	4.7
2013	49,643,947,000	2,245,781,336	4.5
2014	49,986,533,000	2,076,048,794	4.2
2015	50,325,564,676	2,227,638,518	4.4
2016	51,225,455,330	2,376,062,265	4.6
2017	57,003,830,743	2,664,432,153	4.7
2018	63,872,934,485	2,783,412,270	4.4

^{*} 전체 교육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 향후과제

-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급)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학교 평가 시 운영 개선 노력 반영
- 지역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발전 및 안정적인 재정 확보

^{**} 시·도교육청 및 국고 예산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 관련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계의 연구·개선, 특수교육 교원의 양성 및 연수, 특수 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 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특수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1)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7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 공표와 '특수교육 종단조사'를 통해 특수교육의성과 분석, 특수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방향을 제시하고 조사 품질 개선을위해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실태조사 학술포럼, 종단조사 패널관리 및 졸업 후생활상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본원이 개발한 '적응행동검사(KNISE-SAB)'가 개발 13년이 경과하여 시대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해 정확한 장애학생 진단·평가가 어려워, 새로운 국립 특수교육원 적응행동검사 검사요강 및 검사도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 부모의 양육 지원을 위해 '부모 지원 종합 시스템 운영 및 부모 지원 가이 드북(성인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언어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몸짓언어를 개발하기 위해 '중도·중복장애학생의사소통 몸짓언어 표현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중도·중복장애에 대한 용어 정의, 선정 기준, 학급편성 기준 등의 부재로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필요함에 따라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기초 연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 급변하는 교육현장의 요구와 특수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특수교육법 개정 필요성 대두에 따라 그 성과를 양적·질적으로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
- '2018 특수교육통계 및 연차보고서 발간'은 교육부와 협업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기관 및 인력,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관련 시·도별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10년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국내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0월,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의 국제 동향(안)'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2018년 6월, 특수교육교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 고취 및 우수 논문 발굴 확산을 위해 「특수교육연구」 제25권 제1호를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 560개 기관에 배부함
- 2018년 3월과 6월, 특수교육 현장 사례 및 정책 홍보를 통한 통합교육 여건 조성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특수교육 제25권 제1호, 제2호」를 발간하여 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유·초·중·고 특수학급 등 9,500개 기관에 배부함

〈표 3·77〉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특수교육 실태조사	특수교육 실태조사(후속조치, 종단조사) 국립특수교육원 적응행동검사 개발(2/2년차)	480
특수교육 정책연구	 부모 지원 가이드북(장애 성인기) 개발 부모 지원 종합 시스템 운영 중도: 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 몸짓언어 표현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2/3년) 중도: 중복장애학생 지원 방안 연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기초 연구 	570
특수교육 기초자료 발간	• 2018 특수교육통계 및 연차보고서 발간	24
특수교육 학술교류 및 홍보	제25회 국제세미나 및 국내세미나 「현장특수교육」제25권 발간(연 4회), 「특수교육연구」제25권 발간(연 2회) 국내·외 교류 및 협력 국립특수교육원 홍보(리플릿 발간 및 언론보도 등) 2018 국립특수교육원 학술·연구자료 가이드북	180
사업관리 및 대외업무	•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협의회 운영, 2017회계연도 특수교육 성과분석	20
계	연구 6건, 사업 10건, 행사 2건	1,274

■ 향후 과제

- 2017 특수교육 실태조사 공표에 따른 개선과제의 2019 특수교육 실태조사 예비 조사 및 2020 특수교육 실태조사 반영 및 관리
- 국립특수교육원 적응행동검사 개발 후. 출판권 설정에 의한 판매 서비스 체제 구축
- 부모 지원을 위한 종합시스템 운영 및 성인기 장애인 부모 지원 길라잡이 발간
- 중도· 중복장애학생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소통 몸짓언어 활용
 프로그램 발가
- 특수교육 현장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중도· 중복장애학생 지원 방안 연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기초 연구' 보고서 발간
- 「현장특수교육 제25권 제3호, 제4호」및「특수교육연구 제25권 제2호」발간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에 최신 특수교육 정보 제공
- 저개발 국가 지원 등 국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수교육 관련 정보
 및 연구 동향 등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 현황 및 추진실적

-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8~'22)에 따른 개별화교육 현장성 강화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문헌분석, 설문 조사, 초점 집단 면담, 전문가 협의회 등의방법을 통해 개별화교육계획의 개념 및 본질, 구성요소 및 작성방법 개선, NEIS개별화교육계획 체제 개선 및 보완의 내용으로 구성된 '개별화교육계획 현장성강화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운영 형태별 실태 설문 조사, 초점 집단 면담, 선행 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통합 유치원 운영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구성하여 체계화하고 있음
-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안 탐색 및 추후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현장 활용실태 관련 면담을 실시하고 학교(급)별, 교육과정별 교원의 요구 분석을 위해 설문을 실시함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강화하고자 '17~'18년 개발하는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용도서 31책(전자저작물 8종)에 대한 개고본 심의와 현 장적합성 검토를 실시함
- 개정 한국 점자 규정과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및 정안 교수자(교사, 학부모 등)를 위한 점자지도 자료 개발을 위하여 '시각장애학생 보조교과서 개발' 사업의 기관 선정, 심의회 구성, 집필세목·원고본 심의를 실시함
-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수·학습자료 개발 기초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13)를 기반으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6개 생활기능* 중 '여가활동' 영역의 개인 여가활동, 공동체 여가활동, 지역사회 여가활동, 문화예술활동 총 4종 및 (부록) 현장체험학습 가이드 1종의 보조교과서 개발에 대한 기관 선정, 심의회 구성, 집필 세목·원고본 심의를 실시함
 - * 6개 생활기능 영역: 의사소통, 자립생활, 탐구, 신체활동, 여가, 진로활동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초등학교 3~4학년군 국어, 사회, 수학, 과학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8책의 개발을 위하여 기관 선정, 심의회 구성, 집필세목· 원고본 심의를 실시함
- 시각장애학생 및 시각장애교사에게 우수한 품질의 대체교과서(점자, 확대, 디지털)를 적기 공급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발행·공급 지원 업무 위탁 여부 조사, 품질관리 위원회 운영,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개별 수요자 요구에 맞춘 대체교과서 발행·공급을 지원하고 있음
-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 구성·운영, 6개 권역 연구학교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원 원격연수원에서 상설직무연수 운영함
- 개별화교육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였고,
 KERIS에서 구축하고 있는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PAPS-D) 나이스 기능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함

〈표 3 78〉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 사업

사업명	사업 내용	종수(부수)
-0-1-1	• 개별화교육계획 현장성 강화방안 연구	1종(100부)
교육과정·교과서 기초연구	• 특수교육대상유이를 위한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 개발	1종(150부)
71-21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활용실태 분석 연구	1종(100부)
교과용도서 개발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 - '17~'18년 개발 31책(2/2년차)	교과용도서 31책 (전자저작물 8종)
교수·학습 자료	• 시각장애학생 보조교과서 개발	 서책형 4종 (4종 각각 묵자본 100부, 점자본 1,000부) 디지털 2종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 중도·중복장애학생용 생활기능 보조교과서 개발(여가 활동 영역)	서책형 5종(각 4,500부)
	• 장애학생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초등학교 3~4학년군)	서책형 8종(각 3,000부)
	• 시각장애 대체교과서 발행·공급 지원	-
현장지원	•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 지원	-
	•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지원	-
계	보고서 3종, 교과용도서 31책(전자저작물 8종), 3	교수·학습자료 19종

■ 향후 과제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기초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개별화 교육계획의 현장성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및 보급
- 유치원 입학부터 졸업 시까지 통합유치원 교육과정 실행 단계별 운영 모델 및 행정 지원요소 등을 매뉴얼 형태로 개발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활용실태 분석연구'를 통해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안 제시 및 추후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마련 및 기초자료로 활용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특수교육 국정도서 개발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개정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용도서 보급
- 시각장애학생 보조교과서 개발을 통해 초등 수준 시각장애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 도모 및 정안 교수자 대상 지도 자료 보급
- 여가활동 영역에 대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생활기능 보조교과서 총 5종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공교육 강화와 자립생활 도모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군 국어, 사회, 수학, 과학 통합 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완료하여 실질적인 교육과정적 통합 지원
- 2019학년도 시각장애학생 및 시각장애교사의 개별적 요구에 맞춘 대체교과서의 안정적 제작과 적기 보급을 위하여 수요 조사, 발행·공급 기관의 지속적 질 관리 및 교과서 발행 출판사 업무 협조 추진
-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의 내실화 도모와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권역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보고회 개최 지원
- 특수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PAPS-D)가 나이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3)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 직업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직업 생활 유지를 위해 흥미를 고려한 직업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장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과정 연계 직종 제시와 맞춤형 직업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장애학생 직업흥미 검사도구'를 개발(2/3년)하고 있음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기존 성과 지표의 현장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장애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성과지표 개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직업적응력 강화를 위해 졸업 후 직업 종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주방
 보조 직무 기초 및 실무 영역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 특수교육 현장의 실제적 교육지원을 통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를 도모하고 취업률을 향상시키고자 10건의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국 특수학교 학교기업(28교)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49교)를 대상으로 직종별 맞춤형 방문 컨설팅,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기관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직무훈련, 교사·학부모 연수, 가족 참여 워크숍 등) 현장 지원 세미나(25회 이상 예정)를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우수사례 발굴과 활용 확대를 위해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및 유관기관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취업지원 등의 정보 공유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학생에게 다양한 교수·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 진로·직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잡에이블(JOBabl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 장애학생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인식 제고를 위해 창업진흥원 '장애학생 기업가 정신 비즈쿨 캠프' 운영 지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직업기능 향상 도모를 위해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을 지원하고 있음
- 2018년 4월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복지·고용 통합 지원 체계 구축과 담당교사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관계자 380여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공동 확대 워크숍을 개최함
 - ※ 「장애학생 교육·복지·고용 원스톱 취업지원」을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 립특수교육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개발원 등 6개 기관이 업무 협약 체결 (2018, 4, 25.)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선도학교 관리자의 인식제고 및 지원 능력 향상을 위해 2018년 5월, 관리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함
- 특수학교 학교기업 회계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2018년 5월, 특수학교 학교 기업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함

〈표 3·79〉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진로 직업교육 지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연구 및 자료 개발	장애학생 직업흥미검사도구 개발(2/3년)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지표 개정 연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용 콘텐츠 개발	468
진로·직업교육 현장지원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컨설팅 운영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세미나 제7회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및 유관기관 담당자 협의회 장애학생 취업 지원 유관기관 공동 확대 워크숍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선도학교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 특수학교 학교기업 회계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정보화 사이트(JOBable) 운영 장애학생 기업가 정신 비즈쿨 캠프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지원	115
계	연구 2건, 자료개발 1건, 현장지원 사업 10건	583

■ 향후 과제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자료 개발, 현장 맞춤형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 (검사도구 개발) 3년간('17~'19) 추진되는 연속 사업으로 '장애학생 직업 흥미 검사 도구'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
 - (교구·콘텐츠 개발) 장애특성과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직업탐색 및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종 중심의 실습교구와 콘텐츠개발· 보급
 - (현장 지원) 장애학생의 직업기능을 점검하고, 취업역량과 자립에 대한 자신감을키울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장애학생 진로·직업 기능 대회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 장애학생의 직업평가-직업교육-지원고용-사후관리 등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활성화 및 안착을 위한 기반 마련화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2건과 인권 보호 현장지원 4건 등 총 6건을 수행하고 있음
- 2018년 3월,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원단 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의지 고취를 위해 전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담당자 242명을 대상으로 워크숍개최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지원을 위해 장애
 인권 관련 모니터링 및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정보 제공 및 점검을 통해 인권지원단 운영지원을 강화하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권역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유관기관과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공동 주최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있음

〈표 3·80〉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인권보호 관련 연구·자료 개발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초등용)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컨설팅 및 자료집 개발	268
인권보호 현장지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지원(현장점검결과 분석 등) 장애학생 인권지원 관련 모니터링 장애인식개선 관련 사업 	6
계	연구·교육자료 개발 2건, 현장지원 사업 4건	274

■ 향후 과제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연수 등 강화
- 학교급별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5)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내실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2개의 연구와
 1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컨설팅 운영'은 201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개선요망' 등급의 대학과 '평가 미 참여' 대학의 차기 평가 준비 역량 및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시함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 개정'은 교육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대학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미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매주기 평가지표의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고, 2020년 제7주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의 평가편람과 문항수정을 위하여 실시함
- '장애학생 고등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은 장애학생 고등교육과 관련된 국가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비정기적 회의로서, 교육부 장애 학생진로평생교육팀, 한국복지대학교, 전국장애학생지원센터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2018년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 발생 시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표 3·81〉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고등교육 지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컨설팅 운영	50		
자료 개발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 개정	50		
유관기관 협력	• 장애학생 고등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		
계	연구 2종, 사업 1건	100		

■ 향후 과제

- 201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실시 후 '개선요망' 대학과 '평가 미 참여' 대학에 대한 컨설팅 추진
-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예비조사 실시

6)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학교(급) 교원, 일반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 지원단 경찰위원 등을 대상으로 집합연수 37개 과정 1,960명을 계획·운영하고 있으며, 원격교육연수는 매월 33개 과정을 계획·운영하고 있음
- 2018년 8월말 현재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집합연수 26개 과정에 1,429명이 참여하여 수료(예정)하였으며, 원격연수는 35개 과정에 9.941명이 수료함

〈표 3 82〉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

(단위 : 명)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보건교사 장애학생 지원역량 향상 과정	80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보건교사
직무연수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 강화(기초)(1기)	34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유치원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장학 및 지원	38	일반 유치원 원장(감), 교육전문직
	초등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장학 및 지원	39	일반 초등학교 교장(감), 교육전문직
	중등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장학 및 지원	34	일반 중등학교 교장(감), 교육전문직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상담전문가 역량 강화	146	시도교육청 인권지원단 상담업무 담당교사 및 상담사 등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특수교육 전문직 현장 컨설팅 역량 강화	39	특수교육 교육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역량 강화	45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특수학교 학교기업 회계담당자 실무 역량 향상	31	특수학교 학교기업 회계 담당자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선도학교 관리자 역량 강화	31	학교관리자(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학교기 업 운영학교,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성교육 역량 강화(1기)	70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특수교육 전문가 해외연수 사전연수	16	장애대학생 교육지원 우수대학 담당자, 인솔자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사전연수	45	장애학생 및 학부모, 특수학교(급) 교사, 인솔자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수업전문성 강화	40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사 전문성 향상	44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사 등
	교육과정 재구성의 실제	68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직무연수	장애학생 의사소통(보완대체) 지도 역량 강화	44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어지도 역량 강화(기초과정)	15	청각장애학생 지도교사(청각장애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어지도 역량 강화(심화과정)	15	청각장애학생 지도교사(청각장애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장애학생 통합체육 지도 역량 강화(초등)	100	초등 일반 및 특수교사
	장애학생 통합체육 지도 역량 강화(중등)	100	중등 일반 체육 및 특수교사
	유치원 특수교육 수업선도 교사 연수	30	유치원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 센터 교사
	초등 특수교육 수업선도 교사 연수	40	초등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 센터 교사
	중등 특수교육 수업선도 교사 연수	40	중등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 센터 교사
자격연수	특수학교(초등) 1급 정교사 과정	100	특수학교(초등) 1급 정교사 지격연수 대상자
기타연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경찰위원 장애공감 문화 조성(기초)	145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경찰위원(신규)
	계	1,429	_

〈표 3·83〉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

(단위 : 명)

영역	과정명	이수인원	기간	대상		
	특수교육교원 역량강화 1	680	3주			
	특수교육교원 역량강화 2	231	3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관련법규의 이해	310	3주			
	특수교육관련 검사도구의 사용법	140	3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국어과 교수·학습 지도	234	3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학과 교수·학습 지도	178	3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과 교수·학습 지도	63	3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과학과 교수·학습 지도	63	3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315	3주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가는 긍정적 행동지원 기초	1,086	3주	· 교원 및 교육전문직		
직무연수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가는 긍정적 행동지원 심화	264	3주] 파전 첫 파작신군(4 		
검구한구	장애학생 이해와 통합학급 운영 1	1,924	3주			
	장애학생 이해와 통합학급 운영 2	682	3주			
	장애학생 안전교육을 위한 첫 걸음	540	3주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현장 활용	204	3주			
	특수학교 자유학기제의 이해와 실제	93	3주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 과정(유치원) 201 3주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 과정(초등학교)	233	3주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 과정(중학교)	161	3주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 과정(고등학교)	112	3주			
	재활복지 미전환 치료교사 자격연수	-	4주	치료교육 표시과목 미변경자		
	특수교육 희소교과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연수	-	3주	1정 자격연수대상자(희소교과)		
	장애학생의 인권과 성교육	418	3주			
	한국수어기초과정	211	3주			
	시각장애학생 보행훈련	94	3주			
직무 및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지원능력 개발	102	3주	교원 및 교육전문직,		
교양연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	138	3주	관련인력 등		
	보조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 현장 활용	38	3주			
	2018 기초학습능력검사(NISE-B·ACT)실시 방법의 이해	65	3주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 기초과정	493	3주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 심화과정	255	3주			
701014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 고급과정	325	3주			
교양연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긍정적 행동지원	44	3주	학부모 및 보조인력		
	학부모가 알아야 할 특수교육개론	26	3주			
	학부모가 알아야 할 치료지원 서비스	18	3주			
	계	9,941	-	-		

■ 향후 과제

- 특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실행·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및 일반교 과교육 연수의 지속적 추진
- 통합교육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연수의 지속적 추진
- 특수교육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특수교육 핵심영역 및 장애유형별 지도 관련 연수의 지속적 추진
- 정책·현장수요자 요구에 따른 다양한 집합연수 교육과정 및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운영

7)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 운영,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운영,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결과물 보급 등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의 2017년 운영 결과 이용자 만족도 80.2점 (목표 80점)과 접속횟수 742,694회(목표 490,000회)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

〈표 3·84〉 장애학생 교수 학습 지원 사이트 현황

사이트 명	지원 내용	주 이용자
에듀에이블 (eduable.net)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지원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수학습 자료 사진 및 이미지, 시·도교육청 우수 수업자료 수업지원 콘텐츠 및 수업 자료 제공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탑재, 관련 정보제공 대한민국 1교시, UCC 탑재 및 홍보 시각장애학생·교사용 대체자료(EBS 등) 제공 시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사이트(blind.nise.go.kr)	학생, 교원, 학부모 등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는 학교 및 가정이나 병원 등 학교가 아닌 다양한 교육환경에서도 교육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교수·학습 콘텐츠로 e-Book형태의 콘텐츠 4종(초1~4학년)을 개발 중에 있으며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인 에듀에이블(www.eduable.net)을 통해 지원 예정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
 (급) 학생정보경진대회,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특수교육 정보화 컨퍼런스, 장애학생 IT 및 e스포츠 체험행사, 문화행사 등으로 구성되며, 2018년 9월 4일(화)부터 9월 5일(수)까지 약 1.500명의 학생, 교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개최 예정
- 시각장애 학생이 코딩(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 특성을 고려한 코딩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자료 1종 개발 예정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학생 교수·학습 및 학교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1종 개발 및 특수교육현장에서의 교육용 보조공학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특수교육 공학 연구 보고서 발간 예정
- 시각장애 학생과 교사를 위한 대체자료 지원을 위해 2018년 12월까지 약 320책을 대체자료(점자도서, 확대도서 등)로 제작하고, 시각장애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EBS 방송교재 등 171책을 점역파일로 제작하여 에듀에이블 사이트 (www.eduable.net) 내 대체학습자료 메뉴를 통해 제공 예정
- 전국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영상 공모전은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범국민 장애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교원 및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진과 홍보영상을 공모·포상하며, 수상작은 국립특수교육원 운영 사이트와 발간물 등에 활용하고, 수상작 전시회를 한국철도공사와 협업 등을 통하여 개최
- 민·관 협력 사업으로, 장애학생의 건전한 게임 이용 및 여가문화 제공을 위한 장애학생 게임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지원(넷마블문화재단), 장애청소년 생활체육프로그램 우리두리 운영 지원(두산),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조공학지원(엔씨소프트문화재단) 등 추진

〈표 3·85〉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개발 특수교육 공학 연구 보고서 발간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개발	844
시각장애 지원	시각장애학생·교사용 대체자료 제작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EBS 방송교재 점역 지원	463
기타	•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영상 공모전 • 학술정보관, 전산실 운영	357
유관기관 협업	장애학생 게임문화체험관 구축(넷마블문화재단) 장애청소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두산) 장애학생 보조공학 지원(엔씨소프트문화재단)	-
계	개발 5건, 사업 7건, 행사 1건	1,664

■ 향후 과제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학습권 보장 및 장애학생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운영) 순회교육, 가정이나 병원 등 학교가 아닌 환경에 있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환경에서도 교육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지속 확대 필요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특수학교(급) 교원, 대학 교원 및 대학생, 일반인 등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전국 규모 대회 운영 확대 및 지속 필요
 -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제4차 산업혁명 및 미래 교육환경에 장애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영역별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8)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평생교육법 개정(2016.5.)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및 개소식 (2018.5.28.) 개최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주요 업무(평생교육법 제19조의 2)

- 계획 :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계획

- 조사 :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 연구·개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과정 및 의사소통 도구 개발

- 교육 :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 협력: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지원

- 평생교육법 개정 등 국가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책무 강화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전국 단위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조사표 및 조사도구 개발과 1개 시·도 대상 시범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의 학습능력 및 장애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되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4종 및 교재·교구 4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1종을 개발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유관기관 협력과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이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초 능력 배양에 관한 내용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4회)',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세미나(2회)',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표 3·86〉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관련 사업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조사	•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연구	100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개발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 개발	800
발달장애인 관련 연구·개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기초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보조기기 개발기초연구 	368
 인적 능력 개발	•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31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활성화 방안 연구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방안 세미나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협의회 운영 	50
운영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133
계	연구·개발 7종, 사업 5건	1,482

■ 향후 과제

-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사업 예산 및 인력 확보
-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증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기반 조성·지원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 135
- 부산광역시교육청 / 146
- 대구광역시교육청 / 158
- 인천광역시교육청 / 166
- 광주광역시교육청 / 179
- 대전광역시교육청 / 191
- 울산광역시교육청 / 20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217
- 경기도교육청 / 229

- 강원도교육청 / 252
- 충청북도교육청 / 264
- 충청남도교육청 / 275
- 전라북도교육청 / 286
- 전라남도교육청 / 294
- 경상북도교육청 / 302
- 경상남도교육청 / 31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326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추진 방향

서울 특수교육 방향

장애 · 비장애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



중점 과제

- ▶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중점 과제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1. 특수교육기관 확충 1-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3.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4.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2-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2-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2-4.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2-5.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2-6.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2-7.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2-8.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2-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2-10.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2-11.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3-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3-2.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3-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구축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4-1. 장애공감문화 조성 4-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4-3. 장애학생 안전 강화 4-4.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운영 내실화 4-5.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돌봄 지원체계 강화 4-6.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2018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2018 특수학급 설치 현황

학교급별	유치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력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걘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2017	66	69	421	684	196	285	87	250	770	1,288	
2018	72	75	424	699	198	289	86	252	780	1,315	
증감	↑ 6	↑ 6	† 3	1 5	† 2	↑ 4	↓1	† 2	1 10	↑ 27	

- 2) 특수학교(급)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3)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급) 다양화·특성화 - 장애유형 및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수학교 설립·운영 방안 정책연구 추진
- 4)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기회 확대(10교)
- 5) 노후 특수교육기관의 시설 환경 개선
- 6) 학교 부적응 장애학생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1)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활용 방안' 연수 실시
- 2)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3)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의 처우 개선 및 특수학급 부장교사 배치 권장
- 4)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2) 학교별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라.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 2)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정보 접근권 강화
- 3)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적극 활용
- 4) 특수학교(급)의 정보화교육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특수 교육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거점유치원 4원, 거점센터 5센터 운영)
 - 나) 통합교육중점학교 운영:6교
 -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1) 학교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내실화 지원화 지원
- 4) 전공과 및 진로·직업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5)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지원
- 6) 특수학교(급) 컨설팅장학 내실화
 - 가) 특수학교 30교 연중 1회 이상 실시
 - 나) 특수학급 설치교 중 신청학교
 - 다) 학교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 장학 실시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학교 중도·중복 특수교육대상자 방문 순회교육
 - 가) 복지시설 내 파견학급 설치 운영 학교 : 서울정민(영락애니아의 집)
 - 나) 가정, 복지시설 내 특수교육대상자 방문순회교육 운영 학교 : 서울경운, 서울다원, 서울정문, 서울정민, 서울정애, 서울정인, 서울정진, 새롬, 연세대 재활, 한국우진
- 2) 특수학교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3)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강화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 1)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관리 강화
 - 가) 신규 채용 특수교육실무사는 30시간 원격직무연수 의무 실시
 - 나) 교육지원청별 연 4회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에 대한 연수 실시
- 2)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 3)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 4)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지원 보조인력 인건비 편성
 - 가) 학교별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인력 인건비를 학교운영비로 예산 편성 권장
 - 나) 교육지원청별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 일일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운영의 내실화

-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및 운영 내실화 지원장학 실시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만성질환 학생 중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지원 제공
- 2) 병원학교 운영 지원
 - 연세암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원자력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 3) 워격수업(꿀맛무지개학교) 지원
- 4)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 5)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6) 병원학교 진로교육 환경개선 사업 지원
 -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암병원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1센터
- 2)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학습 활동 지원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 교육 등 통합교육지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지원기능 강화
- 4)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5) 지역 중심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기능 강화
- 6)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전문화·특성화
 - 가) 시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중부, 강남서초)
 - 나)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동작관악, 성북강북)
 - 다) 지체중복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서부)

차.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 치료지워
- 2) 가족지원
 -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
- 3)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가) 장애특성에 따른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촉각교구 지원
 - 나) 기기 특성에 따라 교육(지원)청 공동구매 또는 학교별 구입 후 대여
- 4) 통학지원

카.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 1)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 가)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스포츠클럽 운영: 강남서초, 강동송파
 - 나) 특수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 다) 찾아가는 음악·체육 전문 순회강사 운영 : 특수학급 설치 중·고등학교 60교
- 2)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3)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4) 장애학생 체육대회 지위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 및 확대 운영(26교 전체)
 - 연구·시범학교 3교 운영
 -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단위학교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현장 안착 도모
 - 3)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 지원청(11개)별로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직업 체험처 발굴 협의체 구성·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 2)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가) 대상: 특수학교(급) 고3·전공과 대상

- 나) 희망일자리 추진 절차
 - (1) 직업능력평가
 - (2) 구직역량강화 연수
 - 운영기간: 3일
 - 대상: 직업능력평가 기준 통과 학생
 - (3) 지원고용 프로그램(공단 지원고용 프로그램 적용)
 - 실시장소: 일반학교, 특수학교, 도서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과 등
 - 운영기간: 3주(주 5일, 1일 4시간 기준)
 - 대상 : 취업준비 프로그램 평가 통과 학생
 - 실시직종: 교무업무보조, 행정업무보조, 시설관리업무보조, 사서 업무보조, 급식업무보조 등
 - (4) 인턴십 프로그램(서울특별시교육청 자체 프로그램 적용)
 - 실시장소: 일반학교, 특수학교, 도서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과 등
 - 운영기간: 6주(주 5일, 1일 4시간 기준)
 - 대상: 지원고용 프로그램 평가 통과 학생
 - 실시직종: 교무업무보조, 행정업무보조, 시설관리업무보조, 사서 업무보조, 급식업무보조 등
 - (5)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의 고용전환 실시
- 3) 시각장애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2교
 - 학교기업 운영학교

학교명	학교명 기업명		사업직종	장애유형
서울맹학교	서울맹학교 점자도서출판부	2014	점자도서출판	시각
한빛맹학교	한빛힐링센터	2011	건강기기체험(이료)	시각

- 4)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활성화
 - 가) 인근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컨설팅 제공
 - 나) 지역사회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직업교육·현장실습 실시 및 취업 지원
 - 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운영 학교

연번	관할청	학교명	운영 프로그램
1	강남서초	경기고	바리스타, 사무보조
2	중부	경복고	대인서비스, 바리스타 자격증, 디저트과정
3	남부	관악고	카페, 제과제빵, 자전거공방
4	강동송파	문현고	제과제빵, 사무자동화
5	서부	상암고	제과제빵, 커피바리스타, 목공 및 전기, 운동화빨래방, 주말농장
6	북부	서울문화고	바리스타, 공예, 홈카페 마스터과정

5)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효율적 운영

- 가)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설립·운영하는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전용 체험형 직업교육훈련 실시
- 나) 서울시교육청 소속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재학생 및 전공과 과정 해당 발달장애학생에게 개별요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직업체험과 직업훈련 실시
- 다) 발달장애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모델 제시 및 기업이 참여한 리얼세팅 직업체험실습실 구축
- 라) 장애학생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 및 직업체험 및 훈련대상자 선발, 학교와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교육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위한 교직원 파견(교사 1명, 교육공무직 1명)
- 마) 2018학년도 1. 2학기 직업체험 기본·심화과정 1. 2 및 직업훈련 실시
- 6)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현장실습 운영 철저
- 7) 다양한 진로 정보 및 특수교육교원의 직업교육 역량 강화
- 8)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구축

- 1)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정보 및 수험 편의 제공 강화
- 2) 장애성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 3) 학교형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으로 교육소외계층 교육 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가.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2) 장애인식 개선교육 홍보 강화

- 3)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예술공연 지원
 -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장애인식개선 예술공연 사업 운영) 활용 권장
- 4) 장애체험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추진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2) 장애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 3)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 4)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 5)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문화 확산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2) 장애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 3)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 4)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 5)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문화 확산
 - 가)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문제 행동 경감
 - 나) 장애학생 문제행동 현장지원 전문가 인력풀 구축·운영
 - 다) 장애학생 문제행동 지원 시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 구축
 - 라)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 된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 및 지원 : 4단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 평가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운영 내실화
-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마.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방과후학교 운영
 - 학교(급)별 여건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비 차등지원(급당 2,000천원 ~ 3,000천원)

- 2) 돌봄교실(종일반) 운영
 -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20학급 운영, 특수학교: 30개교 86학급 운영
- 3) 토요프로그램 운영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 2)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 운영 지원
- 3) 유·초·중·고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급 운영비 : 유치원(급당 3,800천원), 초·중·고(정액분 급당 3,000천원, 차액분 차등 교부)
 - 나) 특수학급 신·증설비 지원
 - 다) 특수학급 이전 및 환경개선비 : 학급당 5.000천원 ~ 15.000천원
 - 라)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직업교육비
 - 지원기준: 급당 2,000천원 내외(학급 수, 학생 수 대비 차등 지원)
- 4)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특수학교 신설

학교명(가칭)	예정지	장애영역	규모	개교 예정
서울서진학교	공진초 이적지	지적장애	22학급 142명	2019. 9월
서울나래학교	언남초 이적지	지체장애	22학급 136명	2019. 9월
서 <u>울동</u> 진학교	미정	지적장애	16학급 106명	2020. 3월
서울○○학교	서울정진학교 부지 (분리개교)	지체장애	12학급 80명	2020. 3월

- 나. 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원거리 통학생 재배치 계획 및 기존 특수학교 공간활용 계획 수립
 - 1) 개교준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학생 재배치 계획 수립·시행
 - 2) 특수학교 설립 운영 방안 정책연구 결과에 의한 계획 수립

다.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활용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세부사업명		목표	단위	연차적 실천 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보조공학기기 활용	물량	250	명	50	50	50	50	50	
역량강화 연수	예산	2,000	천원	400	400	400	400	400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지원단' 구축 및 운영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장학사,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세부사업명	모ㅠ	단위	연차적 실천 계획					
ペープングログ	목표		2019	2020	2021	2022		
통합교육지원단	11	단	5	8	11	11		

나. 특수교육대상 유아교육 내실화 지원

- 1) 유아특수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긍정적 행동지원 안착 등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 2) 유아특수학교 운영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 연구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세부사업명		목표	단위		rL0I				
				2018	2019	2020	2021	2022	단위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물량	200	명	40	40	40	40	40	인턴십
만 들 기 사업	예산	625	백만원	85	105	125	145	165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학교로 찾아가는 다양한 장애이해교실 운영

세부사업명		모ㅠ	단위	연차적 실천 계획					
		목표		2018	2019	2020	2021	2022	
 찾아가는	물량	217	卫	33	38	43	48	55	
장애이해교실 운영	예산	150	백만원	20	25	30	35	40	

부산광역시교육청

■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기본방향

생애다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2. 추진방향

-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 나. 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3. 중점추진과제

-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2) 특수교육대상학생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 3)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 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5)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 6)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7) 치료지원
 - 8) 통학지원
 - 9)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10)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 11)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 지원
 - 12)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확충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지원 내실화

- 1)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내실화
- 3)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 4) 특수교육 교실수업개선
- 5)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6)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 7) 특수(일반)교육 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8) 특수교육 연구 활동
- 9)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계절학교 운영
- 10) 문화·예술·체육 강화

다.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 1) 희망찬 내일을 여는 My JOB 프로젝트
- 라. 장애공감문화확산 및 지원체제
 - 1) '世울림' 장애공감문화 조성
 - 2) 장애학생 인권 보호 강화
 - 3) 장애학생 안전강화

🕕 2018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 배치 : 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 2)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 유치원 2곳
 - 3) 특수교육대상 유아 통합교육 내실화 지원 : 통합교육지원단(1팀) 운영 및 컨설팅 지원
 - 4) 초등학교 입학 전 적응지원(학부모 설명회 등),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편성·운영
- 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 1)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홍보: '18. 4월
 - 2)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홍보: '18. 3월
 - 3)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주관 장애 영·유아 순회교육 실시 : 연중
 - 4) 특수교육대상 영아 학급 운영 : 특수학교 7교(17학급)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 1) 전문적 진단·평가 지원체제 구축: 6개 팀(시교육청 1, 교육지원청 5)

- 2) 진단·평가 지원체제를 활용한 전문성 강화: 진단·평가위원 전문가 연수(연 1회)
- 3) 상급학교 진학 시 재진단·평가 : '18. 7월(예정)
- 4)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수요조사(6월). 상급학교 진학 선정배치(9월)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환경개선 사업
 - 가) 노후화 시설 개선 및 보강: 외벽 도색, 지하 및 옥상 방수 공사
 - 나) 교육활동실 구축: 마중물 동아리실 전체 정비 및 댄스실 추가 구축
 - 다) 진단·평가실 추가 구축(1실) 및 학부모 대기실(쉮터) 등 구축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배치
 - 가) 인력현황 : 총 48명(전문직 3, 순회교사 33, 행정직 8, 기간제 3, 장애전담 인력 1)
 - 나) 전문직 인력 충원: 4명(18.9월)
- 3)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순회교사 근무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 가) 근무여건 : 행정기관 복무 준수, 학생 방학 기간 활용 개인연찬 기회 확대
 - 나) 인센티브 부여
 - (1) 전보 시 급지점(최고점) 부여 및 전보가산점 부여
 - (2) 업무겸임 순회교사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및 교육전문직 전형 시 별도 가산점 추가 부여
 - (3) 순회교육 유공교원 표창 : 매년 7명
- 4)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유형과 정도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과 통합교육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센터명	부산특수교육	서부특수교육	남부특수교육	북부특수교육	동래특수교육	해운대특수교육
	지원센터	지원센터	지원센터	지원센터	지원센터	지원센터
특색사업	진로·직업교육	장애영유아교육	지체장애교육	발달장애교육	시각장애교육	청각장애교육

- 5)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가) 전문기관 연계 치료지원 실시 : 치료기관(233기관)
 - 나)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 장애인 복지관, 고용공단, 재활협회, 직업능력개발원 및 각종 산업체 등(22기관)
 - 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3기관(시각. 청각, 발달장애 등 영역별 1기관) 및 인형극 공연 단체 1기관
 - 라) 가족지원 및 직업평가 시 대학생 자원봉사자 지원: 고신대학교 외 2교

마.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사 업무지원 가이드북 제작: '18. 6월
- 2) 순회교육 교사 충원 : 중등 2명. 기간제교사 3명
- 3) 순회교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18 8월

바.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병원학교(4교, 월평균 20명) 및 원격수업 지원(월평균 120명)
- 2) 건강장애학생 지원 담당교사 연수 실시 : '18, 4월(120명), '18, 9월
- 3)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 : '18. 6월
- 4)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병원학교 4교

사. 치료지원

- 1) 지원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기타 관련서비스 등 10개 영역 지원
- 2) 지원방법(대상자 수) : 치료지원카드시스템(마중물카드)을 통한 지원(3.468명)
- 3) 치료지원기관 현장점검 및 지원 강화: 치료지원 전담팀 운영(6팀, 총 11명)
- 아. 통학지원: 학생, 학부모 1일 최대 2회 지원
- 자.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704명(교육청 지원 591명, 자활센터 지원 22명, 사회복 무요원 74명, 장기 자원봉사자 17명)

차.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 1) 장애유형별 맟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한 품목별 보조공학실 운영(총 3실)
- 2) 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와 지원체계 구축으로 수리, 세척, 소독 연계
- 3)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운영 매뉴얼 비치
- 4) 장애 영역별 거점 보조공학기기 대여시스템 구축

카.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1) 장애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안내 : 극립특수교육원(이얍, 에듀에이블), 교육청 홈페이지
- 2)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자료지원시스템(http://bsesc.pen.go.kr)
- 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 기관연계 찾아가는 가족 지원(28가족), 장애학생 가족상담(18가족), 장애학생 부모 토크 콘서트(300여명) 운영 중

파.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확충

- 1) 특수학급 신증설: 유치원(2학급), 초등학교(5학급), 고등학교(1학급)
- 2) 특수학교(급) 설립 중장기 계획 수립 : 특수학교(급) 입학 수요 및 학습환경 분석
- 3) 노후 특수학급 환경 개선(81학급) 및 편의시설 확충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1)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가) 학교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1) 학교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및 분석
 - (2)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 반영 노력
 - 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현장지원: 15교, '18, 3월
 - 다) 특성화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1) 현장 및 실습중심의 전공과 실습 지원 : 특수학교 9교(38학급)
 - (2)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및 직업교육 특성화 지원 : 2교(부산솔빛, 부산해마루)
 - 라) 인성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인성교육
 - (1) 1학교 1인성 브랜드 연계 학교별 인성교육계획 수립·운영
 - (2) 인성실천주간 운영: 1차(18, 5월), 2차(18, 9월)
 - (3) 전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 연 4시간 이상 이수
 - 마) 아름다운 인사 캠페인 정착
 - (1) 아름다운 인사 캠페인송 활용: 일과(수업)전후, 학교 시종과 연계
 - (2) 아름다운 인사 습관화 : 스승존중 제자사랑 '수업인사'
 - 바) 문화·예술 ·체육활동 내실화
 - (1) 문화·예술·체육활동 관련 정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2) 단위학교 자율체육프로그램(7560+운동) 추진 권장
 - (3) 1인 1종목 연간 17시간 이상「학교스포츠클럽 활동」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2)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가) 단위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일반학교 교육과정 포함 편성·운영
 - 나) 2018 특수학급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650부
 - 다) 학교급·발달단계별 진로교육 계획 수립 및 실천

- 라) 특수학급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유·초·중·고 (43지구)
- 마) 특수학급 현장지원 장학: 유·초·중·고(47학급)
- 바) 특수학급 담당교원의 통합교육 내실화
 - (1) 학생수준에 알맞은 통합교육 수업참여 계획 수립·운영
 - (2) 일반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활동: 학기별 1회 이상
 - (3)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지원
- 3)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가) 장애학생 지원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운영
 - 나)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 학교' 시범 운영: 해원초
 - 다) 통합학급 담임 교사의 배치 준수 및 연수 이수
 - 라) 통합교육협의회 구성·운영(개별화교육지원팀운영과 병행 가능): 학기별 1회 이상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내실화

- 1) 나이스 기반 개별화교육계획 안내:2월
- 2)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심 개별화교육계획 편성·운영
- 3) 개별화교육지원 컨설팅 : 지구별 자율장학 협의회, 부산광역시 학교컨설팅 지원센터 활용
- 4) 장애학생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개별화교육계획에 반영
- 특수학교(급)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 수립·운영: 특수학교(15교), 특수학급(24)

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및 확대 운영 지원
 - 가) 희망학교 대상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운영
 -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단' 구성·운영
 - (1) 컨설팅 운영지원단(12명), 진로체험지원단(6명), 홍보지원단(2명), 총 20명
 - (2) 일반학교 교원 및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우수학교 교원, 연구학교담당자 등으로 구성
 - 다) 교원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 (1) 교원 연수(18.5월), 1학기 및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 계획 단계 컨설팅 (18.2월, 6교)

- 2)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 가) 자유학기제 운영(9교), 자유학년제 운영(4교)
 - 나) 자유학기제 활동 운영 내실화: 교과연구회(1팀) 운영
 - 다)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학교별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 라)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연구학교 운영: 2교(부산혜남, 부산한솔)
- 3)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
 - 나) 진로체험지원단의 진로체험처 및 프로그램 검증
 - 다) 학교별 안전한 체험처 관리 및 체계 확립

라, 특수교육 교실수업 개선

- 1) 학생참여중심 교실수업 개선
 - 가) 배움이 즐거운 학생참여중심 수업 실천 : 토의·토론학습, 협동학습 등 활성화
 - 나) 1교사 나만의 수업 브랜드 갖기 : 월 1회 이상 내 수업 돌아보기 등
 - 다) 교실수업 공개를 통한 수업 나눔 : 월 1회 수업공개, 수업커플제 등
 - 라)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적 연구문화 조성 :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 2) 특수(통합)교육 수업연구발표대회
 - 가) 교실수업개선 수업연구: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교사 참가
 - 나) 대회 운영: 교수학습계획안 심사(8월). 수업공개(9~10월)

마.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 조정 지원 강화
- 2) 단위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평가 조정 적용
- 3) 통합학급,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관리 철저(평가 배제 금지)
- 4)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 평가 방법 명시

바.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컨설팅지원센터(http://consulting.pen.go.kr) 운영
 - 가) 수업, 교육과정, 학교경영, 생활지도 영역에 대한 컨설팅 지원
 - 나) 컨설팅의 자율성 보장 및 편의성 제공
- 2)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신청 절차

사. 특수(일반)교육 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교자체 연수 계획·운영

- 2)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통합) 교육 역량강화 연수 : '18. 7월
 - 나) 국립특수교육원 연계 특수교육관련 연수 이수 독려
 - 다)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확대

아. 특수교육 연구 활동

- 1) 특수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연구학교 운영 : 부산혜남학교, 부산한솔학교
 - 나)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시범운영: 해원초등학교
- 2) 특수(통합)교육 연구활동 지원
 - 가) 자율과제형 교육연구회(1팀) 운영 지원
 - 나) 특수교육 정책연구(2팀) 운영 지원
- 3) 특수학교 교내 교육연구회 조직·운영
 - 가) 과정별, 과목별 교사 자율연구회 조직, 운영
 - 나) 교육과정 운영, 교실수업 개선 등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연계 운영

자.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계절학교 운영

- 1) 특수학교(급) 523 강좌 운영
- 2) 특수학교 예산지원 변경: (´17) 재학생 80% → (´18) 사전 수요조사 결과 100% 반영
- 3) 특수학급 방과후학교(계절학교) 질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확대: (´17) 18기관 → (´18) 22기관
- 4)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예·체 중심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 5) 장애특성을 고려한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6) 수업공개를 통한 학생·학부모·교사의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차. 문화·예술·체육 강화

- 1) 특수학교(급) 문화예술체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2) 특수학교 1인 1기 문예체 교육 및 특수학교(급)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지원
- 3)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등 1인 1기 배양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가. 희망찬 내일을 여는 My JOB 프로젝트
 - 1) 직업교육 역량강화 Mv JOB 프로젝트

- 가)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연중
 - (1) 고등학교 과정 이상 설치 특수학교 11교 및 고등학교 61교
 - (2) 직업체험학습, 현장실습, 지원고용 실시 등을 위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 (3) '장애학생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교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나) 전공과 설치 특수학교(9교) 대상 실습재료비 지원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한 전공과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지원
- 다)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내실화 지원: 부산혜성학교 학교기업 「꿈이 룸」, 부산해마루학교 학교기업 「에코해마루」 운영
- 라) 부산솔빛학교 대상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지원
- 마) 부산해마루학교 대상 특수학교 직업교육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 산학겸임교사 지원, 실내수경재배시설 및 농업실습장 운영비 지원 등
- 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지원: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프로그램: 전자조립, 실용공예/12교 90명 참여)
- 사)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거점센터 운영: 고등학교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27교, 214명), 포장·조립, 사무·사서보조, 바리스타 등 3개 프로그램 운영
- 2) 기관연계 역량강화 Mv JOB프로젝트
 - 가) 기관연계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평가 운영: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1, 3학년 (45교, 240명) 대상,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평가팀, 고신대학교 직업 재활상담학과 연계
 - 나) 지역사회중심 기관연계형 직업교육 운영: 고등학교 특수학급 배치 2, 3학년 (49교, 188명)대상, 사상구장애인복지관 외 15개 기관, 21개 프로그램 운영
 - 다) 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 일반고 3학년(6교, 7명)대상, 부산직업 능력개발원(융·복합훈련, 외식사업, 특화실무훈련 과정)위탁 교육
- 3) 취업·창업지원 Mv JOB프로젝트
 - 가) 진로·직업교육 지원 연수 및 상담 강화
 - 나) 장애학생 진로설계 아카데미 운영: '18, 9월(예정)
 - (1) 대상: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2, 3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육 교원 및 학부모
 - (2) 운영기관: 진로직업교육 유관기관 5개 기관
 - (3) 지역사회 진로·진학 정보지원 연수 및 기관방문 상담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가, '世울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장애인식 개선 교육지원
 - 가) 유·초·고등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이해교육 계획 포함 안내
 - 나) 학교·교육청 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다) 교과서의 장애관련 내용 교육 충실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장애이해교육 내용 지도 자료 활용
 - 라) 장애이해교육 실시 : 연2회 이상(학기별 1회, 학년초 권장) 의무 실시
 - 마) 특수학급미설치교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비 지원: 157교
 - 2) '世울림' 교육활동
 - 가) 찾아가는 '世울림' 장애이해교실 운영: 100교
 - 나) '世울림' 인형극 공연(60개 유치원), '世울림' 그리기대회 및 우수작품 전시회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 가)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및 찾아가는 성·인권교육(70교) 실시
 - 나) 교사, 학부모 대상 인권 및 성교육 연수
- 2)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교육의 내실화: 예방상담프로그램(34교), 찾아가는 인권교육(70교), 범죄예방 인형극(25개 유치원), 홍보 리플릿(1,000부)
-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 가) 인권지원단 : 총 6단(시교육청 1. 교육지원청 5단, 65명)
 - 나)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 실시 : 연중
-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컨설팅(연수) 지원 강화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가) 특수학교(급) 학생 안전사고 예방활동 학교교육계획 반영 및 수립 : '18. 2월
 - 나) 장애학생 재난 안전 보호 : 장애학생 학교 담당자(재난대응 조력자) 지정·운영
 - 다) 장애학생 등·하교 시 보호자와 학생 안전 사항 인수인계 철저
 - 라) 학교 주변 통학로 장애학생 보호 인력 배치 운영
 - 마) 장애학생 교육실습,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
- 2)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 가) 초등 1. 2학년 '안전한 생활' 교과를 통한 안전의식 함양

- 나) 7개 안전교육 표준안(51차시)에 따른 체험중심의 안전한 교육 실시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필수 반영)
- 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실종·유괴 예방
 - (1) 신고의무자(교직원, 강사 등)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2) 아동학대예방의 날(매년 11.19.)과 예방주간 운영
 - (3) 매뉴얼에 따른 무단결석 학생(유아) 관리
 - (4) 학교단위 신고체계 구축 및 상담 창구 설치
- 3) 특수학교 안심 알리미 사업 지원
 - 가) 특수학교 재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실시간 알림
 - 나) 위치추적 단말기 및 이용료 지원: 13교, 780명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지원
 - 1)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홍보: '18, 10월
 - 2)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내실화(통합교육거점유치원) 성과 보고 : '18, 12월
- 나. 건강장애학생지원을 위한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 '18, 6월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결과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18. 12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지원 내실화

- 가.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현장지원
 - 1) 특수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워크숍 실시 : '18. 7월
 - 2)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리단계 현장지원: '18, 11월
 - 3) 특수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연수회 개최 : '18. 12월
 - 4) 특수학급 현장지원
 - 가) 유·초·중·고 특수학급 현장지원: 학교급별 5교 지원. 고(22학급)
 - 나)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43지구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 1) 학부모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학부모 연수 : '18. 6월
- 2) 자유학기제 운영지원단 워크숍: '18. 8월

- 3) 자유학기제 운영 성과보고회: '18, 7월, 11월
- 4) 자유학기제 우수사례 모음집 보급: '18. 12월
- 5) 지역사회 진로체험 프로그램 자료집 수정 보급: '18. 12월

다. 특수교육 교실수업 개선 지원

- 1) 특수(통합)교육 수업연구 발표대회 심사
 - 가) 1차 대회(교수학습계획안 심사): '18, 8월
 - 나) 2차 대회(수업공개 심사): '18. 9월, 10월
 - 다) 연구대회 성과 일반화: 1등급 수업 공개 및 입상작 탑재(12월)
- 2) 특수학교(급) 수업컨설팅 지원
 - 가) 학교컨설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수업컨설팅 지원: 수시
 - 나) 수업컨설팅 만족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결과 분석: '18. 12월

라. 특수교육 연구활동 지원

- 1) 연구학교(자유학기(년)제, 정다운학교 등) 운영 지원 : 사전, 실천, 사후 협의회
- 2) 교육연구회, 정책연구 등 연구 성과 제출 및 일반화: '18, 12월
- 3) 긍정적 행동 지원 성과 보고회 : '18, 12월

마. 특수(일반)교육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대상 특수(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 '18. 7월
- 2) 순회교사 역량강화 연수 : '18. 8월
- 3) 긍정적 행동지원 연수: '18, 8월
- 4) 건강장애 학생 지원 담담교사 연수: '18, 9월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학교기업 신설교(부산해마루학교) 개관식 개최 : '18, 6월
- 나. 장애학생 진로설계 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 및 계획 수립 : '18. 7월
- 다.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컨설팅 지원 : '18. 11월
- 라. My Job 프로젝트 실시 결과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19. 12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가. '世울림' 인형극 실시 : '18. 3, '10월(60개 유치원)
- 나. '世울림' 전시회 : 학생교육문화회관, ′18. 6월
-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홍보 앱 개발 : '18. 6월

대구광역시교육청

■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 통합 실현

2. 추진 목표

- 가.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3. 중점 추진과제

-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다.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 라. 장애공감 문화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2018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
 - 1) 특수교육의 혁신 터닝포인트 특수교육원 신설 추진
 - 가) 전국 최초 통합형 직업안전체험시설 설치(안) 반영
 - 나) 특수교육 교육가족 중심 통합에듀케어 시스템 구축
 - 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체험시설 및 교육장 마련
 - 라) 미래역량,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 및 연수 추진
 - 2)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 특성화
 - 가) 직업중점 및 문화예술 중점 신설 추진, 과학정보 중점 설립 검토
 - 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 30학급(2020, 3, 1.개교 계획)
 -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 25학급(2020, 3, 1,개교 계획)

- 나) 주민 이용 가능한 복합형 특수학교 설계 반영
- 다) 유아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합 병설 및 단설 유치워 설치 추진
- 라) 특수학급 학급당 신(증)설비 상향 지원(1급당 1천만원 → 2천만원)

나. 특수교육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 1) 특수교육교원 연차적 증원
 - 가) 2018년 공립 특수교원 77명 증원 배치("22년까지 69% → 80% 달성 목표)
 - 나) 전문상담 및 사서보조 정원 외 기간제 교원 배치(특수학교 6.5명)
 - 다) 장애교원 지원방안 마련(정원 외 기간제 배치)
-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업무 지원
 - 가) 특수교원 생애주기별 연수(신설) 및 업무 담당교원 파견 배치(1명)
 - 나) 특수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추진(15시간 2회 실시)
 - 다)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15교)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 가) 특수학교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100% 설치 완료 및 기타 편의시설 100% 설치 완료
 - 나) 일반학교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및 기타 편의시설 94.5% 설치.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 다) 특수학교 편의시설 설치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분기별 현장 모니터링 실시
 - 라) 분기별 현장 모니터링 계획 수립 시행
- 2)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시설안전 점검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인근 특수학급 교사의 관리 지원,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 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 확대
 - 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나)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거점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가)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4개원 운영
 - 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5교 운영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가)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관련 60시간 이상 연수
 - 나)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관련 집합연수 3시간 연수(연 2회 운영)
-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통합교육 연수팀 7개 운영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1) 특수교육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대구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8-1호, 4호)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폭력 예방 및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법적 이수 시간 적용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중증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설. 재택 순회 및 병원학교 운영
- 2) 자료제작 및 구입, 여비, 운영비 지원 등 순회교육 지원 범위 확대
- 3) 순회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가족 지원 방법 등
- 4)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설치 · 운영 강화
 - 가) 병원학교 운영 3학급(영남대의료원, 대동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운영
 - 나) 병원학교별 정규 특수교사 1명 및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 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과지도를 위한 교과 전담교사 지원 및 특기·적성 교육 실시
 - 라) 2019학년도 동산의료원(성서 이전) 병원학교 개교를 위한 인가 및 환경 구축

마.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1) 인력 지원 현황 : 총 712명(실무원 514명, 사회복무요원 198명)

- 2) 역량 강화를 위한 보조인력 전원 연수 실시(원격 및 집합 7월 중 실시 예정)
- 바.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 1) 학기초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2)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통한 교수·학습 및 관련 서비스 지원
 - 3) 특수학교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초·중·고 특수학급으로 점차 확대

사. 장애학생 학력평가 및 평가조정제 실시

-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독려
- 2) 특수교육대상자 학교단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3) 평가조정제 지원 명문화: 대구광역시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장애학생 학력 평가 및 평가조정제 포함

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협력 체제 구축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5개소(교육지원청별 4개소, 대구특수교육지원 센터 1개소)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노력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마) 유관기관 연계 '장애학생인권지원단' 기능 강화
 - 관할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상담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인권지원단 구성
 - ※ 내부위원-3명, 외부위원-7명(경찰, 변호사, 인권강사, 상담전문가 등)
 - 더봄학생 중심으로 관할경찰서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활동
 -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특별 지원

자.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맑은소리 하모니카 학교기업 출범(2018.6.18.)을 통한 졸업 후 문화예술 진로 개최
- 2) 특수교육 위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및 빛솔합창단 등 단위 학교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3) 제4회 대구광역시교육감배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통한 뉴스포츠 소개 및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교원 약 3,000명 참가)

차.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토요프로그램 및 방학프로그램 운영

- 1) 종일반 운영: 특수학교내 30학급 운영
- 2)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96만원 지원
- 3) 장애학생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운영(특수학교)
- 4)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계절제학교 운영
 - 특수학교 9개교, 2주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5개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실시

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1) 치료지원: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월 12만원 범위 내 지원
- 2) 가족지원: 보호자 교육, 상담활동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3) 통학지원: 학생 및 학부모 교통비 지원, 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 1) 자유학기제 운영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연구학교 1회, 특수학교 3회)
 - 2) 진로체험처 구축 및 확보를 위한 지자체 연계 사업 실시(체험체 및 문화·예술, 체육, 상담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요청
 - ※ 장애학생 이용 가능 「꿈길 등록처」 94개 확보 및 체험 가능 여부 점검
 - 3) 자유학기제 관련 교수·학습 방법 및 학생중심 교육과정, 평가조정 관련 연수 실시
 - ※ 15시간 1'2기(상하반기) 운영, 특수교원 70명
 - 4) 자유학기(년)제 연구학교 운영: 대구남양학교(자유학기제), 대구덕희학교 (자유학년제)

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정착
 - 가)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2교)
 - 나)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내실화
 - 5교 연합 학교기업 성산 경영진단 실시, 운영종목 개편
 - 대구성보학교 맑은소리하모니카연주단 학교기업 신규 개소(2018.6.18.)

- 학교기업 카페위 2개점 신규 개소(교육박물관점, 대구농업마이스터고점)
- 다) 안전한 진로직업교육실 환경 조성(1교, 대구남양학교)
- 라) 특수학교(급) 전공과 연구회 운영(중심교: 대구보건학교)
- 2) 원스톱 취업지원, 사후관리 체계 확립
 - 가)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 구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학교기업, 거점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구)청,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 나) 장애특성에 적합한 진단 및 직업평가 체계 구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등 직업평가 협업
- 3) 교육청 특화형 장애학생 직업박람회 개최(9월 예정)
- 4) 학교에서 사회로 성공적 전환 성과 도모 : 진학 및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학생 전환 지원(후반기 예정)
- 5)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 가) 중등 특수교사 실기 직무연수 과정 개설(후반기, 25명)
 - 나) 학부모 대상 진로직업교육 정보 제공(발달장애인훈련센터 협업 수시 실시)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구축

- 1)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교육지원 강화
- 2)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 교육지원에 대한 책무성 강화
 - 전국 최초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1개 지정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가. 지역사회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가)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의무 실시
 - 나) 교육(지원)청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1회 반영
 - 2)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 가) 장애공감문화조성 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특교금)
 - 나) 대구교육박물관 내 특수교육관 설치, 범시민 장애공감 메시지 전달

- 3) 장애학생 문화예술 배리어프리 정책 지속 추진
 - 가) 대구교육의 자랑 특수학교(급) 연주단 및 합창단 홍보 강화(3개팀)
 - 맑은소리하모니카연주단(대구성보학교), 위드심포니오케스트라, 빛솔 합창단
 - 나) 대구학생동아리한마당. 대구학생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 출연 기회 마련

나.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가) 유·초·중·고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및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나)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2)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캠페인 자료 완료 및 활용
 - 나) 유치원~대학 및 공공기관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콘텐츠 개발 중

●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
 - 1) 문화예술중점특수학교 학교 설립 및 교육과정 T/F팀 구성
 - 2) 문화예술중점특수학교 교원 배치를 위한 특정교과 교사 신규채용, 연수 신규 개설
 - 3) 장애학생특성화고등학교 부지 수용, 개교 요원 구성
 - 4) 진로직업 전문교사 양성 직무연수 실시(2년째)
- 나. 특수교육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 1)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 통합교육 업무 지원 교사 배치 추진
 - 2) 중등특수교사 진로직업 연수 과정 개설 및 만족도 조사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통합교육지원실 구축 추진
 - 2) 통합학급 업무 경감을 위한 학급정원 1~3명 감축 조정

- 3) 통합교육 유치원 학급정원 축소, 방과후 과정 인력 추가 지원
- 4) 정다운학교 과정별 통합교육 모델 개발
-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관리자 특수교육 직무연수 지속 추진 및 유치원장까지 대상 확대
 - 2) 특수교육 교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집합연수 4개 과정 운영 및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 가. 장애학생 취업박람회 협업 실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대구발달 장애인훈련센터)
- 나. 공공기관 일자리 발굴 및 적용
- 다. 특수학교(급) 전공과 연구회 수업발표 및 보고회
- 라. 진로직업교육 지역사회 관계 기관 네트워크 정기 모임(2회 예정)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가. 맑은소리하모니카연주단 찾아가는 연주회, 정기연주회 개최(연말)
- 나. 위드심포니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연주회, 정기연주회 개최(연말)
- 다. 학교기업 「맑은소리하모니카연주단」 전용 연습실 리모델링

인천광역시교육청

■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기본방향

장애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으로 모두가 행복한 특수교육 실현

2. 추진방향

-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통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나.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으로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다. 장애학생 취업 및 자립능력 향상을 통한 진로 및 고등 평생교육 지원 강화
-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예방 지원체제 구축

3. 중점 추진과제

- 가.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 및 교육지원 내실화
 - 1) 장애영아 교육 및 치료지원
 - 2) 장애유아 의무교육 내실화
- 나.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충실
 - 1)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 지원
 - 2)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다. 장애학생 담당교사의 전문성 강화
 - 1)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수업중심 학교 문화 형성
 - 2) 특수교육 장학 지원으로 특수교사 전문성 제고
- 라. 통합교육 지원 강화
 - 1) 통합교육 지원 체제 구축
 - 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마.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강화
 - 2) 현장중심 위드잡,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 3) 학교 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 바.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법 다양화
 - 1) 종일반운영, 방과후교육활동 및 치료지원
 - 2) 장애학생 통학비 및 보조인력 지원
- 사.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체제 구축
 - 1)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 2) 특수학교(급)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아. 연계·협력 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1) 지역사회유관연계 특수교육 복지서비스 지원
 - 2) 장애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지원
 - 3)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 2018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특수학급 학생 법정 정원 충족을 위한 특수학급 확대
 - 가) 특수학급 신증설 : 유 7학급. 초 15학급. 중 1학급. 고 3학급 총 26학급
 - 나)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학교 3학급
 - 2) 합리적 기초자료에 근거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장기 수용 계획 마련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학교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급 설치 운영
 - 나) 특수학교 개교추진 : 2018년 인천청인학교 개교, 2020년 서희학교(가칭) 개교
 - 3)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가)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 2017년 62학급 → 2018년 68학급
 - 4)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 나.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1)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향상
 - 가) 특수교육교원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 특수교육 수업지원단 연수(30시간)

- 특수교육교원 교과지도, 자유학기제, 특수교육 핵심영역 및 장애유형별역량 강화 연수
- 특수교육 수업컨설팅 지원 : 멘토-멘티가 만나는 특수교육 수업 지원
- 좋은 학교 만들기 특수학교 컨설팅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 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2회, 10시간)
- 다) 특수교육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10팀)
- 2) 특수교육교원 심리상담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평가조정 지원 강화
 -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 특수교육대상자 평가조정 현장안착을 위한 안내 및 현장지원 강화
 - 중도·중복장애학생,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합리적 대안평가 방안 마련
- 2) 장애학생이 학교단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가) 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학교별 학업성적 관리 규정 마련
 - 나) 학교단위 평가 시 장애유형에 따른 평가 방법 조정 적용
- 3)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조공학기기 확충 및 대여 시스템 구축
 - 나) 특수교육대상자 및 담당교사에게 보조공학기기 활용 등에 대한 방문교육 지원
 - 다)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 지원
- 4) 단위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 가)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홍보 및 예산 확보
 - 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제공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지원 : 유 38명, 초 13명, 중 6명, 고 2명

- 특수학급 미설치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 : 유 67명, 초 24명, 중7명, 고 2명
- 나)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장애유아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 3개원
 - 장애유아 담당교원 통합교육 전문성 신장
 - 장애유아 담당교원 통합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실시
-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현장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치료사,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한 통합 교육지원단 구성 운영
 - 나)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시각장애특성화지원센터 : 동부교육지원청
 - 청각장애특성화지원센터: 남부교육지원청
 - 자폐성장애특성화지원센터 : 북부교육지원청
 - 다)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 1교
 -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우수사례 발굴·보급: 통합교육 연구학교(1교: 인천가림초등학교)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역량 강화(연 3시간, 집합연수)
 - 가) 2018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유치원 관리자 연수 : 2018. 6. 8.(금)
 - 나) 2018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고등학교 관리자 연수 : 2018. 9. 19.(수)
- 2)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 역량 강화
 - 가) 국립특수교육원의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대상 연수과정 참여 적극 홍보
 - 나)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 2018, 5, 29.(화)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1)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인천광역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및 보급
 - 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진로와 직업 중점학교 운영: 미추홀학교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강화
-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내실화 지원
 - 가)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발달단계·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자료 지원
- 4)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 가)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연차 적용에 대한 현장교원 연수 지원
 - 나)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및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 연수 지원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가) 방문교육, 통신교육 등 순회교육 지원 : 유 38명, 초 13명, 중 6명, 고 2명
- 2) 순회교육 내실화를 위한 순회교육 담당자 연수 강화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학급 지원: 특수학교 3학급, 초등 7학급. 중학교 5학급
- 2)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가) 일시: 2018. 2. 13.(화)
 - 나) 협력기관 : 인하대학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노틀담복지관
- 3) 의료적 지워 및 보조공학기기 관련 협력팀 구축
 - 가) 협력팀 구성: 재활의학과 교수, 자세유지기구센터 팀장, 치료사, 특수교사 등
 - 나) 의료적 지원: 건강검진, 의료적 자문, 담당자 및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 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 중도·중복장애학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조 공학 기기 관련 맞춤형 컨설팅, 보조공학 기기 관련 연수 제공

바.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지원

- 1) 특수교육실무원 : 정원 547명
- 2) 특수교육실무원 연수 운영: 특수학교 5개교 149명(사회복무요원 포함)

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강화
 -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운영 지원
 - 나) 단위 학교별. 학년별 개별화교육지원 관련 교사 연수 및 학부모 교육 강화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 제공 강화

- 가) 교육과정 및 교과 특성,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 활용
-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사조직 및 특수교육 보조 인력 활용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학습 및 심리, 정서 지원으로 학교생활 적응 도모
 - 가) 인천사이버학교 운영 : 초등학생 36명 지원
 - 나) 한국교육개발원 원격수업 운영 :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38명 지원
 - 다) 병원학교 운영 : 인하대학병원(3명 입급)
 - 라) 건강장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전문인력 배치 확대 : 2017년 29명 → 2018년 30명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방안 마련
- 2)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
 - 가) 기능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시각장애특성화지원센터 : 동부교육지원청
 -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18명), 심리상담(17명), 점자 교육 지원(1명)
 - 시각장애 관련 기관 견학(2명)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9명)
 - 청각장애특성화지원센터 : 남부교육지원청
 - 특수교사 대상 청각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1회)
 - 학부모 대상 청각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1회)
 - 쉐어타이핑 플랫폼을 활용한 청각장애학생 학교 수업 문자통역지원(3명)
 - 청각장애학생 학부모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20명)
 - 자폐성장애특성화지원센터 : 북부교육지원청
 - 자폐성장애학생 개인 심리상담 지원(20명, 5회기)
 - 찾아가는 통합학급 또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24학급)
 - 찾아가는 특수학급 함께 어울림 로봇교실 운영(23학급)
 - 학부모대상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심리치유 집단상담 지원(20명, 5회기)
- 학부모 두근두근 우쿨렐레 교실 운영(10명, 5회기)
- 학부모 도란도란 요리 교실 운영(20명, 5회)
- 학부모 대상 클래식과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60명)
- 학부모 대상 저자와 함께하는 북콘서트(40명 예정)
- 가족체험 나들이(34가족, 100여명)
- 교사(일반교사, 특수교사) 대상 저자와 함께하는 북콘서트(60명 예정)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등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업무 협약 및 치료지원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장애인복지관 연계 방학 중 방과후활동프로그램 지원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예술 활동 및 동아리 지원 : 특수학교 9교, 초 21교, 중 7교
-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인천장애인체육회 운영 연수 안내 및 홍보
- 3)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3. 진로 및 고등 평생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 1)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 자유학년제 2교, 자유학기제 6교 운영
 - 2)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가)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교사 및 학부모 연수 운영:1교
 - 나)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컨설팅 운영: 8개교 각 3회
 - 다)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유학기제 체험처 발굴 및 안내
 - 3) 자유학기(년) 운영교 대상 학습공동체 운영:8교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 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 진로인식 및 탐색 기능 강화
 - 나) 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진로탐색,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사회 진로·직업 체험처 참여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탐색,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5센터 운영

- 다) 고등학교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고용 지원 등을 위한 직업교육 중점 학교 운영: 미추홀학교
- 라) 전공과 설치 확대 및 자립생활훈련·직업재활훈련 제공을 위한 운영 형태 다양화
 - 특수학교 전공과 8교 37학급 운영(자립생활훈련반 7학급 포함)
 - 일반학교 전공과 2교 3학급(강남영상미디어고, 박문여고) 운영
-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사회 연계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운영
 - With-JOB 운영: 장애인고용공단, 노틀담복지관, 사업체 협력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 원스톱 취업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협력 강화
 - 복지관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평가 실시
 - 장애인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원스톱지원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 직무체험 기본과정(200명, 10시간(주 3회), 5개관 10개 직무체험)
 - 직무체험 심화과정(200명, 2개 직무심화체험, 40시간(주 2회/4주))
 - 나)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침 수립
 - 인천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현장실습 운영 지침 마련
 -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활성화 지원
 - 다) 장애학생 직업교육 전문기관 직무위탁교육(20명, 180시간)
 - 기초사무능력향상, 예약발권훈련, 서비스마인드 훈련, 진로직업소양 교육
- 3) 특수학교(미추홀학교) 학교기업 효율적 운영
 - 3개 민간기업 교내 유치 실습지원. Job-school 사업 운영
- 4)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효율적 운영
 - 거점학교 3교(강남영상미디어고, 박문여고, 인화여고)
 - 인근 특수학급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직업교육 지원 및 컨설팅 제공
 - 고등학교 특수학급 75개교 108학급 지원
- 5)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

- 가)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참여 확대 :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69명 고용
- 나)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참여 확대
- 6)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다.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 1)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 및 수험 편의 제공 강화
 - 가)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입학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의 진학 상담 및 진학 정보 제공 강화
- 2) 지역특성을 고려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 가)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대 및 지원 인프라 구축 강화
-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 가)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중도·중복장애 참여 기회 확대
 - 나)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연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가. 전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가)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방송 활용
 - 나) 우수사례 및 백일장, 홍보 동영상 공모전 등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 참여 유도
 - 2) 일반학교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가) 일반학교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 남·북·동·서·강화교육지원청
 -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4) '제4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으로 장애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촉진
 - 가) 기간: 2018. 9. 18. ~ 9. 20.
 - 나) 장소: 송도컨벤시아
 - 다) 내용: 문화·예술·체육, 장애인식개선 등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체험활동 전시관 부스 운영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6개 인권지원단 65명 위원 구성 운영
- 2)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현장정기지원 현황 : 5월까지 32회, 6월 이후 69회 예정

- 3)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66교 370명 및 인권교육: 72교 460명
- 4) 일반학생 대상
 - 일반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교육: 83교 5,964명
 - 통합학급 또래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 5교 10학급 내외
- 5) 교사대상 연수 운영 : 특수교사 72교 88명, 일반교사 24교 593명
- 6) 학부모대상 인권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대상 장애학생 인권 연수: 72교 123명
 - 학부모대상 맞춤형 성교육 및 체험활동: 12교 27명
 - 학부모 심리치유 집단상담: 10교 18명
- 7) 더봄학생대상 프로그램 운영: 39교 65명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특수학교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운영
-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하여 학교안전교육 실시가) 특수학교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토론훈련 실시: 2018, 5, 18,(금)
- 3)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가) 학교시설 안전점검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4) 학교별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및 미세먼지 건강 피해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 평가 체제 구축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가) 6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기능 강화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 무상·의무교육 홍보 및 안내
 - 다) 장애영아 조기 교육을 위한 상담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편성: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내 영아학급 편성 운영(1학급)
-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 가) 지능·언어·정서행동·학습·영유아 발달 검사 등 334종 진단평가도구 확보
- 3)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 나) 유치원-초등학교 연계를 통한 초등학교 입학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주민센터 연계를 통해 대상자 파악 및 입학 지원
- 유치원, 어린이집 홍보를 통한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지원
- 4)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가) 취학의무 특수교육대상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나)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처 교육기회(평생교육 포함) 제공을 위한 방안 강구
- 마. 특수학교(급) 방과후교육활동 토요프로그램 운영
 - 1) 종일반 지원: 방과후 돌봄 및 교육 지원
 - 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유·초등학생대상 총 29교 49학급 운영
 - 365일 운영 학교(급): 14교 30학급
 - 275일 운영 학교(급): 15교 19학급 ⇒ 방과후 보육 및 교육으로 교육
 기회 확대 및 부모 사회활동 참여 원활
- 바.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 2)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Ⅲ 향후 추진 계획

-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1)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급 신증설확대
 - 나. 특수교육교원 및 통합학급 담당교원 전문성 강화
 - 1) 특수교육교원 및 통합학급 담당교원 원격 연수 및 직무 연수 실시
 -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단위 평가 참여 확대 지원
-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통합교육 지원 인력풀 구축 및 통합교육 거점기관 운영 내실화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역량 강화(연 3시간, 집합연수) 가) 2019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유·초·중·고등학교 관리자 연수 실시
- 2)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 역량 강화
 - 가) 국립특수교육원의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대상 연수과정 참여 적극 홍보
 - 나)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실시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개별화교육계획 NEIS 반영
- 2) 중도·중복장애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 고등학생 지원을 위한 학급 신설 추진
- 2)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한 협력팀 구축
 - 가) 협력팀 구성: 재활의학과 교수, 자세유지기구센터 팀장, 치료사, 특수교사 등
 - 나) 의료적 지원: 건강검진, 의료적 자문, 담당자 및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 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도·중복장애학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조공학기기 관련 맞춤형 컨설팅. 보조공학 기기 관련 연수 제공

바.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지원

- 1) 특수교육실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배치 확대
- 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강화
-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인천사이버학교 운영: 초등학생 지원
 - 2) 한국교육개발원 원격수업 운영: 중·고등학생 지원
 - 3) 병원학교 운영: 인하대학병원
 - 4) 건강장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정보시스템 확대 운영

-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예술동아리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강화
- 3. 진로 및 고등 평생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직업교육 전문화
 - 1)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2)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 및 학교기업 운영 내실화
 - 3)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
 - 다.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 1)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진학 정보 및 수험 편의 제공 강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가)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방송 활용
 - 나) 우수사례 및 백일장, 홍보 동영상 공모전 등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 참여 유도
 - 2) 일반학교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가) 일반학교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
-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특수학교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운영
 -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하여 학교안전교육 실시
 - 3)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학교시설 안전점검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4) 학교별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및 미세먼지 건강 피해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진단 평가 체제 구축
- 마. 특수학교(급) 방과후교육활동 토요프로그램 운영
- 바.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광주광역시교육청

■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목표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2. 추진 방향

- 가.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3. 중점 추진 과제

-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다.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4. 중점 과제별 세부 추진 내용

-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1) 특수교육기관 확충
 -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3)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4)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5)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 6)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 7)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 8)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0)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다.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 2)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기축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1)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3) 장애학생 안전 강화
- 4)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5)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6)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2018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 2018년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설 3학급, 증설 4학급 설치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1) 장애학생, 가족 등 상담 및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2017년 특수학교 2교 ⇒ 2018년 특수학교 5교
- 2) 예비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가) 특수교육 관련 대학과의 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교육활동 및 실습 운영 협력
 - ※ (2017.11.)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 나) 특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강화 직무연수 실시: 15시간

- 다) '특수교육자율장학연구회'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 및 특수학급 운영 관련 정보 공유 등 교실 수업 개선 풍토 조성
 - ※ 인근 지역별 특수학급(교) 담당교사 중심의 연구회 구성: 12팀(유 1, 초 6, 중 3, 고 1, 전공 1)
- 라) 특수교육 현장연구 및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특수교육실천사례연구 발표대회 추진
- 3)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가) 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 가)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자가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평가조정 적용
 - 나) 특수교육대상자 평가조정 현장안착을 위한 안내 및 현장지원 강화
- 2)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등 보조 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
 - 나) 특수교육대상자 및 담당교사가 보조공학기기를 교수·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현장 지원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 기관 운영: 유치원 2원
 - 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 공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 월 90천원 범위내 지원
 - ※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 월 361천원 범위내 지원
 -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가)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및 운영

-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 교육지원을 위해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각 및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 청능훈련, 보행훈련, 수화통역, 점자지도 등 인력풀 구성 및 현장지원단 운영
- 3)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 가) '정다운학교'를 통해 협력수업 등 다양한 협력 모형 개발·운영 ※ 2018년 정다운학교 운영: 하남초등학교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장애인 인권보호 관련 내용 포함) 확대
 - ※ 통합교육 담당교원은 직무연수 60시간(누적치 인정) 이상 이수 권장
 - 나) 자격 연수과정에 장애이해(인권보호 포함) 및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1개 이상 포함하여 운영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1)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 (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지원
 - ※ 진로직업교육 중점 교육과정 운영 1교: 광주선광학교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특수학급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 나)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강화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 순회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 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 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나)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 영아를 위한 순회교육 지원 : 특수학교 영아학급 4학급 운영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가)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특수교육-치료지원 연계망 구축
 - 가) 의료기관, 대학,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체장애 특수학교에 특수교육-치료지원 연계망 구축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 1) 특수교육실무사 운영·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 지원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 특수교육실무사 236명
 - 나) 특수교육실무사 순환근무제 실시
- 2)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 가) 지원대상의 성별, 연령 및 장애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학 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 사회복무요원 138명
 - 나)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 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나)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다)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 라)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 마)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 및 역할 확대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지원 제공
 - 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 나)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병원학교 운영 ※ 학마을 병원학교 1학급 신설(전남대학교병원 내)
 -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위탁교육 실시
 - ※ 병원학교:여미사랑 병원학교(화순), 느티나무 병원학교(나주)
 - ※ 원격수업: 꿈사랑학교, 한국교육개발원
 - 라) 건강장애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건강장애학생 10명
- 2)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 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학교 담당교사 연수 실시
 - 나)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실시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우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전문직,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 전문상담 및 통합교육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확대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전보 우대, 전문성 신장 기회 우선 제공
-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 가)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전문적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특성화하여 운영
 - ※ 전환교육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청각장애교육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1()천원 범위 내
 - ※ 학생 및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별, 특성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지원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가) 발달장애학생 및 가족 지원 업무 협약 실시
 - ※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 업무협약 (2018. 5. 3.)
 - 나)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사업체 직무체험 등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 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 참여자 지원사업 간담회 실시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운영
- 2)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등을 통해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체험 기회 제공 및 문화향유권 확대
- 3)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배치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지원
 - 가) 특수학교 여건, 장애유형 및 정도,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교수준 교육과정 재구성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특수학교 전체
 - 나)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운영 : 자유학기 확대를 희망하는 특수학교 3교
 - 다) 자유학기제 지원 체계를 확립을 위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단 구성·운영
 -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가)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단계별 맞춤형 교원 연수 실시 : 2회
 -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실시 : 특수학교별 1회
 - 3)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양질의 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 ※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나) 특수학교 체험활동 지원을 우한 진로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 가)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시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
 - 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 학교 내 진로탐색기능 강화 및 교과·진로 융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직업교육실 환경 조성
 - ※ 진로·직업교육실 환경 조성 지원:특수학교 2교
-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가) 장애학생의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가 원스톱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한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 협의체' 구성
- 3)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운영 강화
 - 가) 특수학교 학교기업이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재학생 및 인근 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
 - ※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비 지원: 1교, 30,000천원
 - 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가 지역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컨설팅 등 거점학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비 지원: 1교, 30,000처원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기축

- 1) 학령기 의무교육(초·중·고)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에 대한 학력 보완 등 맞춤형 교육 및 지원
 -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2017. 7. 1.)
- 2) 장애인 문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보급을 통하 학력보완 기회 제공
 -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3기관, 300,000천원 지원
 -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5기관, 8,500천원 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가) 유·초·중·고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나) 일반학교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유·초·중·고등학교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지원

- 다) 교육청(직속기관) 및 학교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2)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 가) 유·초·중등학생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및 홍보 콘텐츠 활용 안내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가) 교육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
 - 나)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 2)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가) 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 나)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3)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 가)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 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 2) 교육현장 특성을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재난) 안전교육 수시 실시
- 3)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홍보
 - 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강화
 - 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 나)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라)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학교(급) 유치워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 가) 지원이 필요한 가정(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중 희망자 우선 지원
 - 나)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18학급, 급당 운영비 1.500천원 지원
 - 다)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10학급, 급당 운영비 1,500천원 지원
- 2)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
 -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소질·적성 계발, 사회적응력 신장, 직업교육, 학생·학부모의 요구, 학교 여건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별 지원
 - 나) 특수학교(급) 교내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월 550천원 지원
 - 다) 학교 밖 특기적성교육비 개별지원 : 월 90천원, 12개월 지원
- 3) 방학프로그램 운영
 - 가) 특수학교(급)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 나) 학교, 지역사회 비영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선정에 의한 방학학교 프로그램 유영
 - ※ 특수학교 1교, 비영리기관(민간단체) 4기관, 운영비 459,400천원 지원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교육 전담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 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 적정 배치
 - 나)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의 연수 등 역량 강화
- 2)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신·증설 시 교육 환경구축 운영비 지원 ※ 급당 신증설비 40,000천원 지원
 - 나) 특수학교(급)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 ※ 특수학급 운영비: 유치원 급당 2,500천원, 초·중·고교는 급당 2,000천원 지원
 - ※ 특수학교(급) 학습준비물: 1인, 30천원 지원
 - ※ 직업교육 운영비: 고등학교 특수학급 급당 1,000천원, 특수학교 교당 10,000천원 지원

●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유·초·중·고등학교 설립 시,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 2) 특수학교 과밀. 원거리 통학 해소 등을 위해 특수학교 신설 추진
-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1)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2) 단위 학교별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수업과 교육과정을 함께 연구하면서 교실 수업 개선 추진
 - 3) 특수교육자율장학연구회 구성원 의견 수렴에 따른 맞춤형 연수 지원
 - 4) 특수교육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특수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추진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지원 및 통합 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보급
 - 2) 시각 및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협력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학생·부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학교 교(원)장의 특수교육 연수 실시
 - 2)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1)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한 2019학년도 광주광역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2)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및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라. 특수교육 보조인력 대상 맞춤형 학생 지원 및 직무능력 향상 연수 실시
- 마.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가족캠프 운영

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생애주기별 전환교육프로그램 장학자료 개발·보급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등 담당인력의 맞춤형 연수 확대
- 사.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 중심의 문화예술제 추진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 1)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와 공갂대 형성을 위한 학부모지원단 발대식 실시
 - 2)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재구성 및 과정중심 평가 자료집 개발·보급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사업체,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2)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에 대한 성과 관리
- 3) 장애학생의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가 원스톱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스톰 통합지원 서비스 혐의체' 유영 및 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2)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캠프 운영 : 2기관, 12,000천원 지원
- 나.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현장지원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실시
- 다.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1)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실시
 - 2) 초·중·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진단·평가 실시 및 선정·배치 실시
 - 3)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실시

라.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별지원을 통한 특기적성교육 내실화
- 2)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 3) 방학학교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장점검 및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 특수교육 추진 방향

- 1.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 가. 추진 방향
 - 1)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통합교육 강화
 - 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수교육 환경 조성
 - 3) 장애특성별 특수교육대상자 핵심역량 강화

나. 중점 추진 과제

- 1) 균등학고 공정한 교육체계 구축
- 2) 통합교육 내실화
- 3) 특수교육 지원 강화
- 4) 소통과 참여의 장애공감문화 확산

1 2018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체계 구축
 - 가. 특수교육 기관 확충
 - 1) 의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특수학교(급) 학급 신·증설 확대 추진
 - 장애유형·정도에 관계없이 원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특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 특수학교 학급 증설 : 3학급
 - 특수학급 신·증설 : 24학급(유 4. 초 7. 중 7. 고 6)
 - 2)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설치·운영
 - 가) 장애학생이 거주지 인근에 배치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 비율 대비 학교구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설치
 - 나) 공·사립 일반학교 및 학생 과밀학급에 특수학급이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 가) 고등학교 특수학급 2학급 이상 설치료 특수교사 추가 배치
 - 나) 대전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관련 자격소지 교원 우선 배치
- 2)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 가) 국립특수교육원 연계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 장애유형별 역량 강화 연수 참여
 - 나) 특수교육 관련 연구회 및 현장연구 운영 활성화 지원
- 3) 특수교육교원 심리상담 지원 노력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학교단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가)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평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유형에 따른 평가조정 방안 마련
 - 나)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평가 조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
- 2)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한 대여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지원
- 3)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배치 체계 구축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 가)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 파악
 - 보건소, 병의원, 유치원, 보육시설,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무상 및 의무교육 적극 홍보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정보와 정책에 대한 홍보
 -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영아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수행 및 그에 따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4)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기관 지정·배치
 - 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기회 부여
 -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순회학급, 병원학교 등
 -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및 능력, 거주지 등에 적합한 학교 지정·배치
 - 근거리 배정 원칙 준수. 보호자 의견 반영
- 5)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가) 취학의무 대상 특수교육대상 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나) 만 3'5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
 - 다)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시, 생활연령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 하는 등 교육기회 제공 방안 강구
- 6)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변경 및 재배치(전입학)
 - 초등학교 전학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중·고 전학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89조 제2항에 의거 하여 추진
 - 배치 변경 또는 재배치 시, 개별화교육지원팀 검토를 거쳐 교육(지원)청에서 처리

마.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강화

- 1) 특수학교(급) 운영지도 강화
- 2)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실시
- 3)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 4)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
- 5)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 편의 지원

2. 통합교육 내실화

- 가.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일반학교(유치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가)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 지원 및 컨설팅 실시
 - 나)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지원
 - 다) 장애유아 통합교육 활성화 거점유치원 운영

-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가) 시·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한 '대전시·청각 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나)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장애이해교육 및 대학생 멘토 링 등 지원
-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가)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 학교' 운영
 - 나)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북 안내
- 4) 통합교육 기여 비장애학생 지원 강화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특수교육 직무연수 확대
 - 가) 통합학급 교사 및 일반교사에게 특수교육 직무연수 연수 기회 확대
 - 나) 대전교육연수원에 특수교육 관련 원격 연수 기회 확대
 - 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일반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과정에 참여 적극 권장
 - 라) 통합학급 관리자(교장) 특수교육 이해 연수 실시
-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처우 개선 및 지원
 - 가)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직무연수 이수 지원
 - 나) 통합학급 담당교사 직무연수와 전보 가산점 연계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 1)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지역 및 학교의 특수성과 창의성, 학생의 요구·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편성· 운영
 - 나) 진로·직업 중점학교 운영: 특수학교 1교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 반학교 교육과정에 포함 편성·운영
- 3)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 2011 및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학년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라.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내실화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강화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
- 매 학년 시작일 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학기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 화교육 계획 송부

나) 개별화교육계획 포함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 사항,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 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제공할 특수교육 관 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
- 다)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 업성취도 평가 실시
 -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결과 통보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가) 교과 및 단원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 활용
 - 나) 학생요구 및 학교 실정에 따라 협력교수 등 다양한 교사 조직 활용 및 보 조인력 활용 확대

마.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건강장애 선정 및 무상교육 혜택 제공
 - 가)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장기 의료처치가 요구되어 연간 수업일수의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유급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 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을 선정
 - 나) 선정 절차를 신속 처리하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병원학교(충남대학교병원학교), 원격수업시스템(꿈사랑학교, 한국교육 개발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 다) 병원 혹은 가정에서의 개별적인 학습지원 및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 가) 병원학교 소속병원의 주책임 의료진에 대해 '명예교장' 역할 부여 및 병원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

- 나) 병원학교 운영을 위한 연간 계획 수립 및 내실화 도모
- 다)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중심 화상강의 운영 방안 강구
- 3)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가) 건강장애학생 담당교사 연수 및 보호자 교육 실시
 - 나)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다)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원적학교 교원 연수 및 또래 교육
- 4)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 가)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확인
 - 나) 출결은 위탁교육기관의 출결확인서에 따름

3. 특수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 전문인력 배치 확대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 연수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 연수 지원
 - 국립특수교육원 연계 순회교사 맞춤형 연수 지원
 -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기능 강화
 - 가) 지역 여건 및 기능을 고려한 특성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나)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및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지원 강화
 - 라)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가)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 자원 활용
 - 나)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 등 지자체 운영 프로그램 활용
 - 다) 특수교육교원 양성 대학 연계 자원봉사 인력 활용
 - 라)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안내 홍보
 - 4) 장애영아 순회교육 지원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 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지원 범위 및 대상자 실태 파악

- 2) 순회학급 확대(일반학교 11학급, 시설파견학급 4학급, 병원파견학급 4학급)
- 3) 순회교육 대상 학생 선정·지원 확대
- 4) 순회교육 담당교사 연수 강화
- 5) 낮병동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파견학급 운영(건양대병원 2학급, 대전보람 병원 1학급, 대전웰니스병원 1학급)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2) 중동·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강화

라.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지원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 자유학기제(3교), 자유학년제(2교)
 - 나) 자유학기제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 지원 강화
 - 가) 교과협의회, 교사연구회, 학습공동체 등 자유학기제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나) 담당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원 연수 실시
 - 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자료 개발 및 보급
- 3) 지역사회 중심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마.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1)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선택 다양화를 위한 진로 정보 제공
- 3) 대전전환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 체제 구축
- 4)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특수학교 2교)
- 5)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고등학교 1교)
- 6)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5개 특수학교, 30학급)
- 7)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진로·직 업교육 강화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1) 특수교육실무원 운영·관리 강화

- 2) 특수교육실무원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실무원 역량 강화 원격 및 직무연수 실시
- 3) 사회복무요원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활용 내실화

사.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학교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

- 1) 유치원 방과후 학급 운영
- 2) 특수학교 방과후 학급 운영
- 3)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4)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인별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
- 5) 방학프로그램(계절학교) 운영

4. 소통과 참여의 장애공감문화 확산

-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교육
 - 가) 유·초·중·고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나)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2)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홍보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1)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3) 일반학생에게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연 2회 의무 실시
- 4) 일반학생 및 장애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 5)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가·피해자일 경우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 참여
- 6)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등·학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2) 재난대응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 3)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라.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 특수학교(급)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문화·예술활동 체험 기회제공
-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특수학교(급)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PAPS-D) 운영 지원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및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 운영

Ⅲ 향후 추진 계획

1. 특수교육 기회 확대

- 가. 특수학교 신설 1교 추진
 - 1) 특수학교 1교(지적장애·지체장애)
- 나.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거주지 분포, 학급당 학생 과밀 등을 고려하여 증설 및 미설치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 가.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의 효율성 제고
- 나. 장애학생 인권교육 지원 강화
- 다. 일반학교 감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 라.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진로·직업교육 중점학교 중심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마.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이전을 통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

3. 특수교육 중심 네트워크 구축

- 가. 시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의체 마련
- 나. 장애학생 진로 관련 지역사회 협의체 마련
- 다.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진로체험처 발굴 및 구축
- 라. 학부모 및 장애인단체와의 협의체 마련

울산광역시교육청

■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슬로건

모두가 정성을 다하는 울산 특수교육

2. 교육목표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3. 추진방향

-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다.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4. 중점추진과제

- 가.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및 안전 강화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Ⅲ 2018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1) 만 3세 이상 특수교육대상유아 대상 취학 절차 등 의무교육 적극 홍보
 - 2)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과정 운영
 - 가) 연령별(만 3~5세) 누리과정을 근간으로 운영
 -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 3)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지원: 29명

- 나) 치료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 413명
- 다) 특수교육실무사 및 보조인력 배치:실무사 271명, 복무요원 248명
- 라) 의무교육 실시 안내 및 홍보:5회
- 마) 의무교육 지원 상담 담당자 지정 배치(특수센터 운영부장)
- 4)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교원 및 관리자 전문성 신장

구분	시기	참석인원		
학교(유치원) 관리자	2018. 4월	255명		
통합학급 담임교사	2018. 4월, 5월.	407명		
특수교사	2018. 4월, 5월.	229명		
학부모	2018. 3월, 6월.	625명		
어린이집 소속 직원	2018. 4월, 5월.	50명		

- 5)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 2개 유치원
- 6)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워 및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간의 정보교육 및 의견교환 등 협업체계 구축
 - 나)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필수 프로그램 운영
 - 입학 전 학교 견학(체험) 프로그램: 학교 시설 이용 체험
 - 입학 초기 학교적응 지원 프로그램: 장애유형 및 특성고려
 - 입학 전후 초등학교 입학적응 관련 학부모 교육 : 간담회 등 집합교육
- 7)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공립 월 110천원, 사립 월 380천원 이내

나.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

- 1)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 파악
 - 가) 구청, 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부모 동의하에 실태 파악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아 수 파악
 - 다) 특수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을 통한 무상교육 홍보
- 2) 특수교육대상영아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 가) 강북·남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영아 담당 인력 배치
 - 나) 장애영아의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 다)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실 운영 및 장애영아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 : 19명
- 3)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 가) 일반 교원 및 관련 업무 종사자, 영아 담당자 연수 및 부모교육 실시
 - 나) 장애영아교육에 대한 홍보 실시 : 장애영유아 리플렛 200부 제작 및 홍보

- 다) 유관기관 연계 및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한 아동실태파악 및 홍보
- 4) 특수교육대상영아 조기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지원 체제 마련
- 5)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 연구회 운영

다.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특수학급 신·증설: 19학급(유 4. 초등 8. 중 4. 고 1. 특 2)
- 2) 특수학급 설치 현황 : 설치율 59.7%

유ᅔ	히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22	24	93	131	44	55	31	46	190	256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1학기)
 - 가)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고등 4명)
 - 나)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영아 5명, 유치원 18명, 초등 11명, 중등 2명)
 - 다)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영아 14명, 유치원 6명, 초등 4명, 중등 1명)
 - 라) 총 65명(영아 19명, 유치원 24명, 초등 15명, 중등 3명, 고등 4명) 순회교 육 지원
- 2)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순회교사 운영

배치		자격 구분	소속	
□ ∏ ^	유치원	초등	중등	工气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_	_	2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3	4	2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1	3	1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마.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원격수업(화상강의 포함) 이용 학생 지원 : 총 이용자 44명(4.1현재)
- 2) 병원학교 운영

병원학교명	위치		인력 현황					
	TI시	교사	센터순회교사	특수교육실무원	이용학생			
다솜병원학교 (설치년도 : 2007년)	울산대학병원 내	1명	1명	1명	22명			

- 3) 건강장애학생 통합학급 담임교사 및 관리자 연수 실시 : 2018. 4, 16,(51명)
- 4) 학년말 병원학교 행사 실시 : 다솜병원학교 학예발표회 및 송년의 밤

바.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 2)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3)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 개선을 위한 실태점검 및 예산확보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 지원시 안내 및 점검

사.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1) 통학차량 이용: 학생 513명

2) 통학비 지원 : 특수학교 427명, 일반학교 525명

아.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강화

1) 특수교육보조인력 현황

(4.1 기준)

구분	특수교육실무원	특수교 육통 학실무원	사회복무요원		
2018년	271	25	227		

2)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실시

가) 특수교육실무사

- (1) 신규 채용자: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 (2) 직무교육 실시 : 연 2회 이상 실시
- (3) 원격연수 지원: 국립특수교육원 위탁원격연수
- (4)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실무사 : 특수학교 자체 연수(연 2회) 실시

나) 사회복무요워

- (1) 신규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 : 연 2회 이상
- (2) 기존 사회복무요원 : 연 2회 이상

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 1)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 가) 개설 강좌 참여: 204명
 - 나) 개인교육비 지원 : 1.698명(1인 월 100.000원 이내 실비 지급)
 - 다) 1인 월 100,000원 이내 실비 지급
- 2)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 운영 지원 : 공립 56학급 84,000천원, 사립 18학급 27.000천원
- 3) 계절학교 지원 : 설명회 학생 간식비 및 장애학생활동 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차.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과정 운영

- 1) 특수학교 및 유치원: 6학급 24명
- 2) 특수학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3개교 73.142천원

카,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1) 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 공립 2교, 총 4실 지원(각 15,000천원)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 1) 2019학년도 진학 희망학생 진단·평가 실시: 7~8월 진단평가 실시
 - 2)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3) 정확한 진단평가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연수 강화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1)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2)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 운영 지원
- 3) 영아 교육과정 및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교육감 승인 후 적용
- 4)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강화
- 5)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발달단계·장애특성으로 고려한 교수·학습자료 지원
- 6)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및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7)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개별화교육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
- 8) 특수교육자료개발팀 구성을 통한 특수교육 도움 자료 개발·보급

다. 개별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및 개별교육계획서 작성 관련 현황 점검
 - 나)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개별화교육 지원 및 관리
 - 다) 개별화교육계획 및 지원팀 구성에 대한 연수·컨설팅 실시
 - 라) 개별화교육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실시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설치 현황

특수교육지원센터명	상담전화	역할	특성화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255-6602	특수학교, 고등학교 특수교육 지원	인권교육 시각장애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219-5612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지원	지체장애 청각장애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227-6604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지원	자유학기제 영·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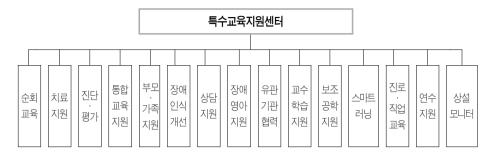
2) 시설 현황

구분	사무실	진단 평가실	치료실		직업교육실		연수실	학부모실	조기	기타	계
下世	시다길		센터내	거점	센터내	거점	건구걸	4772	교육실	기나	/1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	1			6		2			6	16
울산강북특수 교육지원센터	1	1		12		2	1	1		1	19
울산강남특수 교육지원센터	1	1	5	3	2		1	1	1		15

3) 인력 배치

			순회	기간제	임상	직업	치료	사	행정		
구분	장학관	장학사	교사	교사	심리사	재활사	치료 지원	심리 지원	일반	기타	계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	1	2	0	1	3	6		1	1	16
울산강 북특수 교육지원센터		1	6	3			16	3		1	30
울산강남특수 교육지원센터		1	5	3			12	2		1	24
계	1	3	13	6	1	3	39)	1	3	70

4) 기능



마. 가족지원 및 보조공학기 지원

- 1) 가족지원: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 수시 운영
 - 가) 부모상담 WITH 프로그램 운영
 - 4월'12월, 1'4기 신청 접수 및 개인별 8회 실시, 매회 50분 지원
 - 1기 11명, 2기 9명 상담 실시
 - 부모상담 플러스(1⁴7): 1기 11명, 2기 5명 실시 중
 - 나) 가족 상담지원
 - 학부모: 4월 10월, 5교 7명(개별상담으로 주 1회, 50분, 총 10회기 운영)
 - 위기가족지원 상담: 4월 12월, 6교 8명(개별상담 주 1회, 50분, 총 10회 유영)
- 2)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의 대여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기기 구입 및 대여

기기명	강북·남 센터보유 수량	시센터 보유 수량
보조공학기기(시각, 지체, 청각, 의사소통장애)	81종 409개	34종 198개
진단·평가 도구	9개 영역 105종	37종 44개
교재·교구	1,351종 1,573개	276종 355개
도서	20종 3,785권	18종 8,657권
직업훈련교구	4종 29개	20종 60개
성교육자료	10종 63개	2종 2개
장애이해교육자료	12종 168개	12종 182개
신체 운동 활동자료	54종 386개	54종 386개
컴퓨터활용 CD자료	23종 716개	21종 691개

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1) 치료사 현황

기관	기관	울산강북	특수학교					
구분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물건성국 특수교육 지원센터	울산강남 특수교육 지원센터	울산 행복 학교	울산 혜인 학교	태연 학교	메아리 학교	계
치료사	6	19	14	4	5	4	4	56

2) 치료지원 및 관련 서비스실(거점치료실 포함) 현황

구분	운동 재활실	일상생활 재활실	언어 재활실	청능센터	감각, 운동 훈련실	상담실	계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센터	-	-	-	-	-	1	1
울산강북특수교육센터	3	6	12	_	_	4	25
울산강남특수교육센터	1	2	2	_	1	1	7
울산혜인학교	1	3	3	_	1	-	8
울산행복학교	1	2	2	_	1	-	6
태 연 학 교	1	1	2	_	1	-	5
메아리학교	1	-	2	1	_	-	4
계	8	14	23	1	4	6	56

3) 치료 지원 학생 수

		학교 ㅊ	료지원		병·의원	치료지원	
구분	운동재활	일상생활 재활	언어재활	심리상담	물리치료	작업치료	계
유치원	6	31	39	8	13	2	99
초등학교	42	106	153	135	24	30	490
중학교	28	36	27	88	14	5	198
고등학교	22	25	81	35	14	4	181

사.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 1)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 연수 이수 강화 : 월별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안내
- 2) 특수교육 교원의 직업교육 실기연수 : (시센터 50명)
- 3) 특수교원대상 생활지도 직무연수: 50명
- 4) 학교별 직원 연수 시 특수교육 관련 연수 : 학기별 1회 이상

5)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증치: 4명

아. 특수교육 장학활동 지원

- 1) 특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 고등학교 컨설팅 장학 지원 : 연 30회
- 2) 특수학교 유치원 컨설팅 지원 : 연 6회(학기 3회)
- 3) 초·중학교 컨설팅 장학 지원: 강남·북 2개 교육지원청 별도 계획 추진
- 4) 특수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협의회(2018. 3.12.)
 - 고등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역량강화협의회(연 2회)

구분	울산광역시교육청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계
유치원	-	6호	8호	14
초등학교	-	6회	56회	62
중학교	-	6회	8호	14
고등학교	연 2회	-	-	2
특수학교	연 2회	-	-	2

자.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1) 장애학생의 정보화 교육 장소 이용(여가문화체험실, 교육정보실 운영)
 -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내 1개소 2실
 - 활용: 워드프로세서, 정보검색, 장애학생 e스포츠 활동, 현장학습 등
- 2) 홈페이지 배너로 장애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홍보(에듀에이블. 이얍)
- 3)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을 위한 태블릿 PC 지원
- 4) 2018.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 울산예선 실시

3. 진로 직업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직업능력평가
 - 대상 : 고등학교 1학년 특수교육대상자. 20교 46명
 - 내용: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직업적 소양. 직업기능평가 등
 - 2)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 지원
 - 대상 : 중. 고 특수학급 (247명, 123명)
 - 내용: 제과제빵 등 현장중심 직업교육 과목
 - 방법: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실. 거점학교 직업교육실 활용

- 나) 직업교육 및 현장체험활동 지원
 - 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급(46학급), 특수학교 전공과(24학급)
 - 내용 : 현장 체험 중심 직업교육 강화
 - 지원액 : 급당 2.000천원 지원
- 다)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특별실 대관 운영
 - 대상 : 울산 울주군 특수학급. 6교 9학급 41명
 - 내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일상생활실, 여가체험실 등 시설 활용 프로 그램 운영
- 라) 전공과 교사 연구회 운영(1 연구회, 1,000천원)
- 3)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 울산혜인학교(2011년 선정) 학교기업 설치·운영
 - 특수학교(급)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및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업체)와의 협약, 연계 운영, 민간 기업 유치 등 다양한 형태 운영
- 4) 협업을 통한 장애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 가) 특수교육-연계형 복지일자리 사업 운영
 - 대상 : 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 2교 12명
 - 내용 : 바리스타, 계산원, 매장지원 등 서비스업 현장실습
 - 나)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장 운영(고등학교과정 이상)
 - 대상 :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자, 12명
 - 내용 : 일반사업장 일자리 현장실습
 - 다) 고등학교과정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지원고용 실시 등 직업 교육 연계 강화
- 5) 장애학생 취업으로의 연계 강화
 - 가) 지원고용 사업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실질적 취업 기회 확대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재활사의 업체 개발 내실화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사후지도 강화
- 6) 장애극복활동프로그램 운영
 - 가)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장애극복프로그램 운영
 - 나) 프로그램 내용: 현장학습, 문화유적 탐방, 환경보존 활동, 내고장 걷기, 타지역 견학, 단체활동 등 장애극복프로그램 운영
 - 다) 특수학교 교당 4.000천원 지원

- 7)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 취업희망교실
 - 대상 : 고 1. 2. 3 학생 및 학부모 44명
 - 내용: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직업재활 시설 견학 및 연수
 - 나) 중학교 진로직업교육: 4개 거점직업실 운영 및 41개교 지원
 - 다) 학부모 진로·직업 교육 집합 연수: 1회. 4월. 59명
 - 라) 실습생 사전훈련(이미지메이킹 포함): 17명
- 8) 직업교육 자료 활용: 「현장 적용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활용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및 확대 운영

- 1)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의 안정적 추진 기반 구축 및 운영 확대
 - 가) 자유학기제 3교, 자유학년제 1교 운영
 -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컨설팅단' 구성·운영
 - 다)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으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강남 센터
- 2)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 가) 교사연구회(1 연구회, 1,000천원) 등 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 지원 강화
 - 나) 자유학기 활동(주제선택) 운영 프로그램 보급
- 3) 진로체험자원 확충 및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 진로체험처 '꿈길' 등록 안 내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1) 방송통신고등학교 장애학생 지원: 12명
- 2) 문자해득 등 교육비 지원: 2개 기관 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장애학생 성교육 강화를 통한 성폭력 피해 예방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3개 특수센터, 다양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활동 실시
 -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현장지원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피해 최소화
 - 4) 울산 장애학생 인권보호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나.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특수학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
- 2)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한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강화
- 3) 재난대응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실시가) 장애유형 및 정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
 - 나) 재난상황 대비 장애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대피계획 실시다) 재난대응 조력자 지정제도(Buddy System) 운영
- 4)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가)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영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예방·관리 철저
 - 나)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 시설 개선, 재난위험 시설 해소
 - 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들의 건강 피해 예방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의 스포츠강사 직무연수(국립특수교육원) 지원
- 2) 특수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전면 실시 및 운영 강화
- 3) 문화예술활동 지원
 - 가)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 초 5. 중 2. 고 1. 특수학교 1교
 - 나) 미술작품 전시회: 강북·남특수교육지원센터별 1회씩 실시
- 4) 전 특수학교 교기 운영으로 체육활동 강화

학교명	울산혜인학교	울산행복학교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교기 종목	볼링	역도	육상	수영, 역도, 스키

5)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특수학교 4교, 35,000천원

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연 2회 이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2)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시센터 4교)
- 3) 외부강사 초빙 장애인식개선 연수 : 4월, 유·초·중·고 관리자 및 업무담당교사
- 4) 장애인식개선 행사 실시: 장애이해사진전, 실천사례 공모전, 음악회 등
- 5) 유관기관 협력 체제 구축:시각장애인복지관 암흑카페 장애체험행사 참여

마.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일반학생 및 일반교사의 장애인식·장애학생 인권보호·특수교육 이해 증진을 위해 연 2회 이상 학생교육·직원연수 실시
- 2) 통합교육협의회* 운영 : 관리자, 특수학급 담당 교사, 통합학급 담당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최소 학기별 1회 이상 운영
- 3)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른 설비·비품을 우선 확보
- 4) 특수학급 운영비 편성·집행
 - 유치원 : 400만원 이상
 - 초·중·고등학교: 500만원 이상

바. 통합교육 지원 강화

-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정보 공유. 협력교수 등 협업 강화
 - 순회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관련 서비스 및 교재·교구비 등 지원 확대
 -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교사와 학기별 1회 이상 협의 실시
 - 통합학급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적정 수 배치
- 2) 통합학급 운영·관리 역량 강화
 - 통합학급 관리자(교장) 연 3시간 이상 집합연수 실시(4월, 10월)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이수
 -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통합교육 실시 학교 관리자, 교원의 국립특수교육원 연수 참여(11명)강남
- 3) 지역사회 중심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 4) 통합학급 담임교사 처우 개선 및 지원 강화
- 5)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115교 556급, 급당 150천원) 강남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1) 의무교육 지원 및 홍보 강화
 - 2) 특수교육지원센터 강사 순회교육 강화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나.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

- 1) 지원방식 : 1시간(40분 수업, 20분 상담)씩 주 2회 수업, 센터 내방 또는 가정 방문
- 2)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수립 및 시행
- 3) 부모상담 및 형제·자매 지원(상담), 교재교구 대여 등

다. 특수교육기과 확충

-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구분	2016	2017	2018	2019
특수학급 수	233	246	256	265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강화
- 2) 순회교육 담당교사의 교수학습 및 상담 전문성 강화

마. 정당한 교육퍾의 제공 강화

-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2019년 예산 확보

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1)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신청·지원 절차 준수
- 2) 특수교육대상자 차량이용 등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사,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장애학생 지원 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 : 학기별 1회 실시
- 2) 특수교육 보조인력 근무 여건 개선 :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
- 3)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화(성교육 및 안전교육, 장애학생 지원 교육 등) : 신규 사회복부요원 및 기존 대상 직무교육 3회 실시

아.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 1) 연중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 2)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 운영: 4교, 여름 및 겨울방학 운영비 지원
- 3) 달팽이학교(여름 및 겨울 방학학교) : 사회복무요원 110명 내외 지원
- 4) 특수교육대상자 종일반 운영에 따른 학생 안전 철저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 1) 2019학년도 진학 희망학생 진단·평가 실시: 7~8월 진단평가 실시
 - 2)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3) 정확한 진단평가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연수 강화
-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
- 다. 개별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 1)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활성화
 - 2)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의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라. 가족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1)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의 대여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기기 구입 및 대여
 - 2) 가족지원: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 수시 운영
- 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 치료사 활용 및 병·의원을 통한 치료지원비 지원
- 바 특수교육대상자 심리상담 지원
 - 1인 10회기 지원,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개별 또는 그룹지원
- 사.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 1) 지구별 역량강화 협의회 운영(7월, 12월)
 - 2) 특수교육 교원의 직업교육 실시연수(3기): 7월, 21명
 - 3) 국립특수교육원 위탁 원격연수 및 직무연수
- 아. 특수교육 장학활동 지원
 - 1) 특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 고등학교 컨설팅 장학 지원 : 연 32회
 - 2) 특수학교 유치원 컨설팅 지원 : 연 6회(학기 3회)
 - 3) 초·중학교 컨설팅 장학 지원: 강남·북 2개 교육지원청 별도 계획 추진
 - 4) 특수학교(급) 자율장학 지원 활성화 : 단위학교 자체계획 및 추진
- 자.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2018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 울산예선(7월) 실시 및 전국대회(9월) 참가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직업평가를 통한 직업교육의 기초선 제공
 - 2) 중·고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 강화
 - 3) 협업을 통한 장애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 가)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지원고용 실시
 - 나) 특수교육-연계형 복지일자리 사업 연계 : 바리스타 및 공공기관 내 일자리 직무훈련
 - 다) 학부모와 함께 장애인 채용 기업체 현장 견학 연수 실시
 - 라) 장애학생 취업기관 방문 지도를 통한 취업 후 사후관리
 - 4) 진로 및 직업교육 기반 구축 및 직업교육 실무팀 운영
 - 가)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 및 훈련 지원 기관 간 정보 공유체제 구축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 다) 장애학생 취업을 위한 사업체 개발
 - 라) 정보공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연구회 운영 강화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및 확대 운영

- 1)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2)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3)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담당자 워크숍(8월)
- 4) 자유학기제 컨실팅 4회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1)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 및 수험 편의 제공 강화
 - 가)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진학상담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의 진학상담 업무 담당자 역할 강화
- 2)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 가) 학력인정 문자해득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및 방송통신고 활용한 교육서비스 지원
 - 나) 교육청 지정 평생교육 시설에 장애인 참여 확대 및 홍보
 - 다) 유관기관 협력 강화
 - 라) 지역사회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강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장애학생 성교육 강화를 통한 성폭력 피해 예방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3개 특수센터, 다양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활동 실시
-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현장지원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피해 최소화
- 4) 울산 장애학생 인권보호우수사례 발표회 개최(10월)

나.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
- 2)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추진 및 학교별 안전계획 점검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특수학교 교기 운영으로 체육활동 강화
- 2) 1교 1종목, 1인 1운동 시범학교 운영
- 3) 특수학급 학생의 체육기능 강화 교육
- 4)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지원 강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동아리, 미술대회 및 전시회

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장애인식개선 예술행사 개최
- 2) 학생 작품 전시회
- 3) 제4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 참가(인천, 9월)

마.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학교 경영평가를 통한 특수학교 교육의 질 제고
- 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구·설비 확충 지원

바 통합교육 지원 강화

- 1) 통합교육 '정다운학교' 컨설팅 지원
- 2) 통합교육지원단 맞춤형 1대1 지원 및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 3) 지역사회 중심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개별 맞춤형 지원
- 4)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특수교육의 추진방향

가. 비전: 꿈 찾고 행복 키우는 세종 특수교육

나. 방향

- 1) 맞춤형 교육을 통한 특수교육지원 확대
- 2)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역량 강화

2. 세부 과제

-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다.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2018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특수학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18년 특수학급 13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 ※ 유치원 2. 초등학교 8학급, 중학교 3학급 증설
 - 2) 제2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설립 계획 추진
 - 세종시 관내 특수학교 추가 설립 타당성 연구
 - ※ 정책연구('18, 4, 2~6, 30) 결과를 통한 구체적인 특수학교 설립계획 수립 예정임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 특수학급에 정교사 배치 법정 교원 100% 확보
 -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1교)

-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1교)
 - 교사 간 정보와 자료 공유, 연구 등 특수교사 연구회 6팀 운영
 - ※ 전체 특수교사 143명 중 127명 연구회 활동 중
-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세종시 관내 멘토-멘티 제도 활성화를 통한 저경력 교사 지원
 - 연 1회 이상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기회 마련
 - 우수교사에 대한 해외탐방 기회 제공(1팀 4명)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등 보조공학 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
 - ※ 학교 요청 시 보조공학기기 컨설팅을 실시 후 지원
 -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특수학교차량안전요원)
 - * '18년 세종누리학교는 총 4대의 정규차량 확보 및 운영 ※ 세종누리학교 운전원과 보조인력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 연수 실시
- 2) 각 급 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특수학교 '우수' 등급 획득)
 -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 2017년 세종 각 급 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률 100%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통합교육지원체제 강화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통합학급 정원 내 포함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통합교육거점유치원 지정운영)
 - ※ 벨트형 현장학습, 각종 연수, 통합교육 교수·학습 연구 등 2개 유치원 선정 운영

-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장애유형별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확대 운영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연수 시 통합교육관련 내용 포함
 - ※ 일반학교 관리자(교장)는 집합연수(워크숍) 3시간 이상 실시(18. 7. 5~7. 6.)
 -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권장
-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통합학급 담당교원 전보 시 인센티브 제공(전보가산점 부여)
 - 통합학급 교원의 장애공감문화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연수 실시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1)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2018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마련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내실화 지원
- 4)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 특수학급 미설치교, 재택교육대상자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6명 지원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방과후 지원 등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도 전문성 증진 연수 실시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 ※ 중, 고 특수학급 학생 6명 이상인 경우 특수교사 1명 추가 배치

- 3) 행동중재 지원단 구성·운영
 -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중재가 필요한 경우 행동중재 전문가, 관련 교수, 현장 교사 등으로 행동 중재 지원단 구성·운영
 - 학교에서 요청 시 행동중재지원단 지원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 1)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관리 강화
 - 특수교육실무사 필요한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지원 * 72명 교육공무직으로 운영
 - 특수교육실무사 업무 명확화(특수교육운영계획 연수 시 전달)
 - 특수교육실무사 순환근무제 확대 추진(교육공무직 인사원칙 반영)
- 2) 특수교육실무사 역량
 -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의무 실시강화 * 신규 채용된 보조인력은 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직무연수 실시
 - 특수교육실무사 직무 향상을 위해 연 2회 특수교육 관련 직무교육 실시 ※ 상반기 `18. 5. 11일 실시, 하반기 11월 예정
- 3)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 사회복무요원 5명 세종누리학교, 1명 도담초 배치 운영
 - 자원봉사자 인력풀 운영하여 지원인력 확대 노력

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내실화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를 위한 안내
 - 학교별 개별화지원 팀 협의회 IEP 나이스 등재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시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중재방안 포함 작성
 - 순회교육대상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가 참여한 개별화지원팀 구성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사조직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활용 확대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지원 제공
 - 건장장애 및 요보호대상자 13명 원격수업지원
 - ※ 초등학교 4명 충남 꿈빛나래학교 지원, 중·고 9명 한국방송중고등학교 원격수업지원

- 2)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
 -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1교)
 -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 ※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 ※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전문직 1명. 순회교사 6명 배치
-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 기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행동중재 지원단',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계획 수립·시행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실시
 - 언어재활사 5명에 대한 자체 연수계획 수립·시행
- 3) 기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세종YWCA, 세종장애인부모회, 세종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조
 - ※ 장애학생 성인권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장애인권 교육 등 협업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동아리 지원
 - ※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연 3회 실시 예정)
 - ※ 문화예술동이리 발굴 및 지원(3개 동아리 지원)
-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특수학교 운동부 3팀 지원(역도, 육상, 슐런)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수영교실 운영(매주 2회 22명 참가)
 - 세종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한 선수 훈련반 운영
-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
 - ※ 방학 중 뉴스포츠 관련 연수 실시 예정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지원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체계 확립하고, 교원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교원연수(연 2회), 학부모홍보연수(연 2회)실시
 - ※ '17~'18년 세종누리학교 자유학기제 연구시범학교 운영
 -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교과협의회, 교사연구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구성 지원
 - 3)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양질의 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 4) 교육청 단위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실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 자유학기 활동 운영 등 지원
 - ※ 연구학교 컨설팅 실시(2018. 4. 27.)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 중학교 과정에 진로인식 및 탐색 프로그램 적용·확대
 -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직업교육을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 특수학급 진로직업교육비(중·고 1,000천원, 전공과 3,000천원) 학교기본운영비에 반영
 -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진로· 직업교육 역량 강화(진로직업교육연구회 1팀 운영)
-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지역사회중심 산업체 및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의 활성화
 -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특수학교 1교 관내 특수학급 포함)
- 3)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
 - 학교·공공기관 내 일자리 참여 확대('17년 5명 → 18년 9명)

- 기관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발굴 및 참여 확대
 - ※ 2018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졸업 5명 취업(21.7%), 전공과 졸업 7명 취업 (87.5%)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계 구축

- 가.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일반학교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유치원 9개원, 초등학교 41교, 중·고 28교
 - 2) 교육청 및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 실시(연 3회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 운영)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유·초 1단. 중·고 1단으로 조직하여 운영
 - 2018. 6월까지 11개교 정기지원 실시
- 2)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유·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 28교 101시간 3,758명 참가
- 3)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특수학급 80학급 586회기 실시
 - 1:1 맞춤형 성인권 보호교육 실시(10명)
- 4) 문제행동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행동중재지원단 운영을 통해 행동중재 방법 지원※ 장애학생 행동중재지원단 17명 구성 운영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등 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 장애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 추진(4, 16.세종누리학교)
 - ─ 학생 대상 재난안전교육 실시(4, 23~5, 4,)
 - 행정안전부 및 유관기관 참여 장애학생 어린이재난훈련 실시(5. 17.)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세종시청과 연계하여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파악
 - 장애영아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관련 지침 일반학교, 특수교육기관 등에 안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학생 1인당 월 100,000원 방과후 바우처 지원(538,400천원)
- 2) 특수학교(급) 돌봄 지원
 - 특수학교 및 유치원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맞벌이, 한부모 가정, 기초 생활수급 가정 등) 중 희망자 우선 지원(127,740천원)
- 3) 방학프로그램 운영(토요 프로그램 포함)
 -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단위학교 방학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방학프로그램 운영(58,200천원)
 - ※ 18. 1. 15~2. 9. 유아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3반, 15명 참여)
 - ※ 18. 1. 15~2. 9, 문화예술 4강좌, 체육 3강좌, 직업체험 1강좌, 총 8강좌 63명 참여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 2)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특수학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18. 8월 정기진단평가 이후 특수학급 신증설
 - 2) 제2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설립계획 마련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 특수학급에 정교사 배치 법정 교원 100% 확보 유지
-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방학을 이용한 연구회 중심 교사연수 추진(진로직업교육, 수업탐구동아리)
-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교육과정 워크숍과 연계한 특수교사 힐링연수 추진(10월 예정)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지원 수요조사 후 지원
 - 보조공학기기 컨설팅 후 보조공학기기 제공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통합교육지원체제 강화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합학급 정원 내 포함(유치원 및 중·고 배정시 정원 산정)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통합교육거점유치원 지정운영)
 -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연수 시 통합교육관련 내용 포함
-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통합학급 교원의 장애공감문화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연수 실시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1)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2019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마련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관련 컨설팅 실시(10월 중)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지원 대상자 지원
 - 특수학급 미설치교, 재택교육대상자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6명 지원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방과후 지원 등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 3) 행동중재 지원단 구성·운영
 -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중재가 필요한 경우 행동중재 전문가, 관련 교수, 현장 교사 등으로 행동 중재 지원단 구성·운영
 - 학교에서 요청 한 11명에 대한 행동중재지원단 지원

마.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 1)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관리 강화
 - 특수교육실무사 필요한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지원 * 18.8월 특수교육실무사 3명 추가 채용 예정
- 2) 특수교육실무사 역량
 -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의무 실시강화 ** 신규 채용된 보조인력은 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직무연수 실시
 - 하반기 특수교육실무사 직무교육 실시(11월 중)

바.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내실화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를 위한 안내
 - 학교별. 권역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컨설팅 실시(9월~10월)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시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중재방안 포함 작성
 - 순회교육대상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가 참여한 개별화지원팀 구성

사.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지원 제공
- 2)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18. 7월 실시예정)

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전문직 1명, 순회교사 6명 배치

-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정기 진단 평가 실시('18, 8월)
 - 언어재활사 5명에 대한 교육공무직 채용방식 결정
- 3) 기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세종YWCA, 세종장애인부모회, 세종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10월 예정)

자.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세종 학생축제와 연계한 동아리 발표회 실시(11월)
-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세종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10월 예정)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발표(11월 예정)
 -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3) 교육청 단위 컨설팅 실시(9월 예정)
-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8월 중 실시예정)
 -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진로직업교육연구회 1팀 운영)
 -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졸업생 직업유치 및 취업현황 조사(10월)
 - 3)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
 - 학교·공공기관 내 일자리 홍보(19년도 참가 희망교 현황 조사)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계 구축

- 가.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2교)
 - 2) 교육청 및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 실시 (11월 예정)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운영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유·초 1단, 중·고 1단으로 조직하여 운영
 - 매월 2~4개교 정기지원 실시. 인권지원단 협의회 실시(11월)
- 2)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유·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 3)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1:1 맞춤형 성인권 보호교육 실시(10명)
- 4) 문제행동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행동중재지원단 운영을 통해 행동중재 방법 지원

다.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세종시청과 연계하여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파악
 - 장애영아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 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 평가 실시(8월 예정)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9월, 11월)
- 3)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대상 입학적응프로그램 운영(12월)

라.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 2학기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8월)
- 2) 특수학교(급) 돌봄 지원
 - 특수학교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T/F 운영
- 3) 방학프로그램 운영(토요 프로그램 포함)
 -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단위학교 방학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방학프로그램 운영(7월~8월, 유아반 초·중등반 운영)

마.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9월)
- 2) 특수학교(급) 교육과정운영 점검(9월)

경기도교육청

2018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개요

학생중심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추진 목표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역량 강화
-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공교육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중점 추진 과제

- 통합교육 내실화
-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년~2022년)

비 전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목표

-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역량 강화
- ▶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 공교육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
- 특수교육 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확대

추진과제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 지원 내실화
-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구축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장애공감문화 조성
-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배치율 확대
- 원거리 통학 및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 장애특성 및 특정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복합 특수학급 구축 운영
-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임무), 국정과제 51-2(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1)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배치율 확대를 통한 특수학교 교육 수요 충족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교육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 신설

2) 특수교육여건 개선 및 특수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특수학급 신 증설 확대

- 특수학교(급) 운영을 위한 적정시설 확보를 위해 매년 2회(9월, 12월) 특수학교 (급) 신·증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특수교육수요에 맞는 교육시설 확보 노력
-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 해소 및 거주지 인근 배치를 위해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초·중·고)에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3)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 확대 계획 수립

전국평균(28.9%) 수준의 특수학교 배치율 확대
 (2017년) 23.2% → (2019년) 25% → (2021년) 26% → (2023년) 29%

※ 2018년 이후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 확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특수학교	(가칭)양주특수학교	-	(가칭)용인특수학교 (가칭)의왕특수학교	
특수학급	2,730 (30학급 증가)	2,760 (30학급 증가)	2,790 (30학급 증가)	

4) 장애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특수학급 설립

● 「복합 특수학급」 시범 운영: 고양 용정초(1학급)

▶ 운영형태 :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확장형 특수학급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추진목적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교육 환경 조성
-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제고
-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지질향상), 동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지질향상),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대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 백서:정책과제 (5-3)

1) 교원인사 관리

-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
- 특수학교(급) 교사 적정 배치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환경 조성

2)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 교원 자격연수 추진
 - 유·초·중등 특수교사 1정 자격연수, 특수학교(중등) 재활복지교사 부전공 연수
- 교원 직무연수 추진
 - 통합학급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 연중 3.500여명
 - 특수교사 장애유형별 교수 능력 신장 연수
 - 특수교육대상학생 생활주기별·배치유형별 교수 능력 신장 연수
 - 특수학교(급) 학급 운영 역량 강화 연수
 - 기간제교사, 저경력교사, 장기휴직 후 복직교사 지원을 위한 멘토링
 - → 교육지원청별 실시
 - 특수교육 교원의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 연수 강화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 특수학급에 가급적 경력 교사를 배치하고, 신규 교사 배치 시 경력 교사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멘토교사제 활용

3)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국단위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2개 이상 설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500명
 이상 배치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 배치를 위한 노력

4)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근무교원의 처우개선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근무교원의 승진가산점 부여기준 개선 적용(3년 이상 근무자에게 가산점 부여항목 삭제, 승진가삼점 상향 조정)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의 전보우대

5)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교육과정 및 수업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실천, 학생생활, 진로직업교육, 특수교육 공동체학교 등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연구 과제
 - 주제탐구, 공동연구 및 실천, 연구결과 공유 등 실행학습 중심으로 운영
 - 외부 강사에 의한 강의는 가급적 1/3이내로 구성, 교내 교원 연구활동 중심
 - 단위학교 자율장학 계획과 연계 운영
 - 단위학교 내 최소 교원 3인 이상, 과정, 주제 단위로 연구 모임 구성 권장
 - − 연 1회 신청. 2018. 3. 26.(월)~12. 14.(금) 이내/15시간 이상 60시간 이내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로 교육권 보장 및 학력 신장
-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자가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평가조정 적용
 - 특수교육대상자 학력 평가 및 평가조정 지원을 위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역할 강화

2)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등 보조공학기기 대여
- 특수교육대상자 및 담당교사가 보조공학기기를 교수·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활용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추진목적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의 유아 통합교육 여건 개선
-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국정과제 51(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권장
 -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 및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습장에 학생이 조기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다양화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 확대
 -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학 등의 통합교육 지원 인력풀 구축 및 협력체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역의 대학생 멘토 연계 등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운영 및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을 위한 지역 기반 정보지원 시스템 운영
-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시각장애(수원), 청각장애(용인), 지체중복장애(성남) 특성화 거점지원센터 확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특수학교, 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등)

3) 특수 일반교사 협력 강화

-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 협력수업 등 다양한 협력 모형 개발·우영 및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보급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추진목적

- 일반학교 교장·교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성과 제고
- ※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1) 일반학교 교장 교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교육지원청별로 학년 초에 통합학급 담임교사 및 교장·교감 대상 특수(통합)교육 워크숍, 연수, 간담회 등 실시
 - 특수(통합)교육 직무연수에 장애 인권보호 관련 내용 포함하여 개설
 - 특수(통합)교육을 주제로 학교 안(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권장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특수교육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실시 권장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통합학급 담당교사 통합교육 연수 안내
 - → 재직기간 중 1회 통합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실시
- 특수교육 직무연수(집합연수, 원격연수) 과정 안내
 -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수 기준 : 연수과정별 연수 이수 시간(15, 30, 45, 60시간)의 누계가 60시간 이상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추진목적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1)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편성·우영
-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유영 지원
-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해당 교과로 편성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편성·유영

3)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내실화 지원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발달단계·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자료 지원

4)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연차 적용되는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자료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현장 교원 워크숍 개최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시기

구분	적용 학년	특수교육 전문교과	
2016학년	유치원		
2017학년	초1-2		
2018학년	초3-4, 중1, 고1	П1	
2019학년	초5-6, 중2, 고2	II2	
2020학년	중3, 고3	П3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및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5) 특수교육 공동체학교 운영

- 목적: 지역사회의 교육적 자원을 활용하고 장애학생의 배움과 삶이 연계된 교육 실현을 위한 특수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
- 장애학생의 삶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배움-체험 연계 교육과정 운영
- 학생의 배움. 삶. 일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
 - 지역별 특수교육 공동연구 및 실천을 통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특수교육 공동체학교 3교 운영 및 컨설팅 지원
 - 특수교육 공동체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특수학교 혁신 자료로 활용

4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추진목적

- 학생참여 및 활동 중심의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혁신
-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설계 지원 강화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 교 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의2(자유학기 활동)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시행 및 확대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보급하고, 다양한 운영 방안 모색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지원 체계 확립하고, 교원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학생중심의 수업 활성화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으로 학생이 즐거운 교실수업 개선
-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단계별 맞춤형 교원 연수 및 특수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3)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양질의 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안전한 체험처 관리 및 체계 확립
 - 「진로체험인증제」 인증기관 확대 및 학교의 체험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 체험활동 사전-운영-사후 단계별 점검을 통해 안전성 제고

5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와 교육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5조(순회교육 등)

1) 순회교육 지원 범위

-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 조정가능
- 순회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및 지원 강화

6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추진목적

-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등 지원의 다양화
-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2조(개별화교육),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1) 중도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심리안정실 등) 구축
-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 등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2) 중도 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진로·직업교육 등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도 전문성 증진 연수 실시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7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운영의 내실화

추진목적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내실화를 통해 특수교육 성과 제고
-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IEP 작성 시 일반교육교원, 학부모 참여 및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 ** 단위 학교별, 학년별 개별화교육지원 관련 부모교육 실시 강화
-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 시 지원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 작성
-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 매 학년 시작일 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 학기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 및 역할 확대
-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관련 연수·컨설팅 장학 강화 및 특수(일반)학급 특수교육대 상자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지원 강화

2)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교육과정 및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 활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사조직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 교육보조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활용 확대

8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추진목적

-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 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도모
-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5조(순회교육 등)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지원 제공

-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을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 건강장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선(先) 교육 지원 가능
-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 활용 안내(http://hoschool.ice.go.kr) 및 홍보 강화
- 보건실, 도서실 등에 건강장애학생 이해 자료를 상시 비치
-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및 교육청별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2)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 ※ 2018년 「학교생활기록 기재 요령」 사항을 반드시 확인
- (학적)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 (출결)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 초등학교는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1일 2시간 이상 위탁교육기관 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 인정
-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 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진로 및 고등 평생교육 지원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직업교육 전문화

추진목적

-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 직무역량 강화 및 진로의 다양화 모색
-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확립으로 학교에서 사회로 안정적인 전화 성과 도모
- ※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제19조(전공과의 설치·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6조(학교기업)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고용지원 등을 위한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등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직업교육 전문기관이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로·직업교육 지원
 - 지역사회 사업체,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제 구축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지원

3)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과성 확대

-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재학생 및 인근 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컨설팅 등 거점학교 역할 수행

4)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

- 학교·공공기관·대학 내 일자리 참여 확대
 - 직무 개발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 대학 및 교육기관 내 장애학생 고용 창출
 - 일자리 참여 기관 담당직원의 역할 확대를 위해 장애이해 교육 실시
- 관계부처(기관)와 연계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으로 장애학생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기회 확대

5)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 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 강화
 - 관계기관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학교기업과 거점학교 현장 점검 및 운영 실적 평가 실시
-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개인별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 성과관리
 - 취업률 외에 다양한 개인별 성과지표를 활용한 성과관리 후 그 결과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에 반영
- 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졸업 후 최소 3년까지 사후 관리 실시
 - 취업자에 대한 적응지도, 상담, 취업유지 여부 확인 등 장기적인 고용 안정 관리

2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육 지원 강화

추진목적

- 장애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살 리는 교육 실현
-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6호,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체육진흥법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등을 거점 교육기관으로 지정
 - 장애학생과의 통합 문화예술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노력
-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장애 학생 문화예술활동 체험 기회 제공 및 문화향유권 확대
 - 문화예술센터, 미술관,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원 확대
 - 장애학생 문화예술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통합체육활성화를 위한 통합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애학생 통합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일반학교 체육교사 연수 강화
- 2018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충북, 2018, 5, 15,~18.) 지원
- 2018 특수교육대상학생 스포츠클럽한마당 지원(2018년 10월중)
- 장애유형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학교 스포츠클럽(토요스포츠클럽, 스포츠 재능반, 패럴림픽 종목 활동 등) 운영 확대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1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추진목적

- 일반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장애이해교육 강화 및 장애인식 개선 홍보·교육 콘텐츠 확산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동법 시행령 제16조(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1) 모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실시
 - 학교교육과정 반영 연간 2시간 이상 확보,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수업, 교내외 봉사활동 등 활용
 - 교육부 주관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 수업 실시 * 특별기획방송: 대한민국 1교시(KBS 라디오), 장애이해교육 드라마(KBS 2TV) 등
 - 장애이해교육 우수사례 및 백일장, 홍보 동영상 공모전 등을 통해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 참여 유도
 - 장애 체험 활동, 관련 행사 참여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활용 ※ 특수학급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유·초·중·고 의무교육 실시
- 각급학교의 특색있는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교육을 위한 지원 마련
 - 장애인식개선·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공모(약 130개교)

2)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교육 실적보고
 - 교육부 : 매년 12월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보건복지부: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입력 제출(http://www.able-edu.or.kr)

3) 특수학교 행사시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권장

- 특수학교 예능발표회 및 체육행사 등에 지역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수학교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장애학생들로 구성된 성남 유니즌오케스트라 공연 사례)
 - 예능발표회 및 진로직업교육 활동 전시회. 바자회 등에 지역사회와 주민 초대 등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추진목적

- 장애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및 유과기관 협력 강화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과 자기보호 능력 신장을 위한 인권 및 성교육 내실화
- ※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제3항,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1조 (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 애학생의 보호)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 ※ 특수교육지원센터장, 장학사, 특수교사 각 1명, 특수학교(급) 교장(감) 1명,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성폭력수사팀장) 등 1명, 장애학생 보호자 1명, 성교육 전문가 1명, 상담 전문가 1명, 기타 법률 전문가, 사회복지사, 장애인권 전문가, 의료 전문가 등
-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생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 매월 1회 이상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등을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실시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내에 장애인권 전문 학생인권옹호관 배치

2) 장애학생 인권교육 성교육 강화

- 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 ※ 국가인권위원회(어린이·청소년인권교실 콘텐츠, 인권문화마당-별별이야기 등) 및 국립특수 교육원 자료 활용

- 비장애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에 대한 교육 실시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수립 권장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20시간 확보)

장애학생 안전 강화

추진목적

-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고취
-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1) 장애학생 등 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 학교 주변 통학로에 장애학생 보호 인력 배치·운영, 장애학생 자기보호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 계획 등 포함
-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환경 개선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 교육현장 특성*을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재난) 안전교육 수시 실시 * 해당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및 정도, 주변환경 등이 고려된 위험요소 등
- 재난상황 대비 장애 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재정비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재난위험 시설 해소 지원
-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들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특수
 학교의 간이체육시설, 옥외체육관 등 설치 지원

4 장애학생 긍정적 행동지원 강화

추진목적

-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및 예방을 통한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
- 장애학생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교사 및 부모의 지도역량 강화
- ※ 특수교육법 제5조 및 제28조,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세부과제 712, 2018 교육부 특수교육 운영계획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긍정적 행동지원 지원체제 구축

- 긍정적 행동지원의 연계성을 위하여 지자체 관련 기관과의 지원 시스템 구축
-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 집단(대학 교수, 상담전문가, 심리치료사 등)의 자문위원 구성으로 전문성 확보
- 지자체, 교육지원청의 통합지원 체제 구축으로 긍정적 행동지원의 효율성 도모

2) 교육지원청별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

- 행동지원 전문가를 포함한 교육지원청별 긍정적 행동지원단 구성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을 통해 특수학교(급)에 행동중재 방법 및 컨설팅 제공
- 특수교사, 일반교사, 부모 등에게 적절한 대처 및 행동중재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상담 제공

3) 학교와 긍정적 행동지원단 협력을 통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 장애학생의 도전행동을 위한 학교 구성원과 교육청 긍정적 행동지원단 협력
-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 여건 마련 및 지원
-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관된 행동중재 실시

5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강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 및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체계를 통해 장애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역 보건소 등 연계 강화
-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파악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
 교육 의무·무상교육 적극 홍보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홍보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이행 철저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
 조의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
 - 취학의무 특수교육대상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명단은 별도 송부(보건복지부 제공)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보건복지부의 무상보육료와 중복지원 불가)
 - ※ 학기 중 무상교육 요청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가능(특수교육법 제28조 1항, 2항,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참조)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강화

-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수행,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심리검사전문가,
 특수교사, 의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장애영역별·학교급별을 고려한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확충 및 활용 지원 강화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특수학교에서 일반 학교 등)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4)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 배치

-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 의무교육 대상 중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취학 및 재취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 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의거 학년 결정
-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경과한 자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에 대해 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교육기회(평생교육 포함) 제공을 위한 방안 강구

6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추진목적

- 전일제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도모
- 나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돌봄 지원 및 학생안전 관리를 통해 학생 관리 및 교육 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6호,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1) 특수교육 방과후교실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9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
- 교내 특수교육 방과후교실, 방과후 자유수강권(꿈e든카드) 운영

2)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 및 교육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늘해랑학교(방학중 계절학교) 운영

- 방학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체험기회 제공
-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위탁기관 운영

강원도교육청

■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강원특수교육 지표

모두가 행복한 특수교육

- 2. 강원특수교육의 기본 방향
 - 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 확대
 - 나. 통합교육 효과성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지원 강화
- 3. 강원특수교육 주요시책 및 구현중점
 -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지원 내실화
 - 다.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2018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 1) 특수학급 신증설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계
2018. 3. 1	2	9	3	3	2	19

- 2) 공립특수학교(가칭 원주특수학교, 동해특수학교) 신설추진 2019. 3. 1.자 개교 예정
- 나.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1) 특수교육 직무연수 개설 확대 및 통합학급 교사 연수 참여
 -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등

- 2) 일반학교 교원 연수 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강화 교육과목 포함 요청
- 3) 국립특수교육원 강원도교육연수원의 일반학교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교감 및 교장 연수과정에 참여 적극 권장(연 60명)
- 4) 특수교육 교원 연수 기회 확대:
 - 특수학교 1급 자격 연수 : 초 3명, 중 23명 총 26명(여름과정) : 유 4명, 초 6명 총 10명(겨울과정)

다. 각급학교 장애인 정단한 펌의제공 의무 철저

- 1) 각급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 모든 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산 확보
-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검
 - 편의시설 관련 규정 안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 각급학교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 마련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내실화

- 가.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일반학교 교원 통합교육 역량강화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정다운 학교 2개 운영 : 삼척정라초등학교, 원주버들중학교
 -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을 위한 통합학급운영비 지원
 - 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관리자 대상 특수교육 직무연수(연 1회, 10월 예정, 400명)
 - 통합학급 담임교사 대상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 : 7~8월 예정, 500명)

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 개선

- 1) 특수학교 운영 개선 : 학교시설개발을 통한 지역주민과 장애인의 여가활동 지원, 특수교육관련보조원 활용 및 관리 강화,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확대
- 2) 특수학급 운영 개선 : 특수교육이해증진을 위한 장애이해교육실시, 특수교육 관련 보조원 활용 및 관리 강화

다. 통합교육 지원 강화 및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 2) 통합학급운영비 지원 : 급당 140천원, 총 1.343학급 지원

- 3) 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관리자 통합학급 운영·관리 역량 강화
- 4) 일반학교 시·청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5)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확대
- 6)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 공유. 협력교수 등 협업 강화
- 7) 교육지원청별 학년 초 통합학급 담당교사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워크샵 실시
- 8)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라.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1) 강원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지침에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 교육 과정 지침 상세화 및 관련 교육과정 개발 지원
- 2)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운영(7개 특수학교), 직업중점학교 교육과정 운영(1개)
- 3)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수 및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강화 도모
 - 교육지원청 : 관내 유·초·중·고 특수학급 교사
 -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학교 교사
- 4)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과정 지침 연구 및 연수지원

마. 영유아 교육 강화 및 순회교육 지원강화

- 1)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규모(1인 기준 월 공립 70천원, 사립 91천원)
 - 초등학교 취학유예 후 유치원교육을 받을 경우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 2)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현황 및 배치 유아현황 파악(연중)
 - 특수학교 19명, 센터 4명, 일반학급 23명 총 46명(2018, 4, 1.현재)
- 3)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 지정 배치(17센터)
- 4) 지역교육청 단위로 해당 지역의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소속 직원 연수 희망조사 및 실시(연 1회 이상)
- 5)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순회교육 실시,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계획 마련
- 6)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영아 무상교육에 대한 홍보 및 실태조사
- 7)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영아 진단, 부모교육 및 상담 연중 운영 •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영아지도사 및 유아특수교사 배치
- 8) 만 3세 미만 영아 : 특수교육지원센터 14명, 특수학교 0명

9)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구분	특수학교 순회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육	하세스
十元	학생 수	학생 수	학생 수
2018	19	161	180

바. 중도·중복장애 학생지원확대 및 보조인력 운영지원

- 1) 병원학교 2학급 운영 지원: 강원대병원학교, 강릉아산병원학교
- 2)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지원 '꿈사랑학교'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위탁 운영
- 3) 건강장애학생 원적학교 담임교사 연수,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연수 : 연 1회
- 4)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치료지원전담팀 구성 운영(도센터 1 외학교설치)
- 5)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현황
 - 지원학교 :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유·초·중·고등학교
- 6)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현황

구분	유급보조인력	장애학생 지원사회복무요원	자치단체지원	기타	계
2018	299	38	8		345

사.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강화

1) 특수교사의 개별화교육연구회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별·교과별 개별화교육 관련 우수사례 공유(연중)

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강원도특수교육지원센터 및 17개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협력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 춘천특수교육지원센터	홍천, 화천, 양구, 철원특수교육지원 센터	- 상담·홍보활동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및		
• 원주특수교육지원센터	횡성특수교육지원센터	│ — 진단·평가 지원 │ — 특수교육활동 지원		
• 강릉특수교육지원센터	평창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 속초·양양특수교육 지원센터	고성·인제 특수교육지원센터	- 통합교육 및 진로·직업교육지원 - 장애학생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 동해특수교육지원센터	삼척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운영 ※ 거점 및 협력센터 공동사업 추진 권장		
• 정선특수교육지원센터	영월·태백특수교육지원센터	- ※ 거점 못 합복센터 등동사합 추진 전쟁 - (예) 교사 학부모 연수, 학생 행사 등)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상시 개방으로 장애인 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
- 3) 지역별 여건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
 - 순회특수교사 : 28명
 - 정원 외 기간제교사(순회교육담당): 12명
 - 치료사 : 50명(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자.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설 및 기기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별 보조공학기기 배치 및 지원
 - 특수교육 교원의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연수 지원 및 교육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학생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의무 실시(연 1회)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포함

차.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 치료지원 현황
 -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2,239명
 - 지원방법: 치료사지원, 모두사랑카드지원
 - 지원방법 : 100천원×10개월, 연 1,000천원(1인 기준)
 - 치료지원 내용 : 물리·작업·언어·음악·미술치료 등
- 2) 가족지원 현황: 지역센터 별 가족캠프운영(연 1회)
- 3) 통학지원
 - 특수학교 통학차량: 25대
 - 통학비 지원기준 : 대중교통비 기준 1일 학생 2회. 학부모 4회 계 1.116명 지원

카,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및 계절학교 운영

- 1) 특수교육기관 방과후학교 운영
 - 지원기준 : 100천원×12개월, 연 1,200천원(1인 기준)
 - 지원학생수 : 1.900명
- 2) 특수교육대상학생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
 - 대상 : 유·초·중·고·특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기준 : 1주 이내 운영(여름·겨울방학)

• 운영프로그램: 특기적성 및 체험활동. 현장학습 등

타.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 1)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
 - 대상 : 특수학급 379학급(유 26, 초 214, 중 80, 고 59)
 - 지원기준 : 특수학급 당 4.000천원(신설특수학급 25.000천원)
 - 용도 : 교재교구구입, 학습자료제작, 도서구입, 특수학급 운영에 필요한 사항
- 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지도 강화
 - 특수학교의 장애유형별. 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 지도
 - 특수학교 자체평가를 통해 특수학교 교육의 질 제고 및 선도적인 학교경영 모형 제시
- 3)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실시
 - 특수학교(급) 교육과정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장학 실시

파.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2)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체육전담인력 전면 배치
 - 특수학교에 체육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전면 배치(교당 1명)
- 3)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참가학생 선발 및 대회입상
- 4)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실시(지역교육청 및 학교 자체 실시)

3. 진로 직업교육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 1)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특수학교 자유학기 활동 지원을 위한 체험처 발굴 관리 지원
 -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 :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정선, 동해
 - 보호작업장, 사회적기업, 학교기업, 전공과 등 체험처 활동
 - 자유학기제 체험처 공유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자료실 활용
 - 2)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 : 특교 120,000천원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 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전문기관에 위탁교육 기회 확대화
 - 지역 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폴리택 대학 등 직업교육전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분석, 협력 추진

- 2) 전문대학 연계 장애학생 및 학부모 취업·창업교육 지원
- 3)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교육 담당 교사 연수 활성화
- 4)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역사업체와 MOU 체결
- 5) 특수학교『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2개교(태백미래학교, 속초청해학교)
- 6) 장애학생『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효율적 운영: 영서고등학교
- 7)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전공과 : 26학급
 -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 거점형으로 4개 센터 운영
- 8)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 교육 강화
- 9)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학생 : 도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연 2회)
 - 유·초·중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비장애학생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일반학교 중심(연 2회)
 - 일반학교 고등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비장애학생 : 도특수교육 지원센터 중심 연 2회
 -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모든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대상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장애학생 인권지원단」설치·운영
 -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초·중·고 학생대상으로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연 2회 의무 실시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나. 장애학생 안전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2)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강화

다.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1) 특수교육대상자자의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 가) 특수교육 홍보를 통한 진단·평가 의뢰 절차의 정착
 - 진단·평가 의뢰 안내 홍보: 17개 지역청, 17개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 의무·무상교육 등 홍보 리플렛 배부
 -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매뉴얼 연수 : 1회, 50명(장학사 및 특수 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 구성 운영: 18개팀 운영
 - 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 구성 : 본청 1. 지역청 17개 운영
 - 기능
 -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사항

라.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1) 모든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교육 : 연 2회 이상 실시
- 2) 모든 공공기관 장애인식개선 연1회 실시
- 3)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식개선 행사 실시
- 4)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장애이해 내용 지도 자료 활용
- 5) 학교급별 장애체험 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추진

마. 특수교육지원체제 강화

-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 2) 모든 학교, 기관 대상 장애이해교육 : 연 1~2회 이상 실시

- 3)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식 개선 행사 실시
- 4)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장애이해 내용 지도 자료 활용
- 5) 학교급별 장애체험 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추진
- 6) 장애학생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 및 연수 확대
- 7) 교원학습공동체, 및 혁신교육연구회(특수) 운영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학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1)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인원(25명), 지원규모(1인 기준 월 공립 40천원, 사립 91천원)
 - 2)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정원 내 배치 및 의무교육(통합교육) 이행 철저
 - 3)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학부모, 교사 지원을 통한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전이 과정 어려움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청별 계획 수립
- 나. 장애영아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지원 체제 마련
 - 1) 특수교육지원센터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자치 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 2)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담당 연수 및 부모 교육 제공
- 다.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1) 유·초·중·고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설치·운영

(단위: 학급)

추진내용		연차	ніл	
		2018	2019	비고
	°		_	
	초	9	5	
특수학급	중	3	2	
국구익급	고	3	2	
	전공과	-	1	
	계	17	10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내실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	XII II Q	연차	비고	
Τ'	진내용	2018	2019	- 177
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일반학급 배치 순회교육대상자 수	149	160	
순회교육지원	_ 1.13 13		42	

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지원 확대 운영

÷.	XII II O	연차	연차계획				
Τ'	추진내용		2019	비고			
치료지원	학생 수	2,239	2,250				
시묘시권	지원예산	1,280,000천원	1,208,000천원				

다.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 1)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환경 개선
 -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준에 의한, 설비·비품을 우선 확보
 - 특수학급 교실 기준 면적 확보
 - 특수학급 시설·설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 운영비'에 반드시 편성·지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편성·집행지침에 포함

라.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및 계절학교 운영

- 1) 특수교육대상 부모 보육부담 경감 및 사회 참여 확대
- 2) 방과후학교 및 계절학교 운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질 계발 및 특기 신장

3. 진로직업교육 지원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 1)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우수업체·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연계운영,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운영 다양화 및 활성화 지원
 - 2)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
 - 인근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컨설팅 제공

-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지원
- 3)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전공과 설치·운영의 다양화 추진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으로 특성화하여 전공과 유영
- 4) 다양한 진로 정보 및 특수교사의 직업교육 역량 강화
 - 특수교사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직업교육 역량 강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안전 강화
 - 1)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교정을 두도록 지도
 - 2) 지역교육청 설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활동 확대 지원 및 연수 실시
 - 3) 재난대응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 나.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화동 지원
 - 1)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 및 일반교사,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 다.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식개선 사업 추진
- 라. 통합교육 지원 강화 및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 1) 통합교육 내실화 및 통합학급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와의 협업을 위한 지원 강화
 - 2) 통합학급관리자 장애이해 연수 및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연찬회 실시
- 마. 공립특수학교(가칭 원주특수학교, 동해특수학교) 신설추진 2019. 3. 1.자 개교 예정
 - 설립규모 : 28학급, 203명

구분	C T	P T	Ž	Ž	2	5	۔ ت	2	전	공	합	계
TŒ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가칭)원주 특수학교	1	4	8	48	7	42	7	49	5	42	28	203
(가칭)동해 특수학교	1	4	7	42	4	24	5	35	2	24	19	129

• 부지위치 : (가칭) 원주특수학교 - 원주시 봉대길 33[(구) 봉대초 부지] (가칭) 동해특수학교 - 동해시 부곡5길 22 일원

• 총사업비

구분	부지 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자산취득비	계
원주특수학교	500,000	1,198,160	23,912,719	726,056	179,638	2,390,000	28,906,573
동해특수학교	700,000	1,395,992	22,415,467	778,746	44,831	1,857,000	27,192,036

충청북도교육청

■ 특수교육 추진 방향

- 1. 충북특수교육 지표
 - 가. 학생중심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 2. 충북특수교육의 기본방향
 - 가. 공교육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역량 강화
- 3. 충북특수교육 중점 추진과제
 -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다.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2018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특수학교(급)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 신설 중·장기 계획
 - 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 특수학급 신·증설 : 36학급(유 6학급, 초 16학급, 중 7학급, 고 7학급)
 - 특수학교 학급 증설 : 21학급(유 2학급, 초 6학급, 중 7학급, 고(전공 포함) 6학급)

=	구분		초	중	고(전공포함)	계	비고
	신설	4	7	3	3	17	
특수학급	증설	2	9	4	4	19	
	감축(폐지)	1	5	8	1	15	
트스하고	증	2	6	7	6	21	
특수학교	감	5	2	6	3	16	

- 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립 시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를 고려한 특수 학급 설치
- 2)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 가) 다양한 형태, 특화된 분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 설립 추진
 - 나) 예술, 진로와 직업 등 특정 분야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역량을 강화 할수 있는 특성화된 학급 설치·운영
 - 예술 분야(1교), 진로와 직업 분야(직업교육 거점학교 3교) 운영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수
 - 가) 특수교사의 장애 유형별 교수 능력 신장을 위한 연수
 - 특수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집합 연수 : 200명, 연중, 충북특수교육원
 - 일반교사 (통합학급) 특수교육이해를 위한 집합연수 : 200명, 4월, 충북 특수교육위
 - 나)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 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 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 라)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 운영: 25팀, 288명
 - 마) 특수교육 교권연구회 운영: 1팀, 30명
- 2) 특수교육교원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승진·전보 가산점 부여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정당한 편의제공 환경 구축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및 평가 조정안 수립·시행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단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나)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충북특수교육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0개 시·군특수교육지원센터 정보 교환
 - 「충북 장애학생e페스티벌」 예선 개최 : 53명 참여, 6월, 충북특수교육원
-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편의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학생 1.244명, 보호자 934명, 610.633천원
 - 특수학교(급) 통학차량 지원 : 특수학교 34대(통학택시 1대 포함). 특수학급(전공과) 2대
 - 특수학교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승·하차실무원 배치: 33명

2. 통합교육·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일반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장애인권교육 실시
 - 순회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
 - 나) 통합교육 실시 유치워에 대한 지원 강화
 - 통합교육거점기관 유치원 2원(5.000천원), 센터 1기관(5.000천원) 운영
 -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나)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시청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충북특수교육원, 청주)
 -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가) 특수·일반교사 협업을 통한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
 - 나) '정다운학교'(괴산 목도초) 운영으로 협력수업 등 다양한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
-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 관리자 집합연수 : 200명, 4월
 - 나) 통합학급 담당교사 집합 및 원격연수: 200명, 4월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1) 지역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3)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발달단계·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자료 지원
- 4)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보완자료 및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보급
- 5)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수
 - 가) 학교급별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수: 90명, 8월 중, 충북특수교육원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가) 순회교육 주 2회 이상 운영(특수팀장 8시간 내외, 특수순회교사 16시간 내외)
 - 나) 순회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업컨설팅 및 수업공개를 연 1회 이상 실시
 - 다) 순회교육 실시: 157명 지원(가정 38명, 시설 2명, 병원 1명, 일반학교 116명)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3) 치료 지워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팀 구성·운영

바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 1)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지원 강화
 - 가) 현장 맞춤의 다양한 보조인력 형태 운영 지원: 537명
 - 특수교육실무사(378명), 자원봉사자(94명), 사회복무요원(65명)
 - 나)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속적 확대 지원 추진
- 2) 특수교육보조인력 역량강화 연수
 - 행복한 교실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권역별 집합연수 : 4기, 362명
 - 특수교육보조인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원격연수 : 2018 10월 중

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강화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 나)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
- 2)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지원 제공
-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내실화
 - 가)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 병원학교 운영(1교: 충북대병원학교)
- 3)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및 보호자 교육 강화
- 4)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5)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확충 : 순회교사 8명 배치
-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2센터, 특수학교 10교
-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가) 제12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 281명 출전, 종합 2위(금 52개, 은 39개. 동 52개)
-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 1)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10교)
 - 3)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2센터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 2) 지역사회중심 취업지원·관리 통합 체계 구축
- 3)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 가) 특수학교 학교기업: 청주맹학교(천연비누, 생활도예, 바리스타, 점자 표지판), 꽃동네학교(제과, 제빵, 바리스타), 충주성신(바리스타)

- 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청주농업고, 충북산업과학고, 제천제일고
- 4) 각급학교 내 장애학생 장애인일자리 참여: 48명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구축

-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2)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기관, 장애인교육(야학) 2곳 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가) 유·초·중·고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나) 일반학교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다) 교육기관 및 소속 기관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권지원단 11개 운영 : 충북특수교육원 1, 교육지원청 10
 - 나) 모든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대상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상시 운영
 - 다) 도교육청, 충북특수교육원, 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과 지역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 2)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가) 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 나)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 연 2회 이상
 - 다)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수립 권장
 - 라)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교사와 협업 체계 구축
- 3)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 가)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나) 성교육 우수 자료 현장 보급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 3)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가) 학교 시설 안전점검 연 1회 의무 실시
- 4) 재난 대응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진단 평가 체계 구축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강화
-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종일반 운영
 - 가) 방과후학교 종일반 운영
 - 44학급(특수학교 30학급, 특수학급 14학급 : 인건비, 운영비 지원)
 - 종일반 1실당 종일반 전담사 1명 배치 운영
- 2) 특수교육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 가) 재능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 수요자 중심 운영
 - 나) 방과후프로그램 강사료 및 운영비 지원
 - 다)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지원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 가) 도교육청 특수교육 전담 장학관, 장학사 배치 및 지원: 장학관 1. 장학사 1
 - 나) 충북특수교육원 연구관, 연구사 배치 및 지원 : 교육연구관 2명, 교육 연구사 3명
- 2)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가) 신규 및 저경력 교사 배치 시 경력 교사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멘토교사제 우영
- 3)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강화
 - 가) 충북장애인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연 2회(1월, 7월)
 - 나)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위원회 운영 : 정기회(4월), 사안 발생 시 수시 개최

Ⅲ 향후 추진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노력
 - 1) 특구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가) 특수학교 설립 추진시 교육대상 학부모,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의 의 견수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 나) 특수학급 운영을 위한 적정시설 확보를 위해 매년 2회(8월, 1월)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에 맞는 교육시설 확보 노력
 - 다) 특수학교(급) 신증설 추진

(단위:교,급)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특수학교수	0	0	0	1	1	
특수학급수	36	15	10	10	10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수 기회 확대
 - 가) 특수교육 프로젝트 수업실천 국제연수(6~8월 중)

순	연수내용	연수국	기간	인원
1	특수교육기관의 통합교육환경 탐색	일본	10일	4
2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 탐색	일본	6일	4
3	교권 보호 정책과 제도 탐색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10일	4
4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과 치료지원 탐색	독일, 프랑스	10일	4
5	통합교육 운영 사례 탐색	미국	10일	4

- 나)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힐링 연수 운영
 - 개인상담, 집단상담, 힐링 연수 등 다양한 유형의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 다)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 교권보호지원센터와 연계한 교권 및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법률 상담 등 지원
 - 마음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교원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심층심리 검사 및 심리상담 지원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정당한 편의제공 환경 구축
 - 가)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구축
 - 도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보유 현황 및 대여 안내 (충북특수교육원 홈페이지 통합 배너 활용)
 -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및 현장 활용 지원 강화 (시각, 청각, 학습, 의사소통, 이동 및 보행, 자세유지, 일상생활 등)
- 2) 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제공 강화
 - 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의 기준에 맞는 시설·설비 확보를 위한 특수학교안전 및 편의시설 강화 추진: 2018년 하반기(공·사립 특수학교 4교예정)

2. 통합교육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 한 컨설팅 강화
 - 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활용 확대
 -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학 등의 통합교육 지원 인력풀 구축 및 협력체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적응력 및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통합교육 관련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가)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중점학교 '정다운학교' 운영
 - 나) 정다운학교 운영 : ('18~'19) 1교, 연구학교(목도초) 운영
 - 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보급
 - 라) 충북형 통합교육중점학교(정다운학교) 확대 운영('20~'22)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 나) 일반학교 관리자 집합연수 참여율을 높이고 집합연수 6시간으로 확대
 - 다)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정에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참여 권장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1)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 교육기관 확대 노력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운영
 - 가) 특수학교 10교(53,000천원), 특수교육지원센터 5개소(12,000천원) 지원 확대
- 3)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유관기관, 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확대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 교육강화
 - 가) 각급학교 내 장애학생 장애인일자리 참여: 48명
 - 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워크투게더센터와 연계한 협조체계 구축
 - 2) 충청북도 교육청 '어울림방 카페' 운영
 - 가) 성신학교 고3. 전공과 재학생 및 특수학급 고3
 - 나) 발달장애영역 학생의 직업능력 향상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험기회 확대
 - 3) 충청북도 교육청 어울림'休' 운영
 - 가) 7월 중 개점 예정. 청주맹학교(시각장애) 전공과 재학생
 - 나) 시각장애 학생의 직업능력 향상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험기회 확대
 - 4)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가) 참여 학교: 꽃동네학교, 청주맹학교, 청주성신학교
 - 나) 진로·직업체험의 날 운영: 10월 중, 거점학교 및 기업형학교 참여
 - 5)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
 - 가) 청주농업고 협력 7기관, 충북산업과학고 협력 5기관, 제천제일고 : 협력 6기관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32교, 1,256명 신청
 - 가) 일반학교 비장애학생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교육
 - 나) 장애이해교육 전문 강사 학교 방문교육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매월 1교 이상 방문)
 -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협의회 및 간담회 실시: 각 2회
 - 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우수사례집 보급: 200부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컨설팅 실시: 1회 이상
 - 라)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우수사례 발표회 : 10월중

다.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학교(급)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 사업 연차적 추진
 - 가) 특수학교의 장애유형, 교육과정 운영현황, 교육환경시설·설비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 교육환경 개선('19~'22)
 - 나) 특수학급 설치연도, 통합교육 환경(편의성), 특수학급 시설·설비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한 연차적 교육환경 개선('19~'22)
 - 다) 추진일정('18)

노후 특수학교(급) 현대화 사업추진 대상학교 사전조사(6월 중)	\Rightarrow	노후 특수학교(급) 현대화 사업 사전조사 결과 분석(7월 중)	\Rightarrow	노후 특수학교(급) 현대화 사업 2019년 본예산 요구자료 제출
진로직업특수교육과 → 유·초·중·고· 특수학교		진로직업특수교육과		진로직업특수교육과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출발선이 평등한 맞춤 특수교육 실현

2. 기본방향

- 가. 특수교육의 균형 발전 도모
- 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향상
- 다.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로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 추구

3. 중점 추진 과제

- 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1)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특수교육 기회 확대
 - 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 3) 각급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 제공
 - 4)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 조정안 수립·시행

나. 통학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2) 일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3) 특수교육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 4)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5)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6)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 7)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강화
- 8)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0)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활동 지원
- 11)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12) 특수교육 장학 활성화

다.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활대 운영
- 2)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3) 장애인 평생교육 안내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1) 범국민 장애 공감 문화 조성
-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3) 장애학생 안전 강화
- 4)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체제 구축
- 5)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6)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4. 특수교육 역점 사업

- 가. 생애단계별 특수교육 지원
 - 1)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기회 확대
 -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 영아학급 설치 운영
 - 다) 특수교육대상 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조정제 시행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가) 지역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나) 맞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방과후학교 운영

나. 장애학생 인권과 사회참여 역량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 강화
 -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지원단 운영
 - 나) 장애학생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
 - 다)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라) 꿈과 끼를 키우는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 2) 장애학생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 가)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합 진로·직업교육 운영
 - 나) 지역사회 연계 직무 중심 취업·창업교육 지원
 - 다) 장애학생 '맞춤 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
 - 라)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

Ⅲ 2018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특수교육 기회 확대
 - 1) 장애영역·지역별 균형적인 특수학교 운영
 - 가) 지적장애 학교: 6교
 - 나) 지체장애 학교: 1교
 - 2) 특수학교 설립 추진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특수학교 수. 통학거리 등 지역의 실정과 여건 고려
 - 나) 직업중점 특수학교 설립 추진 : 천안 가칭 '꿈이룸학교'. 고 + 전공과
 - 다) 지역별 균형적인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추진 : 당진
 - 3)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 가) 일반학교에 통합된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해소 및 과밀 학급 해소
 - 나) 특수학교(급) 신·증설: 45학급(특수학급 21학급, 특수학교 24학급)
 - 다)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운영
 - 중도·중복장애 등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 학급 운영 - 예술, 체육, 진로와 직업 등 특성화 중점 학급 운영
 - 4) 특수학교(급) 학생수 법정 정원 준수
 - 유치원(4명), 초등학교(6명), 중학교(6명), 고등학교(7명)
 - 5) 특수교육 교원 확보 노력: 1.055명(교사 1.040명, 교장·감 15명)

나,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 1)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기회 확대
 - 가) 특수교육 교사 직무연수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연구회, 교육 지원청 주관
 - 나) 충남 특수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 연 1회

- 2) 특수교육 교원 통합교육 관련 연수 기회 확대
 - 가)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과정, 수업전문성 향상 등 일반교과 교육 연수 참여 권장
 - 나) 특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구회 및 현장연구 활동 등 적극 권장
- 3) 특수교육 교원 직업교육 연수 강화
 - 가) 중·고등학교(급), 전공과 특수교육 교원의 직업교육 직무연수 기회 확대
- 4)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 부장교사 임용확대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
 - 나) 특수교육교원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담당 부장교사' 임용 권장
- 5)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 나)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다. 각급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 1) 각급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검
 - 가) 편의시설 관련 규정 안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 나) 특수학교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 마련
 -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 확보 및 개선 계획 수립 등의 조치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 조정안 수립·시행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단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려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조정안 수립·시행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조정제 시행 우수사례 발굴·보급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 2) 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설치교 관리자의 통합학급 운영·관리 책무성 강화
- 3)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과정 지원
- 4) 통합학급당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정 배치 및 일반학생 수 감축
- 5)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6)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나. 일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2) 일반교육 교원 연수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강좌 개설
- 3) 일반교육 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 4)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교사연구회: 교과연구회, 개별화교육연구회, 행동지원 연구회 등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 1)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도움자료', '2018 충남참학력 교육과정 길잡이' 활용
- 2)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30% 범위, 공통 교육과정은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 나)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해당 교과로 편성하되,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음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지원 대상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3) 순회교육 담당교원 연수 강화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가족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 지원:5개 단체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14개 특수교육지원센터
-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치료지원전담팀 구성·운영

바.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 1)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강화
 - 가) 현장 맞춤의 다양한 보조인력 형태 운영 지원 : 516명[특수교육실무원 312명, 시간제·기간제 교사 419명, 사회복무요원 55명]
 - 나) 적합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명확한 지원 기준 마련
- 2) 자원봉사자 및 사회복무요원 등 보조인력 활용 내실화
- 3) 특수교육 보조인력 채용 전·후 연수 강화

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강화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2)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건강장애 선정 지원
-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내실화
- 3) 건강장애 관련 연수 및 교육 강화
 - 가)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소속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연수
 - 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 다) 보건실, 도서실 등에 건강장애학생 이해 자료*를 상시 비치 * 병원학교 이용 매뉴얼 등 병원학교 홈페이지(http://hoschool.ice.go.kr) 자료 활용
- 4)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강화
- 5)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가)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팀 구성(장학관, 장학사, 특수교사 2명)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전문직, 특수교사(4명 : 천안 2, 논산계룡 1, 서천 1), 행정직원, 전문상담 및 통합교육 지원 인력

- 2) 지역 중심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나) 특성화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3)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지원
 - 2)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
 - 가)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특수학교 6교
 - 나)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 : 특수학교 1교 ※ 자유학년제 운영교는 자유학기 활동 221시간 이상 확보
 - 3) 특수학교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점
 - 가) 자유학기 활동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하여 학생의 희망과 관심사에 기반 170시간 이상 편성·운영
 - 나) 1 학생 1 문화·예술 활동, 1 체육 활동 참여
 - 다) 교과 시수 감축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 4) 교원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3) 특수학교「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4)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
- 다. 장애인 평생교육 안내
 - 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통합 교육기회 확대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가. 범국민 장애 공감 문화 조성
 - 1) 교과서의 장애 관련 내용 교육 충실
 - 2)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가) 유·초·중·고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장애인의 날 장애이해(대한민국 1교시) 수업 실시
- 장애이해 드라마 활용 장애인식 개선 수업 실시 : 다큐멘터리(5편), 애니메이션(10편)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설치 및 개선 관련 이해교육 실시
- 3) 장애인식개선 행사 추진
 - 가) 교육지원청과 지역 주민이 연계한 '작은 음악회, 콘서트, 연극, 사물놀이 등
 - 나) 특수학교(급)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체육대회, 학예회 등
 - 다) 장애인식 변화 조사: 설문조사, 감상문 작성 등
 - 라) 장애 이해 주간 운영 : 모든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행사 운영
- 4) 장애이해·체험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 가) 학교별 다양한 장애영역의 창의적인 장애체험활동 실시
 - 나)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별 장애인식개선 사업 추진
 - 다) 장애인 초청 장애이해 토크콘서트, 수업전개 등
 - 라) 통합캠프. 통합교육 연찬회 등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행사 개최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상시 운영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15개단 운영(본청 1, 교육 지원청 14)
 - 나)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 2)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가) 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 나) 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다)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직무연수' 운영: 15시간, 연 4회
- 3) 장애학생 성교육 내실화
- 4)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 5) 문제행동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 가)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 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 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환경 개선
- 2)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실시
 - 가) 현장실태*를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재난) 안전교육 수시 실시
 - 나) 재난상황 대비 장애 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재정비
- 3)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가)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 학교 시설 안전점검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준에 미달하는 특수학교 시설 지속적 개선
 - 나) 재난상황 대비 장애 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재정비
- 4) 장애학생 통학안전 지원
 - 가) 취약지역 통학학생 실태 파악: 농로, 산길, 골목길 등
 - 나) 경찰서와 연계한 통학시간대 순찰 강화 통학지원 '길벗 동행 서비스' 실시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체제 구축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교육기관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1) 특수학교 신설
 - 2019. 9. 1.자 개교 가칭 '천안꿈이룸학교' 직업중점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추진

2)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연도	2018						2019						2020					
급별	유	초	중	고	전 공	계	유	초	중	고	전 공	계	유	초	중	고	전 공	계
학급수	2	8	9	11	7	37	1	2	5	6	2	16	1	4	8	2	2	17

나. 장애영아교육 내실화

- 1) 특수학교(나사렛새꿈학교 2학급)
- 2) 특수교육지원센터(4센터)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 1)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
 - 2) 일반학교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장애인권교육 실시
 - 3)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나. 일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2) 일반교육 교원 연수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강좌 개설
 - 3) 일반교육 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 4)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 1)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 2)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3) 특수학급(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지원
 - 2)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
 - 3) 특수학교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점
 - 4) 교원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 5)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 강화

-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3)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4)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
 - 5)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6)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선택 다양화를 위한 진로 정보 제공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가. 범국민 장애 공감 문화 조성
-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체제 구축
-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전라북도교육청

●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특수교육 추진 방향

- 가. 특수교육력 강화
- 나. 특수교육지원체제 운영 내실화
- 다. 장애학생 인권 우호적 분위기 조성
- 라.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2. 중점 추진 과제

- 가. 특수교육 교육력 강화
 - 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3) 건강장애 및 원격수업 수강학생 지원
 - 4)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
 - 5) 특수교육 연수 지원
 - 6)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 교육 강화

나. 특수교육지원체제 운영 내실화

- 1)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체계 확립
-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3) 순회교육 운영지원
- 4)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5)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 6)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다. 장애학생 인권 우호적 분위기 조성

- 1)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교육 강화
- 2)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라.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2)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 2018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특수교육 교육력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내실화
 - 1)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지원
 - 가) 영아학급 2학급 운영: 전주유화학교
 - 나) 지원내용: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및 순회교육 지원, 홍보 및 학부모연수
 - 2) 특수교육대상 유아 통합교육 및 무상교육비 지원
 - 가) 특수교육대상 유아 통합교육 거점기관 운영
 - 나) 무상교육비 지원내용 : 공립 월 90천원, 사립 월 361천원 지원
 - 3) 장애영유아 통합교육거점 운영: 3기관(전주, 익산, 장수한사랑유치원) 15.000천원
 - 4) 장애영유아 대상으로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실시
 - 5)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과 학부모 연수 연 2회 이상 운영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특색 있는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2)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전북 특수교육설명회 실시

➡ 특수교육운영계획 설명회 실시

- 일시: 2018. 1. 26.(금), 지방행정연수원
- 특수학교(급)교사, 전문직, 관리자 등 262명, 4시간/11,144천원
- 3) 교육과정 지원 컨설팅 실시
 - 가) 특수학교(급)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컨설팅 실시:연중
 - 나) 신설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컨설팅 실시: 19교
 - 다) 특수학교(급) 및 병원학교 교육과정 컨설팅 실시: 8교
- 4)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9교, 110.000천원
 - 가) 자유학기제 운영: 7교(군산명화학교 외 6교), 80.000천원
 - 나) 자유학년제 운영: 2교(다솜학교, 전북푸른학교), 30,000천원

- 5) 2018 통합교육 시범 운영 「정다운 학교」 운영
 - 가) 중학교: 2개 선정(전주서중, 군산중), 12,000천원
 - 나) 고등학교: 1개 선정(전주솔내고), 8,000천원

다. 건강장애 및 화상강의 수강학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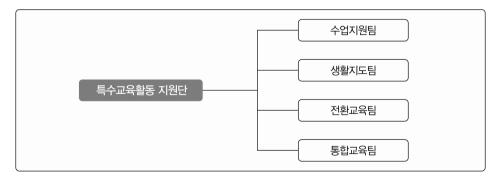
- 1)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병원학교 위탁 운영
-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학교 담임 교사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 건강장애 및 보호필요학생 지원을 위한 담당교사 연수

- 일시: 2018. 4. 3.(화). 전주역사박물관 강연장
- 담당(담임)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등 230명, 3시간/1,985천원
- 3) 건강장애 학생 및 보호 필요학생 지원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
- 4) 건강장애 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연수자료 제작 활용
- 5)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수강 현황
 - 병원학교 운영: 전북대한누리병원학교(12명 출석수업과 화상강의). 70,000천원
 - 꿈사랑학교(초중고교육과정) 원격수업 수강: 74명. 120.000천원
 - 한국교육개발원(중고교육과정) 원격수업 수강: 12명, 59,000천원

라, 특수교원 전문성 강화

1)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특수교육활동지원단 구성·운영



2) 지원방법

대상	주요활동
특수 학교	주요 학교정책의 현장 적용·안착 지원 및 학교정책 시행의 문제점 해결 지원 교육과정 정상적 운영 지원·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추진방안 협의 수업공개 시 지원담당 장학사 참관
특수 교사	(신규교사 지원을 위한 '행복동행' 추진〉 •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요청 권장 • 초임교사 멘토멘티링 프로그램으로 운영 (전문성 신장 희망교사〉 • 요청하는 영역(주제)별 희망지원 • 교사가 요청한 영역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

마. 특수교육 연수 지원

- 1) 특수교육이해를 위한 일반학교 관리자 연수 및 인식개선 콘서트 실시
 - 가) 대상 : 일반학교 교장 및 전문직 총 1,500여명
 - 나) 내용 : 장애인권 보호 및 장애이해, 교육과정 및 편의시설 관련
 - 다) 일자: 1차 2018, 4, 5,(목), 교(원)감 689명,

2차 4 13.(금) 교(원)장 765명, 10.958천원

- 2)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직무연수 실시 : 연중, 17.100천원 지원
- 3) 자격연수, 직무연수(60시간 이상)에 의무적으로 특수교육강좌 2시간 개설
- 4) 특수교육 집합연수 및 원격연수 실시
- 5) 2018 특수교사 전문성 향상 연수

■ 2018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 일시: 2018. 6. 15.(목). 16.(금). 1박 2일. 전주로니관광호텔
- 2016·2018 특수교육활동지원단과 행복동행 참가교사 50명, 3,670천원

2. 특수교육지원체제 운영 내실화

- 가.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체계 확립
 -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진단평가 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2)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제작 보급
 - 3) 연 6회 이상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 4)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진)학 설명회 및 개별상담 실시
 - 가) 지역별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학설명회 개최
 - 나) 6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대학 입학 설명회 개최

다) 6월~10월 학부모 및 담당교사대상 개별상담 실시

□ 2018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를 위한 연수

- 일시: 2018. 6. 28.(금). 전라북도교육청 8층 회의실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담당자와 특수교육운영위원

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 2.539명. 1.618.885천원

2)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비 지원 : 1,250명, 318,838천원

3)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55명, 117,510천원

4) 특수학교 종일반 지원 : 28학급, 298.057천원

5) 특수교육 대상자 방과후학교 지원 : 2,530명, 1,230,136천원

6)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 394명. 7.605.383천원

- 7) 교재·교구 및 보조 공학기기 지원을 위한 감각장애 특성화센터 운영 가) 일반학교 재학 청각장애학생 수화 속기 원격지원 20,000천원 지원
 - 나) 일반학교 재학 시각장애학생 대체교과서 보급 20.000천원 지원
 - 다) 시·청각장애학생 교재·교구 및 보조 공학기기 50,000천원 지원
- 8)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 학기별 2회 실시

다. 순회교육 운영지원

- 1) 순회교육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운영
- 2) 주 2회 이상 방문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방문교육, 체험학습, 과제학습, 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의 운영을 통하여 150일 수업일수 확보
- 3) 순회교육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르되 대상학생의 장애정도와 환경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실시

라.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1)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추진

(단위: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특수학교	3	5	7	8	2	25
특수학급	2	7	3	9	0	21
계	5	12	10	17	2	46

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단위:명)

하모		특수학교		특수학급			계					
항목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ᅇ	초	중	고
법정정원	4	6	6	7	4	6	6	7	4	6	6	7
전북(평균)	3.7	3.3	4.6	6.5	3.3	3.4	4.2	5.7	3.5	3.4	4.4	5.2

마. 특수교육지원체제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체계 확립
 - 가) 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포함한 18개의 센터 운영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단 운영
 - 다) Wee 센터 등 교육지원청 내 센터 간 업무협력을 통해 효율성 강화
 - 라) 장애 영유아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마)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강화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3) 직업전환중심 특성화 센터 운영
 - 가) 권역별 지원체계 구축 3개소(전주, 군산, 익산) 운영
 - 나) 장애학생 직업관련 평가 지원(담당인력 및 평가도구 지원)
 - 다) 직업체험 박람회 권역별로 실시
- 4) 장애영역별 특성화 거점 센터 운영: 4기관
 - 가) 시각장애 특성화센터 1개소(전북맹아학교) 운영
 - 나) 장애유형별 특성화센터 3개소(전주, 군산, 익산) 운영
-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자료 개발 보급

3. 장애학생 인권 우호적 분위기 조성

- 가. 장애인권보호 및 학교폭력(성폭력)예방 정기 학교현장지원 실시
 - 1) 장애인권보호를 위해 매월 1회. 1교 이상 학교현장지원 실시
 - 2) 장애 인권교육 교사 동아리 운영: 3팀, 4,500천원
 -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컨설팅 및 연수 실시
 - 4) 전라북도 장애학생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실시

나.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1)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순회서비스 지원 : 연중, 40,000천원 지원
- 2)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87교, 2.120,000천원

- 3) 모든 학교 연 2회 장애이해 교육 실시
- 4) 전라북도 특수교육 어울 마당 실시: 1회
- 5)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 14개 교육지원청 운영, 105,000천원 지원
- 6) 학부모와 함께하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 가) 대상: 학생 및 학부모 30가족(60명)
 - 나) 장소: 싱가포르
 - 다) 예산: 연 2회 105.000천원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 가. 진로 직업 교육 지원
 -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하루장터 및 진로직업교육 연수: 연중
 - 2) 특수행정실무사 운영: 30명, 650,605천원
 - 3) 교육기관 내 장애학생 희망드림직업실습생 운영: 1학기 30명
 - 4)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 운영 지원 : 특수학교 9교 100.000천원
 - 5)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지원: 1교(전주선화학교)
 - 6)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 2교(전주은화학교, 다솜학교)
 - 7)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1교(이리고 특수학급)
 - 8)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학생 전환교육 운영 : 3교(전주선화, 전북푸른, 동암차돌)
 - 9) 도교육청 1층 장애학생 직업체험을 위한 북카페 운영 활성화 및 지역 확대
 - 10)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1) 진로·직업교육 교사동아리 운영 지원: 10팀, 15,000천원
- 나. 장애학생 고등교육 접근성 및 교육인프라 강화
 - 1)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을 위한 대입정보 제공 및 장애학생 수험 편의 제공
 - 2) 시·청각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3개소 운영 및 권역별 지원을 통한 학습지원

Ⅲ 향후 추진계획

- 1. 신규 및 저경력 특수교사와 함께하는 특수교육활동지원단 '행복동행' 운영 및 특수교육 현장 컨설팅 : 연중
- 2. 2018 하반기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 11월 중

- 3. 특수교육전문가 국외 실시(네덜란드와 덴마크): 7. 16.(월), 7.24.(화), 8명
- 4. 장애학생 해외현장체험학습 해외연수 실시 : 10, 22,(월), 10,26,(금), 36명
- 5.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연수**: 6. 28.(목). 150명
- 6. **특수교육 하루장터 및 진로직업교육 연수** : 7월 중 450명
- 7. 장애 영·유아교육지원을 위한 교사 연수: 3회(7월, 9월, 12월)
- 8.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개최 : 10. 4.(목), 5.(금), 무주대권도원, 700명
- 9. **특수교육지도사 워크숍**: 8월 중, 80명
- **10**.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 7월, 12월
 - 치료지원, 통학비,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 11.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 참가 : 9. 4.(화). '9. 5.(수)
- 12. 특수교육대상학생 고등학교 배치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7월 12월
- **1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운영 강화** : 연중
- 14. 특수행정실무사 및 교육기관 내 장애학생(2학기 37명) 실습 운영
- 15. 직업교육 중점학교 및 거점학교 운영 : 연중
- 16.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및 특별모니터링 실시 : 연중
- 17. 2019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자료개발 2종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10월 중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3회(7월, 9월, 11월)
 - 다. 장애학생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 10월 중

전라남도교육청

●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목표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2. 추진목표

- 가.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3. 중점 추진 과제

-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다.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2018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 가) 특수학급 신·증설: 21학급(유 3학급, 초 12학급, 고 6학급)
 - 나) 특수학교 전공과 신·증설: 3교 3학급
 - 2) 특수학교 설립 추진 : 설립 타당성 연구 실시
 - 3)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 가) 예술 특성화 특수학급 운영: 전남예술고 1학급
 - 나) 진로·직업 중점 특수학급 운영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3개 권역(동부, 중부, 서부) 3교
 - 3학급 이상 특수학급(고) 직업전환실 구축 운영: 7교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1) 특수교육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연수 실시 : 2회 90명
-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 1회 40명
- 3)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22청
- 4) 교사 간 정보와 자료 공유, 연구 등을 위한 교사연구회 운영 지원: 9개
- 5) 통합학급 담당 교원 연수 지원 : 1,068명, 3월~12월
- 6) 장애이해. 통합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자과정 연수 운영: 22청. 3시간 이상
- 7) 특수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운영: 1회
- 8) 특수학교(급) 운영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장학 수시 지원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 관련 조항 참조 학교별 시행
 - 나)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및 대여 시스템 구축 : 3개 특성화센터
- 2)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
 - 나)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추진
- 3)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가)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 나) 학교시설 안전점검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 22센터 66명
 - 2)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지정 운영: 5개원
 - 3)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 : 1인 361천원, 상반기 4명
 - 4)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용: 22센터
 - 5)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 운영 : 3개 권역 시청각장애 특성화 센터
 - 6) 특수·일반교사 협력 모형 개발·운영을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1교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장애인 인권보호 관련 내용 포함) 확대 실시: 22청
- 2) 일반학교 관리자 매년 집합연수 3시간 이상 이수 의무 실시: 22청
- 3)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원격연수 지원: 1,068명
- 4) 특수, 일반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권장 및 우수 연구회 발굴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위한 교육과정 편성·지원 강화
 - 나) 시·청각장애 등 장애유형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강화
 - 나) 순회교육 대상학생 : 해당학교 교육과정 고려. 장애 특성과 정도에 맞게 편성
-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발달단계·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자료 지원
- 4)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자료 활용: 도교육청 홈페이지 자료실 탑재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268명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가) 방문교육 이외 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 지원
 - 나)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및 가족지원 방법 등 담당교원 연수 강화
- 3) 순회교육 담당인력 배치 확대 : 순회(기간제)교사 44명, 순회전담강사 22명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여건 개선 : 심리안정실 구축 특수학교 8교
-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치료지원전담팀 구성·운영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 1)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관리 강화
 - 가) 특수교육실무사 253명, 통학차량실무사 24명, 사회복무요원 225명
 - 나) 적합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명확한 지원 및 운영 기준 마련

- 2) 특수교육 보조인력 채용 전·후 연수 강화
- 3)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확대

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내실화

- 1) 개별화교육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강화
- 2) 특수교육대상자 개인별 요구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 3) 개별화교육계획 나이스 시스템 작성 권장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지원
 - 가) 병원학교 운영: 2교(국립나주병원 1학급, 화순전남대병원 2학급)
 - 나) 원격수업 지원: 2기관(한국교육개발원, 꿈사랑학교)
- 2) 건강장애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 3) 병원학교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23센터(본청 및 교육지원청)
 - 가) 순회교사 31명, 순회기간제교사 17명, 순회전담강사 22명, 치료사 26명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순회교사 연수, 센터장 워크숍, 업무별 담당자 연수 등
-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 가) 시·청각장애 특성화 센터 운영: 3개 권역별 센터(목포, 순천, 나주)
 - 나) 직업전환중심 도센터 운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내
 - 다) 직업전환중심 거점센터 운영: 3개 권역별 센터(광양, 장흥, 함평)
 -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 거점 센터 1개, 동아리 20개
-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8교 8명 배치
 - 나) 특수학교 초 3'6학년 학생 대상 생존 수영 실시 : 특수학교 8교(141명)
 - 다)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 8교
-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 교원 연수 강화
 - 가) 슐런 연수: 1회, 54명

나)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대상 장애이해교육,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 치료지원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22센터, 8개 특수학교
- 2) 센터 및 특수학교 치료사 배치 : 22개 센터 26명, 8개 특수학교 17명
- 3)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등의 지원: 22개 센터
- 4) 특수교육대상자 취학편의를 위한 통학지원
 - 가) 특수학교 통학차량 24대, 통학실무사 24명 배치
 - 나) 통학비 지원 : 1.700명(학생 1.170명, 동행 학부모 530명)

3. 진로 및 고등 평생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 1) 학생 특성, 학교 여건,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 2) 자유학기제 연구·운영학교 컨설팅 및 '꿈길' 활용 연수 등 역량 강화
 - 3) 학부모 인식 개선 및 참여 공감대 확산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직업교육 전문화

- 1) 직업 및 전환교육 지원을 위한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가) 직업전환중심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함평읍 소재) 1층
 - 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3개 권역 거점센터 운영 : 광양. 장흥. 함평
- 2) 특수학교 학교기업 2교 운영 : 순천선혜학교, 소림학교
- 3)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3교 운영 : 목포공고, 순천공고, 전남기술과학고
- 4)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함평영화학교
- 5) 학교 내 일자리 사업 참여 지원: 108명
- 6) 중도·중복장애학생 전환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8개 특수학교
- 7)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운영 확대: 8개 특수학교 23학급
- 8) 진로·직업교육 협의회 및 원스톱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내실화 및 평생교육 지원 기반 구축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에 대한 대학 정보 제공 확대
-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마련
- 3) 지역실정을 감안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통한 교육기회 확대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유·초·중·고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2) 학생, 교사,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3) 교육기관 공무원 등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
 - 가) 본청 포함 23팀, 267명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인권 예방 및 감시
 - 나)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 및 시설로 매월 정기 현장 지원 실시
 - 다) 장애학생 인권 관련 특별 사안 발생 시 특별지원 실시
- 2) 장애학생 인권(성)교육 강화
 - 가) 초·중·고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 나)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 인권 및 자기보호역량강화 교육 2회 이상 실시
 - 다)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3) 문제행동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운영
-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 위한 체험형 학교안전교육 실시
- 3)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4) 학교 주변 위험 환경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교육적 조치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강화 및 선정·배치 절차 준수
- 3) 특수교육대상영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4) 취학의무 특수교육대상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영유아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 유치원 33학급
- 2) 특수교육기관 초등 보육교실 운영 지원 : 특수학교(급) 55학급
- 3)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

- 가) 교내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143학급(초 8급, 중 14급, 고 21급, 특 100급)
- 나) 교외방과후 활동 지원: 특수학교(급) 1.625명
- 4) 방학 프로그램 운영: 22개 센터 및 8개 특수학교

바.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구·설비 확충 지원
- 2) 특수학급 지원을 위한 운영비 등 예산 지원
- 3)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 가) 특수학급 경력교사 배치. 신규교사 지원을 위한 멘토교사제 활용
 - 나) 수업선도교사 수업공개, 교과연구회 등 수업연구회 운영 활성화 지원

●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학교 과밀, 원거리 통학 해소,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특수학교(급) 신·증설 추진
- 나. 다양한 형태 및 특화된 분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 설립 추진 : 1교
- 다. 특수학교(급) 노후 및 낙후된 시설 환경 개선
- 라.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확대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특수교육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 연구 기회 확대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특수교육교원 및 통합학급교원 자율연구회 확대 운영
 - 2)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활용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시각·청각 특성화센터 운영 내실화
- 라. 학교 단위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마.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자료 현장 활용 연수 실시
- 바.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승진 및 전보가산점 부여, 전문성 신장 기회 우선 제공 등

3. 진로 및 고등 평생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 1) 특수확교 자유학기제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자유학년제로 확대 추진
 - 2)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단 운영 활성화를 통한 컨설팅 강화
 - 3) 지역사회 다양한 진로체험 자원 발굴 및 특수학교(급) 제공 확대
-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학교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특성화 지원 강화
 - 2) 학교 내 진로탐색기능 강화 및 교과·진로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 3)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전문화
 - 4) 장애특성에 적합한 진단 및 직업평가 체계 구축
 - 5) 특수교육대상자 적성·흥미와 진로를 고려한 전환 및 지원체계 강화
 - 6)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일자리 확충 및 취업지원 강화
 - 7)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취업지원 등 실무중심 담당교원 역량 강화
 - 8) 학부모 대상 진로·직업교육 정보 제공을 통한 이해도 및 협력적 분위기 확산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가.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전문가 그룹 구성·지원
 - 2) 장애 체험 활동, 관련 행사 참여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유관기관 연계 관할 경찰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통해 장애학생 학교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2)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및 지원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
 - 3)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교사와 협업 체계 구축
- 다.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점검 강화
- 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 마. 영유아방과후과정. 초등 보육교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담당인력 처우개선 노력
- 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구·설비 확충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추진 방향

희망을 주는 맞춤형 특수교육



기본 방침

-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 교원의 통합 · 특수교육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성공적 사회 통합을 위한 진로 · 직업교육의 내실화



추진 과제

-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1 2018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학교[급]신·증설 확대
 - 1) 목적
 - ○원거리 통학 및 과밀 특수학급 해소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여건 개선
 - 2) 추진 내용
 - 가)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나) 합리적인 기초 자료에 근거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중장기 수용계획 마련
 - 다) 특수학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 라)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1) 목적
 -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제고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사 처우개선 및 특수학급 담당교원 부장교사 배치 확대를 통한 직무 만족도 향상
 - 2) 추진 내용
 - 가) 특수교사 배치 개선
 - 나) 예비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다)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목적
 -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로 교육권 보장 및 학력 신장
 - 2) 추진 내용
 - 가)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목적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유아 통합교육 여건 개선
 - 2) 추진 내용
 - 가)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나)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다) 특수교사·일반교사 협력 강화
-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목적
 -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특수 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성과 제고
 - 2) 추진 내용
 - 가)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나) 통합학급 담당교사 처우개선 및 지원 강화
-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1) 목적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2) 추진 내용
 - 가)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 나)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내실화 지원
 - 라)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와 교육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 2) 추진 내용
 - 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 나)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다) 순회교육 담당교사 연수 강화
 - 라) 순회교육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1) 목적
 -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연선 개선 등 지원의 다양화
- 2) 추진 내용
 - 가)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나)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치료지원전담팀 구성·운영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 1)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신변처리, 급식, 등학교 등의 교내외 활동을 보조하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2) 추진 내용
 - 가)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관리 강화
 - 나) 특수교육실무사 역량 강화
 - 다)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 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지원, 통학지원, 1가정 2자녀 장애학생 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의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
- 2) 추진 내용
 - 가) 치료지원
 - 나) 가족지워
 - 다)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의 지원
 - 라) 통학지워
 - 마) 1가정 2자녀 장애학생 지원
 - 바)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 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 1) 목적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특수교육 성과 제고
 - 2) 추진 내용
 - 가)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나)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 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다)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과 교육제공 강화
- 자.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목적
 -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도모

- 2) 추진 내용
 - 가)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지원 제공
 - 나)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내실화
 - 다)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및 보호자 교육 강화
 - 라)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마)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차.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목적
 -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
- 2) 추진 내용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기능 강화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다) 권역별 기능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4개 기관)
- 카.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목적
 - 장애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실현
 - 2) 추진 내용
 -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나)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 1) 목적
 - ○학생참여 및 활동 중심의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
 -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설계 지원 강화

- 2) 추진 내용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지원
 - 나)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다)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목적
 -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 취업 강화
 -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확립으로 학교에서 사회로 안정적인 전환 성과 도모
 - 2) 추진 내용
 -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 나)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다)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과성 확대
 -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가. 장애공감문화 확산
 - 1) 목적
 - ○일반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장애이해교육 강화 및 장애인식 개선 홍보·교육 콘텐츠 확산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 2) 추진 내용
 - 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 내실화
 - 나) 범도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목적
 - ○장애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과 자기보호 능력 신장을 위한 인권 및 성교육 내실화

2) 추진 내용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나)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다)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 라)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 마) 문제행동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목적
 -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한 교육환 경 조성
- 2) 추진 내용
 - 가)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나)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 다)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라) 학교주변 위험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1)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 및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
 - 2) 추진 내용
 -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라)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목적
 - ○전일제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도모
 - ○'나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돌봄 지원 및 학생안전 관리를 통해 학생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2) 추진 내용
 - 가)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
 - 나) 특수학교 토요 프로그램 운영
 - 다) 방학프로그램 운영
 - 라) [재활승마 가족캠프] 운영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목적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질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 2) 추진 내용
 - 가) 희망을 주는 맞춤형 경북 특수교육 운영 계획 수립
 - 나) 현장 맞춤형 특수교육 장학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 다) 특수학교(급)시설·설비 확충 및 환경 개선 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 1) 일반학교 설립 계획 수립 시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조치
 - 2) 특수학급의 학급정원, 급당 평균인원 등에 대한 실태파악 후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
 - 3) 지역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신·증설 및 중·장기 확충 계획 수립
 - [신·증설] 39학급 : 5억 4,000만원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책무성 강화

1) 특수교육교원의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 및 장애유형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등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
- 2)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적응력 및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 2)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적극 홍보
- 3)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홍보 및 진단· 평가 지원
- 4)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2교, 2,000만원]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연수과정에 장애이해(인권보호 포함) 및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1개 이상 포함하여 운영
- 2)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실' 운영학교 및 교육지원청 3교(기관)
- 3)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조직·운영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1)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2) 특수학교(급) 현장 맞춤형 컨설팅 장학 실시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대상은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동 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에 한해 선정하고, 통학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에 출석토록 권장
 - ※ 학교교육이 가능한 순회교육 학생은 특수학교(급), 일반학급으로 재배치

-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재택순회. 학급순회) 지원 계획 수립 추진
- 3) 순회학급에도 교재·교구 구입 등을 위한 학급 운영비 지원 및 담임 역할 수행
- 4) 특수교육대상자 뿐만 아니라 순회교사에 대한 성추행(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사 배치 결정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1)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 2)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서 의사,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등 '치료 지원 전담팀' 구성·운영

바.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 1) 지역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후 각급 학교에 배치
- 2) 특수교육보조원 직무 역량강화 연수 실시[455명]
- 3) 사회복무요원 배치[312명]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 치료지원, 가족지원(1가정 2자녀), 통학 지원(대중교통비 지원) [11개 지원, 127억 220만원]
-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을 구비하여 각급학교에서 대여·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 1)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다양한 교사조직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 참여 및 역할 확대 방안 강구
-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관련 연수·컨설팅 장학 강화

자.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건강장애학생 학적 관리 및 원격수업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 건강장애학생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별 연 1회 이상 연수 실시)
- 2)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를 통해 복귀 후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 등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차.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및 계획
 - 순회교육 계획, 진단평가 계획, 특수교육관련연수 계획,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유영계획, 예산 집행 세부 계획 포함
- 2) 4개 권역별 기능 거점 및 23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카.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체험 기회 제공 및 문화 향유권확대
- 2) 장애학생 1인 1기.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동아리 지원
 - 특수학교 1교 1종목 육성[교당 300만원]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선수 훈련 지원[110명, 1인당 25만원]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 1) 교육지원청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인력 확충 및 담당자 지정·운영
 - 2)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 수립 운영 지원
 - 영남권역(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자유학기제 선도교육청 지정
 - 워크숍(2월) 및 성과보고회(11월) 개최
 - 3)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점검. 사고 대응체계 마련 등 안전한 체험활동 대책 수립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직업교육 전문화

-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고등부 특수학교(급)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통한 운영 예산 지원(5개 기관)
- 2)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지원
- 3)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과성 확대
 - 특수학교 학교 기업
 - 안동영명학교 : 보안문서 파쇄, 세탁, 커피제조
 - 포항명도학교: 직업체험훈련실, 임가공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바리스타 및 제과·제빵, 구미인동고등학교: 바리스타 [2교 6,000만원]
 - 전공과 특색사업 : [2교 8.000만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장애공감문화 확산

- 1) 모든 학생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장애이해 및 장애 인권교육 실시
- 2) 전문강사, 교육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식 개선 직장교육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23개 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
- 2) 각급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은 수사 기관에 즉시 신고 및 관합청 학교폭력 담당과에 보고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학교 안전지킴이 확대 등 장애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 등과 혐의체 우영 지원
- 2)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예방·관리 철저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1) 전문성을 갖춘 의사, 치료사, 특수교사,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진단·평가팀을 구성 운영: 학부모 및 담임교사로부터 과다한 서류 요구 금지
- 2)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교육 지원 지속적 홍보 및 홍보책자 제작 활용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심리적 재활 및 가족간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재활 승마 가족 캠프] 운영: 80가족(여름방학(1기), 겨울방학(2기)으로 나누어 2박 3일간 운영

바.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희망을 주는 맞춤형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 장학 별도 추진
- 2) 특수학교(급)장애 유형, 장애 정도, 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 지도

경상남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1. 추진과제

- 가. 특수교육 교육력 제고
- 나. 선진화된 특수교육지원
- 다. 전환교육 지원확대
- 라. 특수교육대상자 복지지원 강화

2. 중점과제

- 가. 특수교육 교육력 제고
 - 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3)건강장애학생 지원
 - 4)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강화 및 연구활동 지원
 - 5) 특수교육 연수 지원
 - 6) 개별화교육 강화
- 나. 선진화된 특수교육지원
 - 1)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체계 확립
 -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3) 순회교육 지원
 - 4)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5)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확대
 - 6)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다. 전환교육지원 확대
 - 1)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

- 2)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 3)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
- 4)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복지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2) 예·체능활동 지원 강화
- 3) 방과후 학교 운영 구축

Ⅲ 2018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특수교육 교육력 제고

-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 1) 특수교육대상영아의 무상교육지원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지원실 운영 : 창원, 김해, 거제
 - 나) 영아 순회교육지원 : 주당 2시간 이상
 - 2)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지원
 - 가) 유치워 특수학급 신설 추진 : 교재교구 및 환경개선비 급당 20.000천원 지원
 - 나) 무상교육비 지원 : 공립 월 90천원, 사립 월 361천원
 -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 가) 장애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담당자 연수: 권역별
 -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연구회 및 연수 실시: 권역별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가) 교직원·학부모·학생의 의견 반영
 - 나) 특색있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2)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가)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 포함하여 편성
 - 나) 장애학생 지원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 3)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운영
 - 가) 창원 안골포중학교 지정 운영

다. 건강장애학생 지원

- 1) 병원학교 운영: 경상대학교병원, 국립부곡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4학급
- 2)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스쿨 및 꿈사랑학교 운영 지원: 180명 내외
- 3)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또래관계 유지, 맞춤형 보충학습지도, 진조진학 상담 등

라. 교원 연구활동 지원

- 1) 특수교육 연구대회
 - 가) 특수교사 수업연구발표대회: 개인 초·중등교사 12명 선정
- 2) 특수교육 연구회 조직 및 운영
 - 가)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 연구회 조직
 - 나) 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마. 특수교육 연수 지원

- 1) 특수학급 설치 학교장 연수: 300명
- 2) 특수학급 설치 교감 연수: 250명
- 3) 특수교육 교원 연수: 2,390명
- 4) 신규임용교사 장애이해 연수: 400명(초·중등신규임용교사)
- 5) 통합학급 교사 원격연수: 2.000명
- 6) 건강장애학생 담임교사 연수: 50명
- 7)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및 치료사 연수: 180명
- 8) 특수교육보조인력 집합 및 원격연수: 400명
- 9) 특수학교(급) 학부모 연수: 80명

바.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강화

-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강화
- 2) 장학자료 개발 : 연 1건 이상

2. 선진화된 특수교육 지원

- 가.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체계 확립
 -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활성화
 - 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강화
 - 나) 진단·평가 체계 강화

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1) 치료지원서비스 운영 내실화

- 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배치: 119명
- 나) 병원 물리·작업·청능훈련 치료지원비 제공 : 월 15만원 이내
- 2) 중증 과잉행동장애 학생 지원
 - 가) 대상: 품행장애, 과잉행동장애, 정서행동장애 특수교육대상자
 - 나) 심리행동치료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
- 3) 가족지워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별 프로그램 운영
 - 나) 경상남도특수교육원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4) 통학 및 기숙사 숙식경비 지원
- 5)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가) 수요자 맞춤형 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나) 대여 및 활용관리 철저

다. 순회교육 지원

- 1) 순회교사 주당 수업시수: 최소 20시간 이상
- 2) 순회교육활동비: 1일 2만원

라.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1)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958명
- 2) 특수학교 통학버스 실무원 및 기숙사 생활지도원, 간호사 배치

마.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확대

1) 특수학급 신·증설 교재교구 및 환경개선비 지원: 1,000,000천원

바 공립 특수학교 신설 추진

1) 거창 특수학교 신설 및 중장기 특수학교 설립 계획 수립

사. 신·증설 특수학급 컨설팅 지원단 운영

- 1) 현장방문 및 사이버 컨설팅
- 2) 신·증설 특수학급 매뉴얼 배부

아. 경남특수교육원 운영 내실화

- 1) 연수 운영 강화 : 특수교원, 일반교원, 보조인력, 학부모, 관리자 연수 등
- 2) 체험프로그램 운영: 안전체험, 진로직업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 4) 특수교육정보화 지원 및 특수교육자료, 장애학생 취업·창업정보 개발

- 5) 청각장애 수화·속기원격지원사업 추진
- 6) 감각장애 특성화센터 운영 : 보조공학기기 지원
- 7) 장애인식 개선 문화 사업 및 장애체험활동 운영
- 8) 장애학생 수련시설 건립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1)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창원, 김해, 진주, 거제, 사천, 함안
- 2) 전문인력 전문성 신장 노력: 정규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등

3. 특수교육대상학생 복지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가) 연 2회 이상 협의회 개최
 - 나) 매월 1회 이상 현장 점검
 - 2) 장애학생 인권보호교육 우수사례 발굴: 우수사례발표대회 개최
 - 3) 범도민 장애인식 개선 : 연중

나. 예·체능활동 지원 강화

- 1) 경상남도교육감기장애학생체육대회 운영
- 2)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참가 지원
- 3) 장애학생 예술활동 지원

다.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월 10만원 이내
- 2) 방학중 희망나눔학교 및 토요프로그램 지원
- 3)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 지원

4. 전환교육지원 확대

- 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
 - 1)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지원
 - 가) 학교기업 직업훈련실 운영: 창원천광학교
 - 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김해생명과학고, 아림고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환교육지원실 운영: 7개소
 - 2) 현장실습 운영지침 수립

나.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

- 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9개소
- 2) 현장점검 및 평가 실시

다.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1)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 파악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 등
-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와 워크투게더센터 협의회 운영

Ⅲ 향후 추진 계획

1. 특수교육 교육력 제고

-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 1) 특수교육대상유아 대상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운영 가) 취학유예 방지를 위한 입학 설명회 개최: 특수교육지원센터
 - 2)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방학중 종일반 지원

가)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28학급

시기	2018	2019	2020	2021
영아지원실 운영	371	3711	371	3711
으로 영아담당 교사 지정	18명	18명	18명	18명
	44학급	47학급	50학급	52학급
입학적응 지원 프로그램	50명	50명	55명	60명
영·유이담당 교원 연수	40명	40명	40명	40명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평가 관련 연수 실시: 40명
- 2) 특수교육 통계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특수교육 통계 및 특수교육 관련 정보관리

시기	2018	2019	2020	2021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발간	1호	1호	1호	1회
유형별 교수·학습자료 개발	2건	3건	3건	3건
평가 관련 연수	100명	120명	120명	120명
나이스 통계시스템 구축·운영	평0 아닌	운영	운영	운영

다. 건강장애학생 지원

- 1) 건강장애담임교사 연수 개최:4월
- 2)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10개

라. 교원 연구활동 지원

- 1) 특수교사 수업연구발표대회: 11월, 경남특수교육원
- 2)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 연구회 운영

마. 특수교육 연수 지원

- 1) 특수교육교원의 직무연수 : 연중(경남특수교육원)
- 2)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교사 집합연수 : 방학 중(경남특수교육원)

시기	2018	2019	2020	2021
특수교육 관련 연구활동 지원 (수업연구교사제 등)	150명	150명	150명	150명
- 특수교육 교원 연수	1,200명	1,200명	1,200명	1,200명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교사 연수	60명	60명	60명	60명
일반교육 교원 연수	3,200명	3,500명	3,500명	3,500명

2. 선진화된 특수교육 지원

- 가.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체계 확립
 -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활성화
 - 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 9월', 11월

시기	2018	2019	2020	2021
진단·평가 전문인력 양성	40명	40명	40명	40명
 진단·평가 매뉴얼 제작	-	1호	-	1회
특수교육지원센터 직무 연수	60명	60명	60명	60명

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1) 치료지원서비스 운영 내실화
 - 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연수 실시 : 8월(경남특수교육원)
 - 나) 물리·작업·청능훈련 치료지원비 제공 : 월 15만원 이내 실비 지급

2) 가족지원

가) 장애학생 및 형제자매. 부모 캠프 운영 : 연 1회, 60명, 30,000천원

나) 부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연 4회, 100명, 12,000천원

시기	2018	2019	2020	2021
맞춤형 치료지원 제공	2,000	2,000	2,000	2,000
치료사 연수	1호	1호	1호	1회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30,000	30,000	30,000	30,000
부모상담 프로그램 운영	12,000	15,000	15,000	15,000
감각장애 거점센터 운영	4센터	4센터	4센터	4센터
중증 과잉행동장애 거점센터 운영	1센터	1센터	1센터	1센터

다. 특수교육 자원봉사제 운영

1) 인원: 200명

2) 운영 : 하루 3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1일 20천원 월 400천원 이내, 공개 모집

라.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1) 선정·배치에 따른 특수학급 신·증설 준비 : 학교지원과

2) 2018년도 특수학급 교재교구·환경개선비 예산확보

마. 공립 특수학교 신설 추진

- 1) 거창 특수학교 신설 확정
- 2) 중앙투자심사 완료 및 예산확보

바. 경남특수교육원 운영

1) 특수교원 및 일반교원, 보조인력 연수 : 연중

2)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연중

3)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10월~12월

시기	2018	2019	2020	2021
경상남도특수교육원 설립		수련관 신축		
수련 및 체험활동	7,000명	8,000명	8,000명	8,000명
특수교육 연수 (일반교원, 특수교육교원, 보조인력, 관련서비스 지원인력, 행정직원, 학부모 등)	5,320명	5,620명	5,620명	5,620
특수교육 관련 자료 개발	3건	3건	3건	3건

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1) 특수교육지원센터 하계 프로그램 운영: 20개 센터
- 2) 정규교사 인센티브 부여 방안: 인사관리기준 및 인사사무지침 개정, 승진 가산점 부여

3. 특수교육대상학생 복지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가) 협의회 결과 보고
 - 나) 매월 1회 이상 현장 점검 결과 보고
 - 2) 장애학생 인권보호교육 우수사례 발굴 : 우수사례발표대회 개최, 11월

시기	2018	2019	2020	2021
상설모니터단 및 인권보호팀 운영	연중	연중	연증	연중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관련 교육	40회	40회	40호	40회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우수사례 발굴	1회	1회	1회	1회

나. 예·체능활동 지원 강화

1) 경상남도교육감기 장애학생체육대회 운영:9월

2)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지원:5월

3) 장애학생 예술제 개최: 10월, 경남특수교육원

시기	2018	2019	2020	2021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3명	3명	3명	3명
장애학생 예술제	1호	1호	1호	1회

다.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강화

- 1)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분기별 월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2) 방학중 희망나눔학교 및 토요프로그램 지원

시기	2018	2019	2020	2021
교내외 강좌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5,053명	5,053명	5,053명	5,053명
방학중 희망 나눔학교 운영 지원	154학급	154학급	154학급	154학급
 맞춤형 토요프로그램 운영	140학급	140학급	140학급	140학급
특수학교, 유치원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	28학급	30학급	33학급	35학급

4. 전환교육지원 확대

- 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
 - 1) 현장실습 운영지침 수립(3월)
 - 2)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지원
 - 가) 학교기업 직업훈련실 운영: 창원천광학교
 - 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 김해생명과학고, 아림고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환교육지원실 운영: 7개소

시기	2018	2019	2020	2021
전환교육지원센실 설치·운영	7개소	7개소	7개소	7개소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사 연수	100명	100명	100명	100명
스페셜코디네이터 배치	10명	12명	12명	12명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1교	1皿	1皿	1皿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2皿	2皿	2皿	2Ш

나.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

- 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9개소
- 2) 현장점검 및 평가 실시

시기	2018	2019	2020	2021
특수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연중	연중	연중	연중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운영지원	9개소	9개소	9개소	9개소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운영평가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 투수교육 추진 방향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1. 추진방향

- 가.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지원
-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특수교육 환경 조성
- 다. 장애특성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2. 중점 추진 과제

-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3. 제주특수교육의 강조점

- 가. 생애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을 길러 성공적인 사회통합 능력을 기른다.
- 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과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주적인 생활 능력을 기른다.
-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응력, 문제해결력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교육에 충실을 기한다.
-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건강 하고 안전한 행복학교를 만들어 간다.

- 마.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활동으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한다.
- 바. 우리 고장의 환경과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아름다운 제주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한다.

1 2018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증설시,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 나) 특수학급 신설: 오현고등학교(1학급)
 - 다) 특수학급 증설: 노형초병설유치원(1학급), 아라초(1학급), 인화초(1학급), 화북초(1학급), 신광초(1학급), 노형중(1학급), 사대부중(1학급)
 - 라) 고등학교 학급 증설 여건 마련 : 대기고등학교(1학급)
 - 마) 전공과 학급 증설 여건 마련: 제주영지학교 전공과(1학급)
 - 2)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 가) 제주대학교병원학교 초등 1학급 운영지원
 - 나) 제주권역재활병원 순회교육 지원
 - 다) 특수교육대상자 역량강화 및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3개교) 및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특수 1교, 고 5교)
 -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제주고, 표선고, 함덕고
 - ※ 직업교육 중점학교: 제주영송학교, 제주중앙여고, 제주일고, 제주여상, 중문고, 한림 공고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가)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특수교육원(원격교육연수원 포함) 연수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확대
 - 다)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초등통합교육수업연구회, 중등진로직업교육연구회, 전공과수업연구회

- 2)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 ※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쉼팡」 운영
 - ※ 교원 심리·법률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지원
 - ※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자가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평가조정 적용
 - ※ 특수교육대상자 평가조정 현장안착을 위한 안내 및 현장지원 강화(통합교육담당교원 연차회 2018. 6. 1.(금)
 - 나)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등 보조공학기기 대여
 - ※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064-753-9997)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
 - 다)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 마련
 - ※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입차량 지양 및 운전원과 보조인력 대상 연수 실시(특수학교 3개교)
- 2)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제공 강화
 - 가)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서귀포산업과학고등 학교)
 - ※ 유관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등) 협력을 통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관련 자문, 실태점 검 및 담당자 교육 실시(2018. 5. 10.(목),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 3)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활용
 - 가) 특수교육대상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원 사이트의 스마트 교실 및 디지털북 등 활용
 - ※ 2018년 제13회 특수교육정보화대회 개최(2018. 6. 8.(금) 제주국제교육정보원)

라.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 1) 특수교육실무워 운영·관리 강화
 - 가) 특수교육실무원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지원
 - 나) 특수교육실무원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업무 명확화

- 2) 특수교육실무원 역량 강화
 - 가)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의무 실시
 - ※ 연수내용: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보조 방법, 복무규정 등
 - ※ 신규 채용된 보조인력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특수교육원 직무연수 이수
- 3)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 가) 지원대상의 성별, 연령 및 장애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무 요원 배치
 - 나)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의무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 확대
 - 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삼성초병설유치원)
 -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나)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및 운영 내실화 ※ 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가)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 유치원 1개원, 초등 1개교, 중학 1개교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가) 일반학교 근무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 2018년 6월 1일 통합교육담당교원 연찬회 실시(제주학생문회원)
 - 나) 국립특수교육원의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연수실시(30명)
 - 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장애공감문화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지원(국립특수교육원 원격교육연수원 연수 대상자 연수비 지원)

-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 제주통합교육연구회, 중등진로직업연구회

다.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지원 범위
 - 가)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파악하여 순회교육 지원(특수학급 미설치교 84명 순회교육지원)
 - 나) 병원학교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전담인력 배치(제주대학교병원학교 1학급)
 - 다)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 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순회 교육 지원(재택순회학급 10학급)

라.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가)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심리안정실 등) 구축
 - 다)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 등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가)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은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제주영지학교)
 - 나)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도 전문성 증진 연수 실시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마.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의 내실화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 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나)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시 그 지원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 작성
- 다)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 라)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 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가) 교육과정 및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 활용
 -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사조직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 (특수교육보조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활용 확대

바.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지원 제공
 - 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 ※ 한국교육개발원 및 꿈사랑학교 원격수업 지원(지원인원 60명)
 - * 건강장애 선정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생의 교육적·의료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선정 후 상급학교 진급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재심사)
 - 나) 건강장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先교육 지원 가능
-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내실화
 - 가) 제주대학교 병원학교 운영 지원(협력학교: 제주영지학교)
 - 나) 주책임 의료진에 '명예교장' 역할 부여 및 병원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운영
- 3)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 가)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 4)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가) 건강장애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 나)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를 통해 복귀 후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 격차 최소화 등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 5) 어린이 환우 상설 병원학교 지정·운영
 - 가) 제주특별자치도 ICT융합담당관 지원 ** 지정 병원: 제주S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 나) Blue Band 시스템 구축 (http://ubb.jie.go.kr)
 - 다) 어린이 환우 상설 병원학교 운영 관리 및 홍보(이용 안내)
 - ※ 지정학교: 일도초등학교, 동홍초등학교
 - ※ 대상: 제주S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에 1일 이상 입원 중인 초등학교 학생
 - ※ 수업과목:국어(동홍초등학교), 수학(일도초등학교) 실시간 영상수업 운영
 - ※ 출석인정: 입원기간 동안 1일 최소 1교시 이상 학습 시 인정(녹화수업 포함)

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확대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승진가산점 및 전보가산점 부여, 전문성 신장 기회 우선 제공 등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자 및 교육전문적 연수 확대
-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 가)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전문적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 센터를 특성화하여 운영
 - ※ 시·청각장애 특성화지원센터 2개소
 -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제공 및 통합교육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순회치료지원 2개소)

아.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 교육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특수학교 3개교
 - 나) 특수학교별 예술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 : 특수학교 3개교
 - 다)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및 통합교육 확산
 - ※ 2018년 특수교육 관련 민간위탁 사업(소요예산 10,000천원)
-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운영계획 수립시 체육교육 내실화 계획 포함
 - 나)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우선 배치

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 치료지원
 - 가) 특수학교(급)별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에 따른 치료지원 운영계획 수립· 추진
 - ※ 치료비 지원 대상학생 수: 885명(1인당 월 100,000원 지원)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실 운영 2개소(치료사 6명)
 - 다) 특수학교 치료사 배치 : 특수학교 3개교(치료사 3명)
- 2) 가족지원
 - 가) 교육지원청별로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2개소)
 - 나) 장애학생 가족지원 민간위탁 사업 기관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프로그램 위탁운영(1기관 10,000천원)
- 3)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등의 지원
 - 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 등을 구비하여 각급학교에서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4) 통학지원
 - 가)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 마련
 -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학부모 포함) 622명, 지원 예산: 435,518천원

나)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3.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지원
 - 가)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 연수, 학부모 지원단 운영,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한 교실 수업 및 자유학기 활동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 가)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고용지원 등을 위한 직업 교육 중점학교 운영 등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 2018년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활용(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원)
 - 나)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운영: 제주영지학교
 - 다) 학교 내 진로탐색기능 강화를 위한 진로·직업교육실 환경 조성 * 전로·직업교육 환경 조성 : 서귀포온성학교
 - 라)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진로· 직업교육 역량 강화
 - ※ 특수학급 진로·직업교육 연구회, 전공과 수업연구회 운영
-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고용사업장,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직업교육 지원 ※ 장애학생취업지원을 위한 장애인고용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체 조직 운영
- 3) 특수학교 전공과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운영
 - 가)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가 지역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컨설팅 등 거점학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 ※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3개교(제주고, 표선고, 함덕고)
 - 나) 지역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컨설팅 등 제공 ※ 직업교육중점학교 운영 5개교(제주일고, 중앙여고, 제주여상, 한림공고, 중문고)

다.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반 조성

- 1)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교육지원 강화
 - 가)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 교육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 ※ 장애성인평생교육기관 운영 지원: 제주장애인야가학교(문해교육 등)
-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2개 기관(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서귀포시장애인 부모회)
 - ※ 장애학생 계절학교 운영: 2개 기관(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 장애학생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1개 기관(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가) 유·초·중·고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나)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 수업 실시 확대
 - 다) 장애이해교육 우수사례 및 백일장, 홍보 동영상 공모전 등을 통해 일반 학교 장애이해교육 참여
 - ※ 제38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식개선 백일장 대회 후원(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 라) 일반학교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 장애인식개선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위탁 운영(사단법인 하음)
 - ※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위탁 운영(제주장애인야간학교)
 - 2)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 가) 유·초·중등학생 및 일반국민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 나) 범국민 대상 SNS 등을 활용한 교육·홍보용 콘텐츠 전파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 나)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 * 매월 1회 이상 일반 및 특수학교 등을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실시 및 결과 보고

- 2)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가) 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 ※ 국가인권위원회(어린이·청소년인권교실 콘텐츠, 인권문화마당-별별이야기 등) 및 국립 특수교육원(장애인권교육을 위한 학습만화콘텐츠 초등용,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자료 활용
 - 나) 장애학생인권보호나침반(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발 장학자료) 활용
 - 다)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3)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 가)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자기보호 역량 강화
 - ※ 성교육 강사비 및 운영비 지원
 - 특수학교 3교: 6.500처원
 -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92교, 86,000천원
 - 나) 장학자료 활용 지도: '알고 싶은 소중한 성」성교육 자료
 - 다)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www.nise.go.kr)의 인권보호 자료실 활용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 가)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 학교 주변 통학로에 장애학생 보호 인력 배치·운영
 - 나)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환경 개선
 - ※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활용(도교육청 장학마당 사이버장학실 활용)

라. 방과후교육 돌봄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
 - 가) 지원이 필요한 가정(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중 희망자 우선 지원
 - 나)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의거 지원규모 및 우선 지원 대상 선정 ※ 특수학급당 연 4,500천원 방과후교육비 지원(유 5학급, 초 63학급, 중·고 43학급)
- 2) 돌봄 지원체계 강화(토요 프로그램 포함)
 - 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주말학교 위탁 운영

- 3) 방학프로그램(계절학교) 운영
 - 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 ※ 특수학교 3개교. 특수교육지원센터 2개소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

●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증설시,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 나) 전공과 학급 증설 여건 마련 : 제주영지학교 전공과(1학급)
 - 다) 2019학년도 특수학교(급) 학생수용 계획 수립
- 나.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 1) 특수교육실무원 운영·관리 강화
 - 가) 특수교육실무원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지원
 - 나) 특수교육실무워 업무평가(근무성적평정 등) 연 1회 실시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정다운학교 및 장애이해교실 운영학교 컨설팅 지원
-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1)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가)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 제주통합교육연구회, 중등진로직업연구회
- 다.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1) 순회교육 지원 범위
 - 가)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파악 하여 순회교육 지원(특수학급 미설치교 84명 순회교육지원)

라.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의 내실화

- 1)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가) 교육과정 및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 활용
 -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사조직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 (특수교육보조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활용 확대

마.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지원 제공
- 2)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 3) 어린이 환우 상설 병원학교 지정·운영

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 치료지원
 - 가) 특수학교(급)별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에 따른 치료비 지원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실 운영 2개소
 - 다) 특수학교 치료사 배치: 특수학교 3개교
- 2) 가족지원
 - 가) 교육지원청별로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2개소)
 - 나) 장애학생 가족지원 민간위탁 사업 기관 운영
- 3) 통학지원
 - 가)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

3.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지원
 - 가)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 연수, 학부모 지원단 운영,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한 교실 수업 및 자유학기 활동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 가)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 2) 특수학교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전공과 설치 확대 및 운영 다양화 추진 * 2019년 제주영지학교 전공과 1학급 증설 여건 마련(* 2020년 전공과 1학급 증설)
- 3)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 가) 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취업 유 지현황 관리)
 - 나) 취업자에 대한 적응지도, 상담, 취업유지 여부 확인 등 장기적인 고용 안정 관리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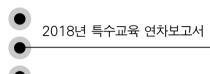
-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1)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가) 일반학교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 장애인식개선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위탁 운영(사단법인 하음)
 - ※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위탁 운영(제주장애인야간학교)
 - 2)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 가) 유·초·중등학생 및 일반국민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1)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가) 재난상황 대비 장애 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재정비
 - 나) 특수학교(급)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 다)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 나)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파악
 -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 의 무·무상교육 홍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343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356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36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8. 5. 22.] [법률 제15367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교육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 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4. "특수교육교원"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하다
-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하다
- 12. "각급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의무교육 등】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 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제4조 【차별의 금지】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차별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19.〉

-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 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16. 2. 3.〉
-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① 제6조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 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군·구특수교육유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유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

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교원의 자질향상】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 12. 30.〉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angle 개정 2013. |12.30. \rangle
- 제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22.〉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 1. 시각장애
 - 2. 청각장애
 - 3. 지적장애
 - 4. 지체장애
 - 5. 정서·행동장애
 -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7. 의사소통장애

- 8. 학습장애
- 9. 건강장애
- 10 발달지체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3. 특수학교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 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 제18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 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보호자의 의무 등】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6, 7.〉
 -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통합 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통합교육】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 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제22조【개별화교육】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혐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 제26조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① 「유아교육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12, 3, 21.]

-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 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3, 4, 5.〉
-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6. 5. 29.〉

- 제29조 【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 3. 취학편의 지원
 - 4. 정보접근 지원
 -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2,〉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 제32조 【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2016. 5. 29.〉

제34조 삭제〈2016. 5. 29.〉

제6장 보칙 및 벌칙

- 제35조 【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2. 제16조 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 3. 제17조 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 ②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3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 2. 제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본조신설 2016, 5, 29,]

[종전 제38조는 제38조의2로 이동〈2016, 5, 29,〉]

- 제38조의2【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 1. 삭제〈2016. 5. 29.〉
 - 2.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 3. 삭제〈2016. 5. 29.〉
 - 4. 제4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제38조에서 이동〈2016, 5, 29〉]

부칙 〈제15367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①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제4조【위탁교육】① 교육감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 (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 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 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 【교원의 자질 향상】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 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 3.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⑦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⑨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의2【위촉위원의 해촉】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屬)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대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 제7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법 제13조에 따라 실태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활용 현황
-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 7.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현황
-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특수교육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 제9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또는「의료급여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2, 8, 31.〉
 -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하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 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 【배치에 대한 이의】법 제1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 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 제14조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5조【어린이집의 교육 요건】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 12, 8.〉
 - 1. 「영유아보육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 2.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 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 12. 8.]

- 제16조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 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특수학교의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①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 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 제19조 【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 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 ②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④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
- 제20조 【순회교육의 운영 등】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 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③ 삭제〈2016. 6. 21.〉
- 제21조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유아교육법」제22조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 4, 20.〉
 - ②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 4, 20,〉
 - ③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제목개정 2012, 4, 20.]

-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23조【가족지원】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 제24조 【치료지원】①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5조 【보조인력】① 교육감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보조인력의 채용·배치 등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보조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제26조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27조 【통학 지원】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① 교육감은 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제19 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7.5.29.〉

- 제30조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 구성 및 회의 개최 시기 등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 제31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 ②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은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 삭제〈2017, 5, 29.〉

제6장 보칙

- 제33조【심사청구 절차】법 제35조 제3항 및 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및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2016년 1월 1일

- 2.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 2016년 1월 1일
- 3. 삭제〈2017. 5. 29.〉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 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④부터 〈388〉까지 생략

[별표] 〈개정 2016. 6. 2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23.] [교육부령 제101호, 2016, 6, 23., 일부개정]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의2【교육과정】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 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및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 1. 유치원 교육과정: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유아 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 2. 공통 교육과정 :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 3. 선택 교육과정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 4. 기본 교육과정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학년의 구분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 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에 관한 교과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과정의 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2. 20.]

-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①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 ②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① 법 제2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0, 4,〉
 -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② 법 제2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 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 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의2【간호사 등의 배치기준】법 제2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7조【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①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① 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 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1호, 2016, 6, 23.〉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6. 6. 23.〉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영역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영·유아발달검사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지적장애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진단· 평가 영역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적응행동검사 성격진단검사 행동발달평가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 장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지능검사 기초학습기능검사 학습준비도검사 시지각발달검사 지각운동발달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비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평가 시 장애인증명서·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접수번호	-							
222	성명 (한자)						성별	남 여
대상자	주소							
	소 속							
보호자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대신	상자의 ()
	주소					전화번호		
1	등에 대한 특수: 신청합니다.	교육법.	」 제14	조 제3	항 및 7	같은 법 시행	령 제9조기	제4항에 따라
			년	월	일	보호 (학교	•	(1)
시·도교육	삼감(교육장)	귀하						

(절취선)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고등학교과정이하)접수증

접수번호

	소속	학생명		성별	비고
위와 길	날이 접수하였음을	- 증명함.			
접수자	년 성명	월 일 서명	년 월 일		
				시·도	교육감(교육장) ①

(뒷면)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보호자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 보호자의 사전 동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접수 즉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회부 30일 이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진단'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2주 이내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보호자 의견 수렴)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의 있을 경우 심사청구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30일 이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 90일 이내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나) 접수번호: 시·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고등 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별지 제2호서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등 결정 사항	
성 명: 주 소:	성 별(남, 여)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장애인 등에 대한 라 진단·평가 결과를	특수교육법」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u>(1)</u>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①

[별지 제3호서식]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배정학교

학교 부 제 학년 (학급)

성 명 : 성 별(남, 여)

소: 주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위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 따라 위의 학교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①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①

[별지 제4호서식]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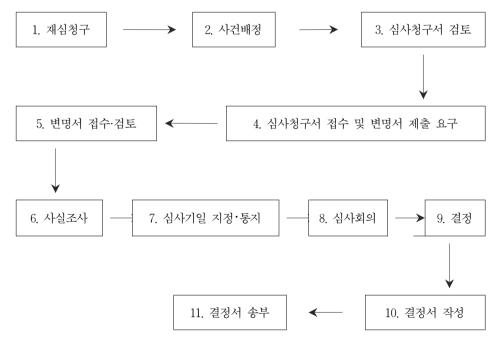
심사청구서 (전문대학 이상)								
① 사건								
	성명					성별		
② 청구인	주소	(전화	화번호	Ξ:)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재심청구의취지								
⑥ 재심청구의 이유								
⑦ 기타입증자료								
⑧ 근거법률	『 장애인 제33조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제35조 저	3항 및 같은	- 법 시행령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	구합니다.							
		년	٤	월	일			
					청구인	(서명	를 또는 인)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 ① 사건명: ○○ 처분 취소 청구
-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 ④ 심사청구의 취지 :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 ⑥ 기타 입증자료 : 본 건과 관련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
-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별지 제5호서식]

심사결과통지서 (전문대학 이상)								
① 사건								
	성명			성별				
② 청구인	주소	(전호	화번호 :)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심사 결과								
⑥ 근거법률	『장애인 등 제33조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제35조 제3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Ē	별지원위원	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히	i}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심사청구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1) 4	l건							
2	-, 6,33,3	성명				성별		
청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	1 :)	
구		소속학	可					
인	학교장	성명			학교명	(전화번호	:)	
3 1	청구인							
]사청구의 대상이]는 처분내용							
⑤ c]사청구의 취지							
⑥ 심사청구의 이유								
⑦ 기타입증자료								
® -	· - 거법률	『장애인 시행령			수교육법」	제36조 제1형	· 및 제2항, 같은 법	
위외	ł 같이 심사를 청구합 ^L	l다.						
		ı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 사건명: ○○ 처분 취소 청구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ㅇㅇ 처분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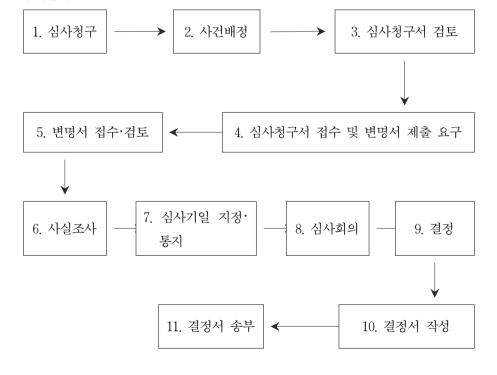
⑤ 심사청구의 이유 :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⑥ 기타 입증자료 : 본 건과 관련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별지 제7호서식]

심사결과통지서(고등학교 과정 이하)										
① 사건										
	성명							성별		
② 청구인	주소	(전호	P 반호)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심사 결과										
⑥ 근거법률	「장애인 등 제33조	등에 대	한 특수	구교육	-법 」 제	∄36조	제3항	· 및 같은	- 법 시행령	100
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ŀ.								
		년	월	일						
	특수	-교육원	2영위육	<u></u> 회 유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발행일: 2018년 9월

발행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우편번호 30119

전화 044) 203-6954

인쇄처: 에프앤(주)

(0859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2, 1201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전화 02) 6445-2250 / Fax 02) 6445-2252